

기술창업가이드

Technology start up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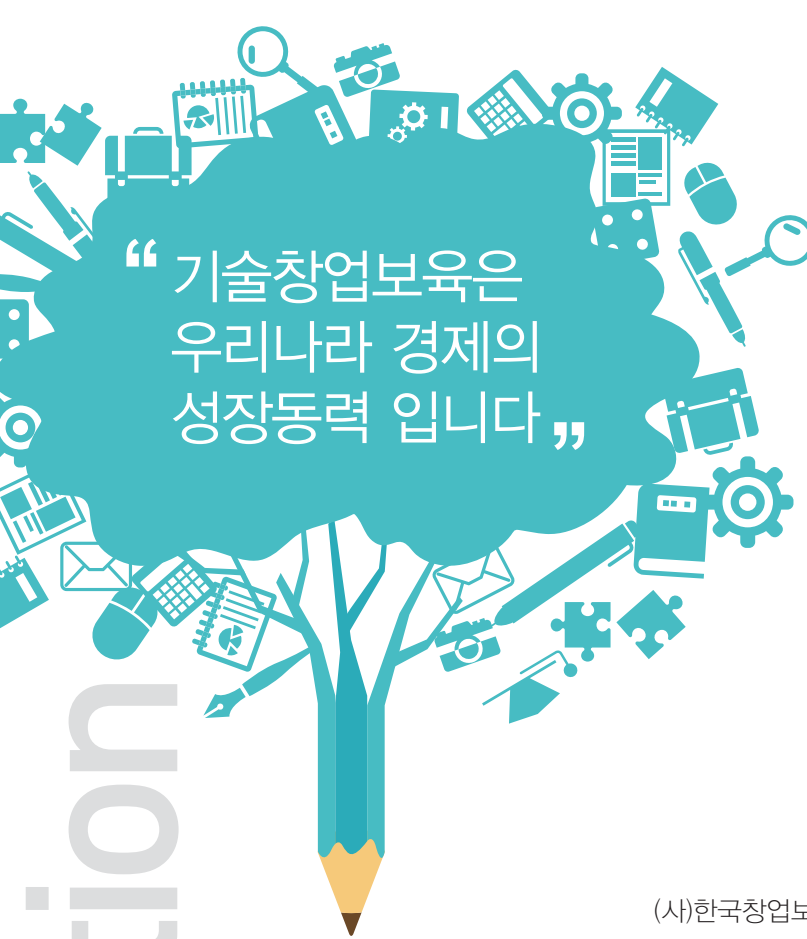
KOBIA (사)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가이드

Technology start up

2015. 3





“기술창업보육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입니다.”

발간사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계 형 산**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가경제 성장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미래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 신기술 창업 및 고용창출의 산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을 안내하는 많은 지침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창업절차나 소상공인창업

을 위한 것이었고, 기술창업을 안내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창업가이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기술창업가이드는 크게 기술창업 구상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의 기술창업절차를 안내하는 기술창업실무(제1편)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주요 업종별 기술창업 가이드(제2편), 일반적인 창업과 경영에 대해 설명하는 부록-회사의 설립과 경영(제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기술창업실무에서는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와 기술창업 단계별 창업절차를 “기술창업 구상단계-사업계획의 수립단계-창업보육센터 입주단계-기술개발단계-상품화단계-사업화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술하였으며,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준비과정을 기술하였습니다.

제2편 주요업종별 기술창업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산업의 특성과 업종 트렌드, 사업체현황, 창업 시 고려할 사항 및 인·허가사항과 더불어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종별 기술창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 부록(회사의 설립과 경영)에서는 회사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절차, 경영관리,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절차,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절차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본 기술창업가이드는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CEO와 초기창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는 우리나라 기술창업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술창업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기술창업가이드
Technology start up

제1편 기술창업실무

제1장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	3
제1절 기술창업의 정의	5
제2절 기술창업의 절차 및 핵심요소	9
제2장 기술창업 단계	13
제1단계 기술창업 구상단계	15
1.창업자 분석	15
2.사업아이템 탐색	15
3.특허검색	16
4.소비자 및 시장분석	22
제2단계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24
1.사업아이템 선정	24
2.사업타당성 분석	26
3.사업계획서 작성	34
제3단계 창업보육센터 입주단계	44
1.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44
2.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45
3.지역별 창업보육센터 현황	46
제4단계 기술개발 단계	48
1.기술개발	48
2.기업부설연구소 설립	50
3.연구장비 공동활용	58

4.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59
제5단계 상품화 단계	71
1.디자인 개발	71
2.시제품 제작	72
3.제품인증제도	75
제6단계 사업화 단계	83
1.마케팅전략 수립	83
2.사업 인 · 허가	99
3.공장설립	100
제7단계 실패와 재도전 준비	121

제2편 주요업종별기술창업가이드

제1장 제조업	127
제1절 식품품 제조업	129
제2절 음료 제조업	139
제3절 섬유제품 제조업	145
제4절 의복 ·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
제5절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5
제6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59
제7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3
제8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7

Contents

제9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1	제3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제10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7	정보 서비스업	269
제11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4	제1절 출판업	271
제12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0	제2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76
제13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4	제3절 방송업	282
제14절 1차 금속 제조업	199	제4절 통신업	286
제15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3	제5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91
제16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8	제6절 정보서비스업	295
제17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14	제4장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9
제18절 전기장비 제조업	221	제1절 연구개발업	301
제19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7	제2절 전문서비스업	306
제20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3	제3절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14
제21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8	제4절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0
제22절 가구 제조업	244	제3편 부록(회사의 설립과 경영)	
제23절 기타 제품 제조업	248	제1장 회사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329
제2장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제1절 회사설립	331
및 환경복원업	253	1. 법인설립 체크포인트	331
제1절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55	2. 법인설립 절차	332
제2절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60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43
제3절 환경 정화 및 복원	266		

제2절 사업자등록	346	4.벤처기업 확인요령	384
1. 개인사업자 등록	346	제5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387
2. 법인사업자 등록	348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387
3. 4대 사회보험 가입	348	2. 신청자격 및 요건	387
제2장 기술창업경영	351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제도	388
제1절 자금 · 투자 · 재무	353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인절차	390
1. 자금확보	353	제6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391
2. 투자유치	357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391
3. 재무관리	359	2. 신청자격 및 요건	391
제2절 창업기업의 회계관리	363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제도	392
1. 회계의 기초	363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인절차	392
2. 회계시스템의 관리와 회계정보의 활용	364	제7절 코스닥시장 상장	393
3. 기업의 손익계산 방법	365	1. 코스닥의 개념	393
4. 재무제표 읽는법	367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393
제3절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373	3.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	394
1.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	373	4. 코스닥시장의 상장 절차	395
2. 창업자의 조세감면	374	제8절 코넥스시장 상장	396
3. 창업기업의 절세전략	375	1. 코넥스의 개념	396
4.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379	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396
제4절 벤처기업 확인	380	3.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397
1. 벤처기업의 요건	380	4. 코넥스시장의 상장 절차	398
2. 예비벤처기업	383	참/고/문/헌	400
3. 벤처기업 제외업종	383		

제1편

기술창업실무



제1장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

제1절 기술창업의 정의

1. 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또는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창업의 개념은 확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지원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창업, 벤처창업, 기술창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창업의 정의와 개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1) 창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구 분	주요내용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High Risk - 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 되고 있음
일반창업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됨

2) 지원목적상의 분류

지원목적	관련법규	주요내용
조세이외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 이외의 창업지원 및 부담금 감면
국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의 감면
지방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감면

2. 기술창업의 정의

1) 기술창업의 정의

기술창업이라고 하면 창업 중에서 혁신기술 및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

-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
-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
- 신기술 또는 개발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위에서 영위하려는 창업
-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창업
-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요인인 기업의 창업
- 제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사회성·국제성을 지닌 창업
- 신규 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창업
- 기술의 우수성, 전문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

2) 기술창업의 형태

- (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하는 형태
- (2) 기술을 이전 받아 외부에 Spin-Off하는 형태
- (3) 대학 또는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 (4)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3. 기술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승계의 예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함 ①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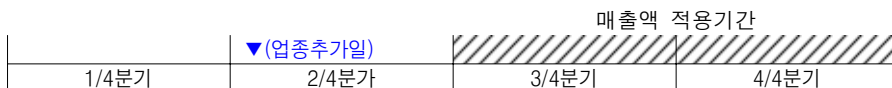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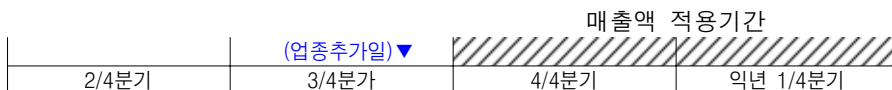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함
- 이 경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 이 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함

[매출액기준 적용사례]

•업종추가일이 4월 2일인 경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업종추가일이 7월 31일 인 경우 10월1일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의 매출액



2)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기업을 합병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①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②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제2절 기술창업의 절차 및 핵심요소

1. 기술창업의 절차

기술창업자가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창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창업을 함에 있어 준비절차를 체계화하지 않고 사업화 검증절차 없이 창업하기 때문임

기술창업의 기본 절차는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기술창업 기본 절차도 〉



2. 창업의 핵심요소

창업을 하는 이유는 창업의 성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창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

1) 사람

창업기업의 업무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의지, 능력과 자질, 사업에 임하는 태도, 구성원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됨

① 창업자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질 수 있음

② 동업자

창업자와 함께 금전, 현물 또는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부문별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분배하여 얻는 자로서 창업자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원이 됨

③ 창업기업의 팀원

창업자와 함께 창업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자를 도와서 업무를 수행

2) 창업아이디어(기술, 제품, 서비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 것인지를 결정

①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아이디어로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산되어질 수 있어야 함

②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함

③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 시장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질 지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상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어야 함

많은 경우에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고 제품을 개발한 후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

-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고객 집단
-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를 간접적으로 조절
-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 수준에 맞아야 함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 판매가격 < 고객이 느끼는 가치

-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기존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4) 자본

계획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

(1) 자기자본

조달된 자본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

①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창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 사업주가 투자하게 되고, 여러 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모두가 자금을 부담

② 법인기업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기업의 투자자는 개인, 법인(벤처캐피탈 포함) 모두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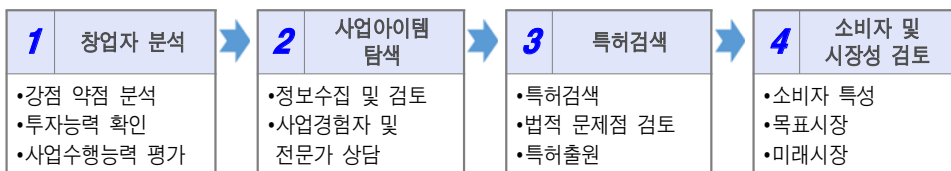
(2) 타인자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이외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친인척, 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자금 등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자본

제2장

기술창업 단계

제1단계 기술창업 구상단계



1. 창업자 분석

창업자 분석은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석 항목이므로 창업자는 아래 항목을 자가 분석으로 점검

〈 창업자 분석 항목 〉

분석 항목		분석 내용
강·약점 분석	강점	창업자의 사업수행에 강점사항을 분석
	약점	창업자의 사업수행에 약점을 분석 보완
투자능력 확인	자기자본 확보상태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 확보정도
	추가자금 조달능력	추가자금 조달능력 분석
사업수행 능력평가	소양과 적성	기업가정신, 통찰력, 창조력, 스케일, 리더십, 의지력 등
	경험 및 지식	창업관련 분야의 경험, 창업자 능력, 학문과 지식, 인적네트워크 등
	경영관리능력	창업멤버의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조직유지능력, 경영기획능력 등

2. 사업아이템 탐색

창업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보유한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아이템 탐색방법은 제품탐색법과 욕구탐색법이 있음

제품탐색법	•기존제품 탐색	•기존제품 또는 성능 등 일부 변경한 제품을 기존시장 또는 신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신제품탐색	•신제품을 개발하여 기존시장 또는 신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욕구탐색법	•외적인 환경요소와 창업자 개인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아이템 선정 방법	

3. 특허검색

1) 특허정보 검색의 필요성

(1)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출원인들의 생각〉

자신의 발명, 디자인, 상표가 참신하고 획기적이고, 충분히 특허 받을 만 하다고 생각



〈현실〉

특허출원의 경우 30~40%는 거절 결정되며, 그 중 90% 이상은 선행기술이 존재하기 때문
(누군가가 특허출원했거나 논문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대응방법〉

특허검색을 하여 자신의 발명이나 사업아이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개량설계, 회피설계 또는 특허매입 등의 전략수립·시행

(2)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 특허정보는 전 기술분야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각각의 특허정보는 상세한 설명, 도면 등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담고 있어, 창업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3) 연구개발 방향설정과 연구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까지 받았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고, 더 이상의 투자가치가 없다 할 것임
- 그러나, 연구개발 기획 및 개발단계 등의 전 과정에 걸쳐서 특허정보를 검색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기존 기술들을 참조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계별 특허조사 내용 〉

단계	조사 내용
기획단계	관심분야에 대한 특허기술동향 및 권리동향 파악
연구개발 단계	주거적인 최신 특허정보 조사를 통하여 연구방향의 확인 및 문제해결의 아이디어 획득
개발 완료 단계	타인의 선행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로 청구할 권리범위 설정·조정

2) 특허검색 방법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

- 특허검색을 직접 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특허검색 인터넷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면 되며, 외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많음
- 민간기업 등에서는 전문가 들을 위한 유료검색서비스도 운영중 (한국 : 웹스온, 미국 : 렉시스넥시스 등)
- 소송 관련 무효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나, 해외 특허출원을 준비하거나,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특허조사 등을 할 때에는 특허검색 전문 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특허정보 검색 시 유의사항

(1) 검색키워드의 선정

- 검색키워드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어구이며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대표하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그 주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키워드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요한 건이 누락되거나 추출된 건수가 많아져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색키워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기술의 이해

- 검색키워드 작성에 있어 해당 기술이나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키워드 설정이 능숙하다 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잘못 이해할 경우, 결과물이 실제 원하는 것과 전혀 상이한 것이 될 수 있음

(3) 동의어, 유의어를 감안하여 키워드 선정

- 특허문헌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는 기술의 변화 또는 작성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표기로 이루어지므로, 동의어, 유의어, 유사어 등을 감안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여야 함

- 특히, 함축적 표현, 작성자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 의미상 차이, 외국어 표기, 오타자 등까지도 감안하여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 키워드 선정 시 고려할 사항 〉

- **표현상 차이** : 키워드가 “TV” 인 경우 유사한 단어인 “티비, 텔레비전, 텔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 티브이”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특허검색에서 유사어나 동의어로 넣어야 하는 키워드
- **의미상 차이** : “배” 라는 단어의 예를 들면,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배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관련 키워드와의 연산자 조합을 통하여 정확한 의미를 부여
- **외국어** : 외국어를 키워드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단어의 단수, 복수형이나 변화형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며, 하이픈(-) 문자의 사용 등에 유의
- **오타자** : 특허명세서에도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특허를 찾기 위해서는 특허명세서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오류 중에는 의도된 오류도 많은데, 자신의 특허가 가급적 검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타자를 사용하기도 함

(4)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이용방법 (<http://www.kipris.or.kr>)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에는 국내·외 특허, 상표 등의 정보가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음

① 수록정보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

〈 키프리스 수록정보 〉

구분	수록 내용
한국	1948년 이후 현재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심판정보
해외특허	미국, 유럽, PCT,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러시아, 대만
해외상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해외디자인	미국, 일본, WIPO

〈 키프리스 정보 중 한국정보 세부내용 〉

권리명	제공 년도	제공 내용
특허·실용신안	1948 ~ 현재	서지, 초록, 전문, 행정처리사항
디자인	1948 ~ 현재	서지, 초록, 전문, 행정처리사항
상표	1950 ~ 현재	서지, 초록, 전문, 행정처리사항
심판	1956 ~ 현재	서지, 심결문, 심판이력사항
KPA(한국특허영문초록)	1979 ~ 현재	서지, 초록(영문), 전문, 행정처리사항

② 주요기능

- 통합검색 : 모든 권리정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 등)에 대하여 한 번에 검색 하는 것으로써, 초보이용자를 위한 기능. 간략한 초록정보는 물론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 가능
- 권리별검색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 권리별로 일반 키워드검색을 하거나 항목별(출원일, 성명, 발명의 명칭, 요약 등) 검색을 할 수 있음. 검색결과는 통합검색과 동일
- 부가기능 : 외국어 자동번역, 엑셀다운로드, 검색마법사 등

③ 검색사례 : 통합검색

- 통합검색은 특허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용자를 위한 자유검색기능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 등에 대하여 권리구분 없이 전 권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
- 정보가 어떤 권리인지, 어떤 국가의 정보인지 모를 때 및 검색할 대상의 항목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간단한 단어, 인명, 번호 등으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검색이 가능
- 검색할 단어(키워드)와 연산자를 조합하여 검색하는데, 연산자와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음

< 키프리스 연산자 및 입력사례 >

구분	기호	설명	입력예제
AND연산	*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자료 검색	휴대폰*케이스
OR연산	+	입력된 키워드 중 한 개라도 포함된 자료 검색	핸드폰+휴대폰
NOT연산	!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한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한개는 포함되지 않는 자료 검색	자동차*!클러치
NEAR연산	^	첫 번째 검색어와 두 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1단어(^1), 2단어(^2), 3단어(^3) 떨어진 특허실용 검색 (3단어까지만 지원하고 순서를 고려하여 검색함)	자동차^2각도
절단자연산	?	일부 번호가 제외된 번호에 대한 특허실용 검색	?-2012-0001234

< 통합검색 입력화면 >



④ 검색사례 : 검색결과 조회

-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간략한 초록정보와 함께 해당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이 가능
- 화면 상단의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 각각의 권리명을 클릭하면 해당 권리에 대한 내용 조회 가능

〈 항목별 검색화면 〉

The screenshot shows the KIPAT search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sections:

- 검색어사전**: Includes filters for '특허·실용신안', '유사검색식', '내검색식', and '한글-영역'.
- 검색어사전**: Search box with 'ex) 1020050012345, 스마트폰, H03L, 통신' and a search button.
- 검색하스토리**: A section for search history.
- 관리구분**: Checkboxes for '특허' and '실용'.
- 행정처분**: Checkboxes for '진체',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and '공개'.
- 자유검색 (전문)**: Search box with '(핸드폰+휴대폰)*발광' and an 'and' dropdown.
- IPC**: Search box with 'ex) G06Q + H04Q' and an 'and' dropdown.
- 번호정보**: Fields for '출원번호(AN)', '공개번호(OPN)', '국제출원번호(FN)', and '우선권주장번호(PN)' with example values and 'and' dropdowns. Also includes '등록번호(GN)', '공개번호(PN)', '국제공개번호(FON)', and 'WO2003008308'.
- 일자정보**: Fields for '공개일자(PD)', '등록일자(GD)', '국제출원일자(FD)', and '우선권주장일자(PD)' with example values and 'and' dropdowns. Also includes '출원일자(AD)', '공개일자(OPD)', and '국제공개일자(FOD)'.

4. 소비자 및 시장분석

1) 소비자 분석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사업수행의 출발점이나, 창업자들은 보유기술만 믿고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없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과신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패하게 됨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구매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여 사업의사결정에 반영

〈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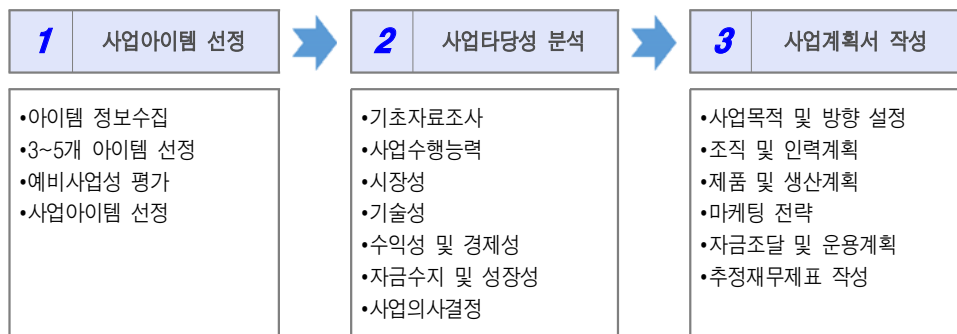
구분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지역의 문화, 전통, 사회규범, 의식기준,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
개인적 요인	연령과 생애주기, 직업과 소득, 성별과 라이프스타일 등
심리 도식적 요인	동기(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자아실현 등) 태도(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학습된 선호 경향) 경험(소비자의 경험) 개성(사교성, 자율성, 사회성, 적극성, 과시성 등)
상황적 요인	커뮤니케이션 상황, 구매 전 상황, 구매 및 소비상황, 구매 후 상황 등

2) 시장 분석

사업아이템의 진입시장을 분석하므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함

구분	주요 내용
기존시장분석	사업아이템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진입가능 여부를 검토
신규시장분석	사업아이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시장을 분석하여 진입가능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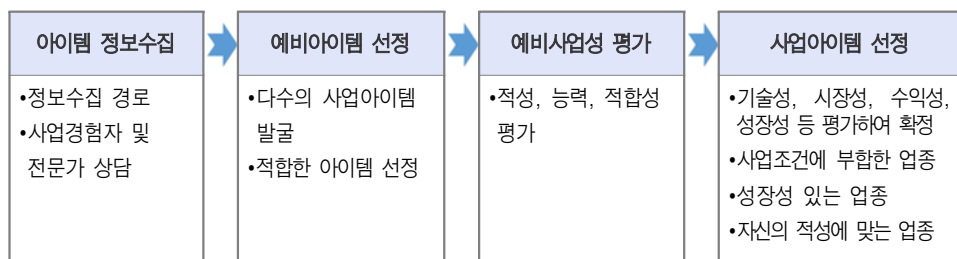
제2단계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1. 사업아이템 선정

창업 아이템 선정은 창업성공의 중요한 부분으로 선정절차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음

〈 사업아이템 선정 절차 〉



1) 아이템 정보수집

창업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아이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

〈 사업아이템 정보수집 방법 〉

구분	정보수집 경로	정보수집 방법
정보수집 및 검토	인적 네트워크	창업자가 보유한 인맥을 활용한 정보수집
	인터넷 및 미디어	창업정보 및 정책정보 사이트와 신문 등 활용
	박람회 및 전문기관	전시회나 박람회 및 창업상담회사 등 활용
사업자 및 전문가상담	사업경험자 상담	창업관련 업종 사업경험자 및 실소비자 면담
	전문가 상담	창업컨설턴트 등 전문가 상담

2) 예비아이템 선정

아이템 탐색 및 정보수집 과정을 통해 다수의 사업 아이템에서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3~5종의 예비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최종 선정

〈 아이템 선정 기준 〉

구분	선정 기준
적성·능력의 적합 여부	•적성 및 성격은 맞는가? •건강유지 능력은 있는가? •해당업종의 경험 또는 사업수행 능력·지식 유무는? •해당업종의 창업자금 조달능력은 양호한가?
시장성·입지성 전망	•해당지역에서의 시장 분석상 입지가 해당업종에 적합한가? •사업발전 단계상 도입기, 성장기 업종인가? •해당업종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가? •시장의 경쟁현황과 전망은 양호한가?
수익성 양호 여부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전망은 양호한가? •손익분기점은 얼마이며, 언제인가? •2~3년 이내 흑자실현이 가능한가? •인테리어공사 등 고정비가 권리금화에 유리한가?
상품성 우수 여부	•고객입장에서 가격에 비해 유용한 상품인가? •고객에게 인기도와 경쟁력은 있는가? •영업 및 A/S의 가능 여부는? •상품조달 및 공급의 용이성은?
위험 요소 여부	•해당업종 인·허가 문제에서 미비한 점은 없는가? •경쟁업체 및 거래업체와의 분쟁 소지여부는?

3) 예비사업성 평가

(1) 사업적합도 평가

자본 가용성, 제조역량, 마케팅 및 유통역량, 기술지원역량, 경영지원 등 예비평가

(2) 사업매력도 평가

매출 및 이익 잠재성, 성장잠재성, 경쟁자분석, 위험분산, 산업구조 개편 잠재성 등 예비평가

4) 사업아이템 선정

- 창업자 특성 분석으로 자신의 적성과 사업 조건에 맞는 업종과 사업규모 선택
-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업종으로 자신이 따라 잡을 수 있는 업종
- 생산기술 및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 지속적인 시장성이 있는 업종
-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는 업종
- 시대 변화에 따른 성장성이 있는 업종 선택
- 자신의 사업조건에 맞는 업종 선택

2. 사업타당성 분석

1)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1)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객관성 확보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실패요인을 사전점검으로 성공가능성 제고
창업비용 최소화	•신규사업의 문제점 및 제약요소를 파악함으로 사업추진 기간단축과 창업비용 최소화
성공적인 사업의 틀 마련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자금수지계획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사업 추진 세부사항 점검
경영능력 향상	•창업 준비를 통한 경영관련 분야의 균형 있는 지식습득으로 경영능력 향상

(2) 사업타당성 분석 절차



2) 기초자료조사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해 기업현황, 기업 내·외부 환경자료, 창업 아이템 관련 자료 등을 업종별 협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보증기관,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함

3)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사업의 성패는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적합도에 달려 있으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먼저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과 해당 업종에 창업자가 적합한가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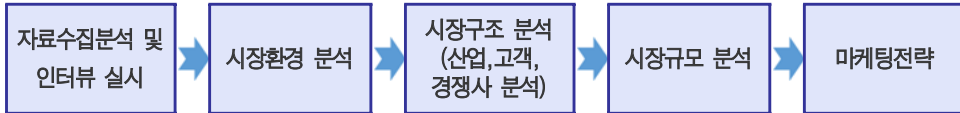
구분	분석 목적	평가 요소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계획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 •사업수행능력의 유무 확인 •기업경영관리의 자질 확인	•사업자의 소양과 적성 •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사업자의 경영관리능력

4) 시장성 분석

창업자가 처음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았을 때 대부분 소비자에게 생소한 것이 보통이며 품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매가 결코 쉽지 않음. 따라서 사업 성공의 관건이 바로 시장성과 판로확보이기 때문에 시장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

구분	분석 목적	평가 요소
시장성 분석	•고객의 확인 •시장구조 및 경쟁력 •수요 및 판매예측	•시장동향 분석 •제품성 및 경쟁력 분석 •수요예측 및 판매전략

〈 시장성분석 절차 〉



5) 기술성 분석

충분한 시장을 가진 좋은 아이템일 경우에도 시장이 원하는 가격과 창업자가 기대하는 수익이 확보되는 가격의 제품을 합리적인 기술로서 생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

기술분석 절차	주요 검토내용
계획제품의 특성분석	•제품의 용도와 주요 소비처 •제품의 주요 기능과 물리적, 화학적 특성 •표준제품 및 요구제품의 품질 수준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및 가격경쟁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생산기술의 존재여부 및 도입가능성 •요구제품의 품질 수준에 대한 기술의 적정성과 기술적 대안 및 지식재산권의 확보여부 •대체기술의 출현가능성과 기술의 수명주기 •환경성의 검토 및 공해방지시설 •안정성의 확보방안



6)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의 평가 항목은 크게 수익성전망, 손익분기점 분석, 투자수익 및 계획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분	분석 목적	평가 요소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사업의 예상 매출 파악 •사업의 추정손익 검토 •투자수익 및 손익분기점 파악 •경제성 분석	•수익전망(손익추정) •투자수익률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민감도 분석 •현금흐름 분석

(1) 수익전망(손익추정)

-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한 연도별 순이익의 적정성
- 경쟁사 대비 당기순이익의 수준
- 2~3년 내 수익 실현 가능성
- 영업 규모 대비 판매관리비 수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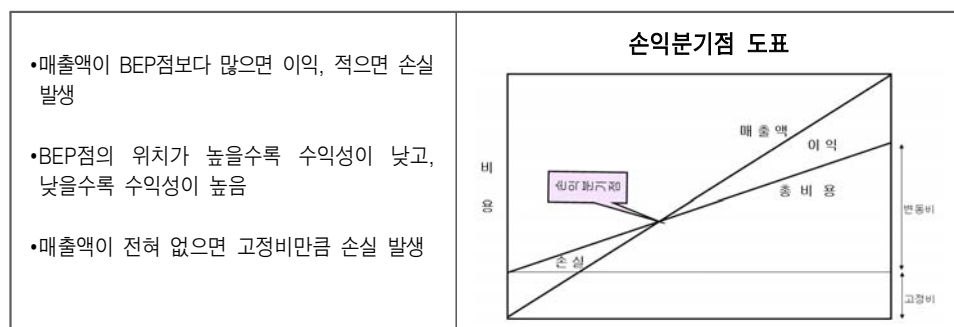
(2) 투자수익률 분석

창업을 위한 투자액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항목

- 투자수익률 수준 및 목표수익률의 실현 가능성
- 최소 금융수익 수준 이상의 수익실현 가능성

(3)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 BEP) 분석

손익분기점은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고정비, 변동비)이 일치하므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점으로써 매출목표 수립과 이익관리에 필요



등식법에 의한 손익분기점 분석	등식법 적용사례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공헌이익율 = $\frac{\text{단위당 공헌이익}}{\text{단위당 판매가격}} = \frac{\text{총 공헌이익}}{\text{총 매출액}}$ •손익분기점 판매량 = $\frac{\text{총 고정비}}{\text{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 = 손익분기점판매량 × 가격 = $\frac{\text{총 고정비}}{\text{공헌이익율}}$	단위당판매가격 1,000원, 단위당 변동비 300원, 고정비 7백만원 •단위당 공헌이익 = 1,000 - 300 = 700 •공헌이익율 = $\frac{700}{1,000} = 0.7$ •손익분기점 판매량 = $\frac{7,000,000}{700} = 10,000\text{개}$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개 × 1,000 = 1천만원 또는 7,000,000 ÷ 0.7 = 1천만원

※변동비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의 증감변화에 따라 비례해서 변동되는 비용으로서 재료비, 외주가공비, 판매수수료, 포장비 등이 이에 속함. 변동비는 기간총액으로는 매출액의 증감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비용이지만 제품단위당으로는 변동하지 않음

특히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있어 반드시 손익분기점분석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기술창업자는 계산이 복잡하여 이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간단히 손익분기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 먼저 창업 후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임차료, 급여 등)를 계산(예, 7백만원)
- 제품 1단위당 변동비(원재료비, 부품비 등)를 계산(예, 300원)
- 이때 본제품의 1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변동비를 공제한 700원이 공헌이익
- 본 사업의 경우 매월 7백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므로 제품 1단위를 팔면 700원의 공헌이익이 발생하므로 매월 10,000단위를 팔아야 고정비 7백만원을 보전할 수 있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손익분기점매출이라고 함

(4)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기업의 경영환경에서 악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설정하여 계획사업의 결과의 변화여부를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 설정 1 : 시장점유율 하락, 경쟁사의 출현 등으로 매출액이 10% 감소된 경우
- 설정 2 : 물가상승의 제 요인으로 계획보다 인건비가 10% 증가 되었을 경우
- 설정 3 : 설정 1과 설정 2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5) 경제성 분석

계획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순현재가치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의 기법을 활용하며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에 유의하여 분석진행

7) 자금수지 및 성장성

자금수지 및 성장성 분석 평가 항목은 자금 수지 및 조달능력을 검토하고 기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의 분석과 장기적인 기업 경영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

구분	분석 목적	평가 요소
자금수지 및 성장성 분석	•자금조달능력 확인 •계획사업의 위험요소 파악 •기업의 성장가능성 파악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능력 분석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분석 •위험요소 분석 •성장성 분석(기업환경종합)



소요자금 추정방법

일반적인 소요자금의 총액 = 고정자금 + 운전자금 + 초기 창업준비 비용

8) 사업 의사결정

(1) 사업규모 결정

창업자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참고로 향후 사업방향을 결정하여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규모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선정된 아이템의 투자계획에 따른 규모 결정
- 창업자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금조달 능력에 따른 규모 결정
- 사업장 확보 유무에 따른 규모 결정
- 판매계획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여부에 따른 규모결정

(2) 기업형태 결정

창업을 함에 있어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이냐,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환 시기, 전환에 따른 비용, 창업지원혜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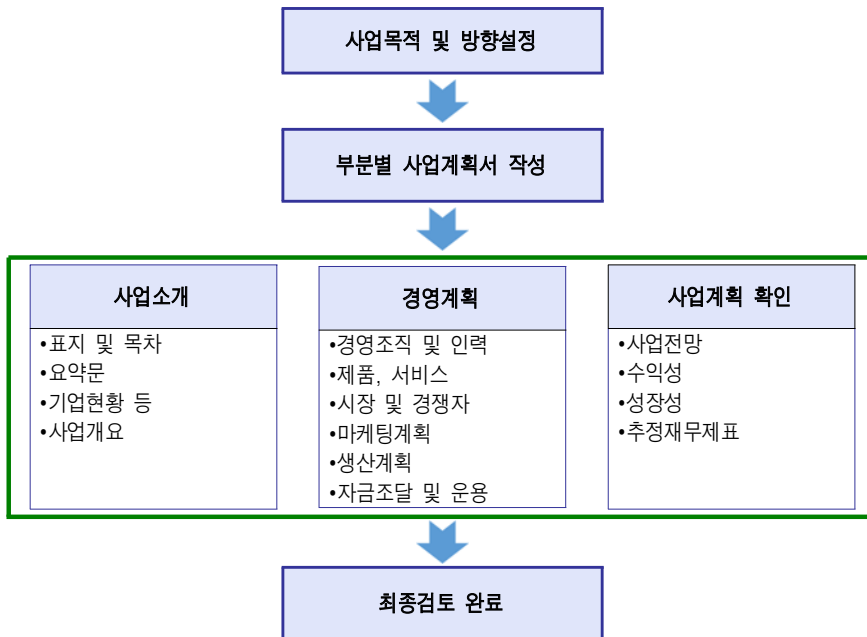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

구분	개인 기업	법인 기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한 절차	•정관 작성,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
경 영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능력의 한계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유한책임, 무한책임) •의사결정의 저속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기업주활동의 자유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기업의 영속성 결여	•기업의 영속성 유지
세제상의 차이	•소득세 과세 •일정규모이하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 본인의 급여 불인정 •장부기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	•법인세 과세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의 급여인정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증빙징취 등의 엄격성 요구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기 타	•대인 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 •대외 신용도 취약 •창의 노력의 극대화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 (재산 이전 용이) •대외적인 신용 유리 •경영관리의 효율성

〈 법인기업 형태별 비교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법적근거	상법	상법	상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책 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발기인수 또는 사원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인 이상	2인 이상	5인 이상
출자의 종류	금전, 현물(주식)	금전, 현물(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
정관인증	필요 (10억 미만 발기 설립은 불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출자단위	1주에 100원 이상 자본금 제한 없음	1좌에 100원 이상 자본금 제한 없음	출자한도 없음 등기 시 명시	출자한도 없음 등기 시 명시	출자한도 없음
검사인 선임	변태설립 시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의결기관	주주총회 (1주1의결권)	사원총회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조합원 총회
주주와 사원의 이동	원칙상자유 정관에 양도 제한 가능	좌동	무한책임사원 동의 필요	무한책임사원 동의 필요	조합원 총회
조직변경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변경가능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가능 (법원인가 필요)	합명회사로 변경 가능 (사원 동의 필요)	합자회사로 변경가능 (전사원 동의 필요)	조직변경 규정 없음
합 병	자유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합병 가능	전사원의 동의 필요	전사원의 동의 필요	전조합원의 동의 필요 협동조합 이외 조직과 합병불가

3. 사업계획서 작성



1) 사업계획서 개요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란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개발, 생산, 판매, 자금 등을 명확히 초점을 맞추어 추진 계획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계획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향후 사업추진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서류
- 계획 사업의 사업방향 및 수행능력 등을 외부에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설득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
-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초점을 명확히 맞추어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 돈 벌수 있는 아이디어(Business Idea)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킨 것

(1) 사업계획서 역할

창업자의 길잡이	•창업기업의 목표, 사업추진 방향 설정, 사업화 단계 진행 방향제시, 창업자의 실현의도, 기업 및 관리자와 종업원의 목표 추진 안내 길잡이 역할
이해관계자의 이해증진	•창업기업의 주요 문제와 상황 등의 체계적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와 정보 공유, 상호 문제 해결 전략 도출과 상호 이해 증진
커뮤니케이션 증진	•사업의 잠재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사업자의 비전과 야망이 나타나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게 함 •투자자 및 관련자들로부터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함

(2)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음
- 현상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함
- 추진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비용의 절감을 가져옴
- 실제 Project 진행 시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활용 가능함

(3) 사업계획서의 활용

내부지침용	•사업목표설정, 관련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주기적 실적분석과 개선, 향후대책 등 기업의 1년 단위 혹은 중장기 사업 전략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의 목적용
외부발표용	•자금조달(거래은행, 벤처캐피탈, 엔젤 등)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자료 •벤처기업 인증, INNO-BIZ 인증, 기타 외부기관 인증, 기타 회사 홍보자료

(4) 사업계획서의 기본 요소

☒사람 ☒기술(아이디어) ☒시장 ☒자금

(5)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정보종류	세부 내용
시장정보	•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 잠재력이 있는가? • 경쟁상대는 누구? 수익성은 어느 정도? 시장동향은 어떠한지? • 시장규모? 정부의 각종 간행물(산업동향, 경제지표 등의 2차 자료) • 시장에 관한 정보는 마케팅 의사결정에 좋은 자료가 됨
경영정보	• 입지 : 회사의 입지는 고객, 공급자, 종업원, 접근성, 물류, 환경 등 법적인 가능성 • 제조 및 외주 : 자가 제조와 외주처리 대상 • 원자재 :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공급자, 가격 • 장비 및 설비 : 필요한 설비를 목록화, 구입 및 임대결정 • 노동기술 : 특별한 기술, 각 기술부문의 인원수, 임률, 기술 인력 확보 등 결정 • 공간 : 필요한 공간의 총량을 결정하여 소유재산으로 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등을 결정 • 원가 및 판매일반관리비 : 제품의 원가와 제조에 필요한 아이템, 도구들, 각종 비용 등에 관한 것 등의 결정 정보
재무정보	• 3~5년 간의 예상 매출액 • 3~5년 동안에 투자비와 소요될 비용 • 3~5년 동안의 현금흐름 • 3~5년 동안의 재무제표

(6) 사업계획서 작성의 세 가지 입장

구분	세부 내용
고객입장의 시장중시	• 고객의 이익 실현(고객 투자금 회수, 이익의 정도) • 실질적인 구매 욕구를 증명(실험고객을 통한 제품가치 평가 증거물 제시) •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시장수요, 매출성장률, 이익 등 논리적인 주장 등)
투자자 입장 반영	• 투자환수 가능 시기를 제시 • 설득력 있는 추정손익을 제시(3~5개년 예측치) • 계수적 분석결과를 제시
창업자 입장 반영	•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준비부터 개업까지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안 • 세부계획안 작성에서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실행단계가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의 길잡이가 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작성 시기

- 사업계획서는 아이디어 개념단계에서부터 작성
- 사업모델의 기본 틀을 잡은 다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 투자

-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투여가 필요
- 사업계획서 작성 그 자체가 복잡하기 보다는 사업기획 프로세스(business planning process)가 어려움

(8)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강조할 사항

사업계획서는 제출할 대상(누구)에게서 자금조달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짐

- 사업계획서는 아이디어 개념단계에서부터 작성
- 은행 대상(대출 목적) : 재무추정치와 변제가능성 및 일자, 담보물 등이 중요
- 일반 투자자 대상 : 자본공모에 관한 관계법을 잘 살피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
- 개인 투자자 대상 : 설득할 상대에 따라 그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짐
- 벤처캐피탈 대상 : 투자유인 요인을 부각
[이들의 주요 관심] 수익성, 투자금액의 규모, 경영자의 경영능력
- 특히 경영자의 경영능력은 설득 시 매우 중요

(9)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 명확성 : 사업계획서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
- 독창성 : 경쟁업체와 구별되는 특징 부각
- 단순성 :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서술내용 단순화
- 일관성 : 지각적 통일성, 문체의 일관성 유지
- 객관성 :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

2) 부문별 사업계획서 작성

(1) 표지 및 목차

표지는 밝고 깨끗하게 하여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고 목차의 경우 검토자의 입장에서 목차를 개괄함으로써 사업계획서가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한 기업의 준비성과 치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함

(2) 요약문

계획사업의 핵심내용과 그 가치를 집약해서 설명하는 페이지로 창업 아이템이 왜 존재해야 하고 누가 어떻게 실행하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기술



요약 문서를 작성할 때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할 부분

- 기업의 제품과 목표시장을 설명
-투자자가 투자할 것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함
-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
-왜 경쟁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
- 과거 재무자료 및 미래 추정치를 요약
-미래 추정치는 사업계획 전체의 매력을 축약시킨 부분
- 경영진의 이력사항을 기술
-사업추진에 현 경영진이 얼마나 적합한지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함

(3) 기업현황 등 사업개요

기업현황은 검토자에게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요약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회사의 주주, 주요 인력, 업종, 위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목적과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비전 및 경영이념을 볼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
창업 준비 또는 창업기업	•미래 추정치를 근거로 요약 수치를 제공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보다 상세한 인물 정보를 제공 •추진 사업에 적격자임을 알림
계속기업	•요약된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3~5년 정도 요약 작성 •이러한 실적은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됨
가장 중요한 항목	•주요 인력에 관한 사항 : 모든 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함 •경영진 및 기술진에 대한 업계 경험과 전문분야를 반드시 기술 •상세한 프로필 첨부

(4) 경영조직 및 인력

기술창업자 대부분은 엔지니어출신이므로 강력하고 짜임새 있는 경영팀 조직을 구성

① 경영조직

- 회사의 예상 경영 조직도를 제시하고 부분의 역할 및 그 책임자를 소개

② 창업핵심인력

- 주요 핵심 관리자의 이력, 노하우, 직무능력, 과거의 실적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
 - 주요 핵심 관리자의 정확한 임무와 책임을 설명

(5) 제품 및 서비스

상대방에게 제품을 알리는 것이므로 쉬운 용어로 이해를 쉽게 하여 제품과 서비스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개발되어 있는지를 설명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제도적, 관습적, 문화적 장애요인들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

(6) 시장 및 경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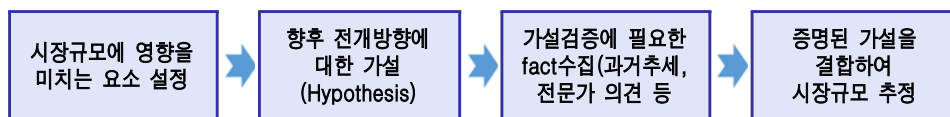
가장 어려운 부문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로 다른 부문에 앞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세분화, 경쟁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① 시장규모와 성장성(market size and growth)

시장규모는 고객의 수, 단위 당 판매, 매출액 등의 숫자로 표시되어야 함

회사가치의 급격한 증가는 시장이 큰 잠재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시장의 성장에 대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며 어떤 요소가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예, 기술, 법적인 제약 등)

〈 시장규모예측을 위한 방법론 〉



② 시장세분화

어떻게 시장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3가지는 지켜져야 함

- 각 세분화된 시장의 고객 수 및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각 세분화된 고객의 행동 양식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각 세분화된 고객은 동일한 마케팅 전략으로 공략할 수 있어야 함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세분화 방법	•지리적 변수 : 국가, 도시/농촌(인구밀도), 기후 등 •인구통계적 변수 : 나이, 성별, 소득, 직업, 종교, 교육수준 등 •행동 분석적 변수 : 제품 구매빈도, 사용량, 상표충성도, 가격 민감도, 구매 시 중요시 하는 변수 등 •심리분석적 변수 : 라이프스타일(행동, 관심, 의견)등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세분화 방법	•인구통계적 변수 : 회사규모, 산업종류, 위치 등 •운영적 변수 : 채용한 기술(예, digital, analog)등 •구매 습관적 변수 : 중앙 집권적 구매/분권적 구매, 구매기준 등 •상황적 변수 : 구매의 긴급도, 구매규모 등

③ 경쟁자(Competitor)

- 핵심가치, 목표 고객, 매출액, 가격, 시장점유, cost위치, 제품 수, 유통채널 등 비교
-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여 분석
- 경쟁우위의 요소, 무형의 자산 검토, 포지셔닝 점검

(7) 마케팅(Marketing) 전략

마케팅 계획에서 잠재고객이 누구며 그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품질, 가격,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광고 및 홍보계획 등 4P요소를 중심으로 작성

□ 가격(Price)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수준 결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계량화하여 가격총을 결정 •잠재적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가격수준을 확인해 결정	□ 유통경로(Place) •제품,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독립적인 기구 [주요 고려 요소] - 고객의 잠재적인 숫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고객이 구매하는 장소, 제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 정도, 가격의 수준, 구매빈도, 제도적법적 제약 등
□ 판매촉진(Promotion) •제품, 서비스를 사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주목(attention)을 끌고, 알리고, 설득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 •고전적인 광고 : 신문, 잡지, TV, 라디오 •Direct Marketing : mail, 전화, internet •PR : 제품, 기업, 경영자에 관한 기사 등 •전시회 및 박람회, 고객방문	□ 제품(Product) 및 서비스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관련 기술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없게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

(8)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목표, 자체개발·산학협력·기술이전·아웃소싱 등 연구개발방법,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실적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향후 연구개발 전략과 연구개발 계획 및 예산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9) 시설 및 생산계획

공장입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및 질, 고객이나 공급자의 접근 용이성 •교통편의, 물류비용, 원부자재 조달, 해당지역의 세금과 법규 등의 관점에서 점검
설비투자계획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설비도입 규모와 향후 3년간 설비투자계획 등을 제시
생산전략과 계획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과정의 설명으로 생산비용, 생산능력 등의 문제 •자금조달, 이용 가능한 노동력, 기술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제조 및 운영계획 설명 •이용가능한 원자재, 노동력, 부품, 제경비 등에 대한 분석과 생산비 및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제시 •품질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방법 및 서비스 불만의 최소화 방안

(10)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자금조달계획은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총 소요자금을 추정하여 부족한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자 투자금과 투자자투자금 등의 자기자본과 정책자금, 금융기관자금, 사금융 등의 타인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 자금조달계획 작성사례 〉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자기자금	타인자금		
				정책자금	일반자금	기타
시설자금	토 지	700,000	500,000		200,000	
	건물, 구축물 설비 및 차량	330,000		330,000		
	소 계	1,030,000	500,000	330,000	200,000	
운전자금	허가 및 준비	100,000	50,000			50,000
	인 건 비	50,000	30,000			20,000
	초도 물품 구입비	320,000	220,000		100,000	
	소 계	470,000	300,000		100,000	70,000
합 계		1,500,000	800,000	330,000	300,000	70,000

(11) 추진일정

계획사업의 실행일정으로 간트 차트(Gantt Chart) 등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일정지연 등 차질을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12) 추정재무제표 작성

재무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다른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를 계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를 예측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이러한 재무계획은 아래의 5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첫째,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의 작성

둘째, 예측기간 5년 정도 작성(적어도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후 1년까지 작성)

셋째, 최초 2년간의 상세한 재무계획(월별 혹은 분기별)을 작성하고, 이후는 연간기준으로 작성

넷째, 모든 숫자는 합리적인 가정(assumption)에 근거해야 함(모든 가정은 사업계획 내에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함)

다섯째, 경제성 분석결과(NPV, IRR, Payback 기간) 및 주요 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여야 함

3) 용도별 사업계획서 작성 포인트

주요 분야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 벤처캐피탈,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기관의 투자 목적 및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작성 -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는 투자자금 회수 방안을 반드시 제시 -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는 시장의 장래성, 사업의 발전성과 수익성, 경영진의 능력 및 신뢰성 등을 강조
정책자금용 사업계획서	- 정책자금 조달용 사업계획서는 잘 포장된 사업계획서보다 기업의 신용과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 - 자금 승인 시에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보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 정책자금용 사업계획서는 소요자금, 자금운용계획, 상환계획 등 자금흐름과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 사업계획서 평가 시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매출처, 매입처, 관계회사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용도를 향상

주요 분야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정부출연 과제 및 평가용 사업계획서	• 정부출연과제 및 평가용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경쟁력,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위주로 작성 • 사업성공을 위한 기술의 명확한 비교우위 차별성과 독창성이 확보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기술 • 기술개발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등 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필수적이므로 보다 성실하게 작성 • 기술과 관련하여 기존 기술과 비교, 경쟁기술의 현황, 해외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경쟁우위성 등의 입증에도 중점을 둠 •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된 경우는 기업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효과적

제3단계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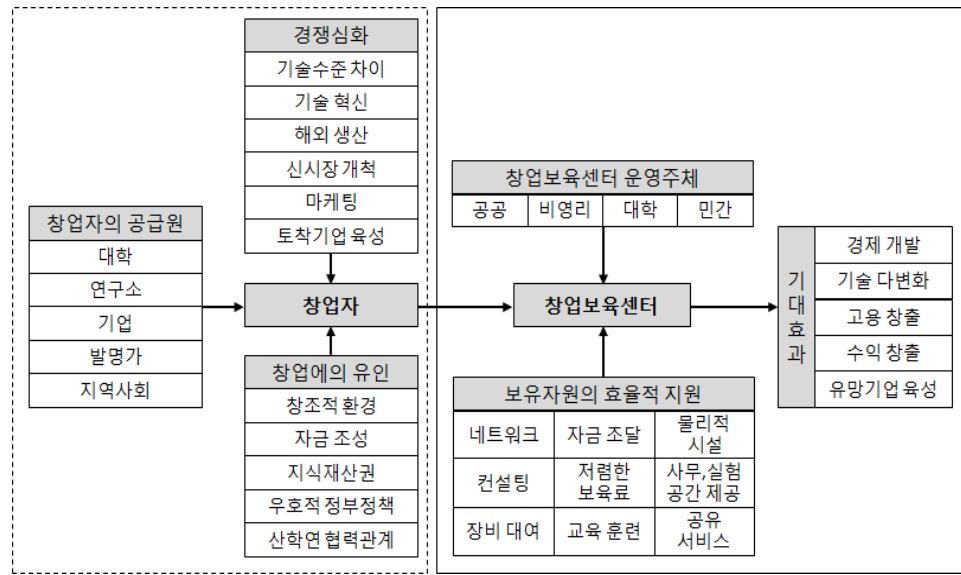
1.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창업보육센터 기능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조달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보육기관임

시설 및 설비의 제공, 사무·행정지원, 일반 경영, 마케팅, 회계, 재무, 법률 등 각종 경영자원,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가 그들의 에너지를 조직의 경영이나 자금조달에 쏟기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



2) 창업보육센터 역할

창업보육센터는 일반적으로 보육(입주)기업의 생존 및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신사업창출,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기존 산업의 쇠퇴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적 대표(특정) 산업을 육성하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2.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지원내용

1) 기술부문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평가,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 지원(전문가 POOL), 보육닥터, 생산공정 관리

2) 경영부문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 경영진단, 사업진행도 평가, 재무, 세무, 회계, 홍보,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 지원, 아웃소싱, 교육지원,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 법률자문, 특허지원, 정보제공 등

3) 행정부문

입주 및 졸업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 공단입주 등 지자체와의 연계, 사무장비(팩스, 복사 등)지원, 회의실, 휴게실 제공, 창고/보관 시설, 주차/보안서비스, 전산시스템 지원, 사업관련 유료 DB지원

4) 자금부문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 투자(IR)지원, 엔젤클럽 정보 지원

3.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현황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
서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건국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국민대학교 / (주)닷네임코리아 / 서울대학교 / 동국대학교 / 마포구청 / 배화여자대학교 / 삼육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국방기술품질원 / (사)벤처기업협회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재)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여자대학교 / (주)벤처포트 / 한성대학교 / 한국세라믹기술원 / 세종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송실대학교 / 씨씨브이씨밸류업센터(주) / 창업진흥원(엠피화)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덕대학교 / 투썸비아이관리전문(주) / 한양대학교 / 호서대학교 / 한국기술벤처재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서울대학교기술지주(주)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산울산	경남정보대학교 / 경성대학교 / 동명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아대학교 / 동의대학교 / 동주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가톨릭대학교 / 부산대학교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신라대학교 / 영산대학교 / 한국신발피혁연구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폴리텍Ⅶ대학(부산캠퍼스) / 한국해양대학교 / 중소조선연구원 / 울산대학교
대구경북	경북대학교 / 계명대학교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대구공업대학교 /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 / 대구보건대학교 / 수성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 한국폴리텍Ⅵ대학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경북과학대학교 / 경북도립대학교 / 경운대학교 / 경일대학교 / 구미대학교 / 구미시 / 금오공과대학교 / 대경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대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 동양대학교 / 문경대학교 / 안동과학대학교 / 안동대학교 / 영남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 위덕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동대학교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광주전남 제주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대학교 / 중소기업진흥공단(광주) / 광주보건대학 / 광주광역시 동구청 / 남부대학교 / 동강대학교 / 송원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 전남대학교 / 조선대학교 / 조선이공대학교 / 한국광기술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호남대학교 / 광양보건대학교 /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 동신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생물의약연구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영암) / 순천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천연자원연구원) / 전남환경산업진흥원 / 전남도립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제주대학교 / 제주한라대학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
경기	고등기술연구원 / KTB네트워크(주) / 가천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강남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 화이텍인베스트먼트(주) / 경기대학교 / 경민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김포대학교 / 단국대학교 / 대진대학교 / 동국대학교 / 동서울대학교 / 동원대학교 / 명지대학교 / 서울대학교 / (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수원시청 / 수원여자대학 / 신구대학교 / 아주대학교 / 안산대학교 / 안양대학교 / 연성대학교 / 오산대학교 / 용인송담대학 / 유한대학교 / 을지대학교 /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 전자부품연구원 / 중앙대학교 / 중소기업진흥공단(안산)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한경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 협성대학교 / (재)경기테크노파크 / 여주대학교
인천	인천대학교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 인하대학교 / 한국폴리텍2대학
대전충남	한국과학기술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대전대학교 / 목원대학교 / 배재대학교 / 창업진흥원(연구원특화) / 충남대학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전전력연구원 / 한남대학교 / 한밭대학교 / 한국디자인진흥원 / 건양대학교 / 공주대학교 / 공주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재)충남테크노파크 / 단국대학교 / 백석대학교 / 백석문화대학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신성대학교 / 중부대학교 / 청운대학교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폴리텍IV대학 / 한서대학교 / 호서대학교 / 상명대학교 / 홍익대학교 / 한국영상대학교
강원	강릉영동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관광대학교 / 강원대학교 / 강원도립대학 / 경동대학교 / 관동대학교 / 강원대학교 / 상지대학교 / 연세대학교(원주) / 연세대학교(장애인특화) / 중소기업진흥공단(원주)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한림성심대학교 / 한라대학교 / 한림대학교 / 한중대학교 /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충북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 고려대학교 / 대원대학교 / 서원대학교 / 세명대학교 / 영동대학교 / 청주대학교 / 충북대학교 / 충북도립대학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충청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중원대학교
전북	군산대학교 / 백제예술대학교 / 전자부품연구원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 우석대학교 / 원광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 전주대학교 / 전주비전대학교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호원대학교 / 전북대학교 /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경남대학교 / 경남도립거창대학 /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 경상남도 / 경상대학교 / 마산대학교 /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 / 동원과학기술대학 / 영산대학교 / 인제대학교 / 창원대학교 / 창원문성대학 / 한국국제대학교 / 한국승강기대학교 / 한국전기연구원 / (재)바이오21센터

※참조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Bi-net)/www.bi.go.kr

제4단계 기술개발 단계

1. 기술개발

1) 기술의 유형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기술유형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일반적 기술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공통된 지식을 뜻하는 기술 •수학, 물리학, 화학 등과 같은 순수과학, 외국어 등의 기초지식, 공구 설계능력,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의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기술의 바탕이 필요
시스템 특유기술	•특정한 산업분야에서 하나의 제품이나 시스템의 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고유기술 •특정 프로젝트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특정 시스템과 직결되는 정교한 절차나 특수해법과 같은 기술 •제조업의 경우 한 제조품목에 고유한 기술
회사특유기술	• 특정회사 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독특한 기술 •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노하우 • 경쟁회사와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2)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대기업과 달리 창업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장으로부터의 요구나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경우가 많음. 기술개발의 유형을 개발속도와 폭에 의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기술개발유형	주요 내용
점진적 혁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획기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혁신
기술적 혁신	•기술적 측면에서는 새롭지만 구매자에게 새로운 이익을 제공해 주지 않는 혁신 •단순한 기능을 보완하거나 능률을 향상시켜 원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혁신
획기적 혁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새로운 혁신 •소비패턴을 바꾸거나 창출하고 소비행위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혁신

3) 기술개발전략

창업가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다수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보다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핵심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함

(1) 중요성에 따른 분류

다음 중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해야 하는 프로젝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기술개발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시간적으로 절박하지는 않으나 언젠가는 해야 하는 기술개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현재는 영향이 적지만 자원과 인력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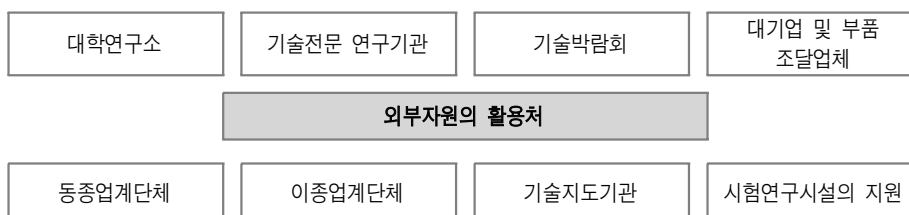
(2)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장점 및 단점과 기술개발의 필요와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구분	장점	단점
자체개발	- 기술개발과정에서 비밀유지 - 직접 통제 가능 - 개발비용 조정 가능	- 인력의 부족 및 개발비용 부담 - 기술관련 전문지식의 결여 - 시행착오에 의한 시간 낭비
위탁개발	- 고급 인력의 활용 가능 - 전문지식의 보완 - 시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 많은 비용의 부담 - 직접 통제여려움 - 기술정보의 유출가능성

(3) 외부 자원의 활용

기술수준의 낙후, 인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2)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

(1) 인적·물적 요건

구분			신고 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 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업의 요건

구분	내용
벤처기업	-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유효한 경우 ※창업일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기산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구분	내용
소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위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중견기업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3)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① 일반적인 경우

구분	내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구분	내용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이상의 학위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야간과정 대학원생은 예외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으로 복무중인 자	•산업체 병역특례자 •외국인
비상근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간근로자	•기술고문 등 비상근 근로자 •정부의 지원에 의해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연구업무 이외 겸직하는 것이 명백한 자	•대표이사 및 감사 •기술자문역, 대학교수 등 타 업무 겸임자

③ 연구소장

구분	내용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대학교수의 겸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학교수에 한해서는 연구소장을 겸임할 수 있으나 겸임의 경우 연구개발전담요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④ 독립된 연구공간의 범위

구분	내용
기본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소기업 등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용도구분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음 •주거(주택)용은 기업연구소로 불인정
복층구조의 건축물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나지 않은 복층(상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설립 불가능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
전대차 또는 가압류되어 있는 건축물	•명확하게 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

⑤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범위

구분	내용
범위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함
위치	•독립공간인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함
겸용시설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
PC, S/W 등	•연구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 S/W(MS오피스, 한글 등) •연구기자재로 인정되는 경우 : 연구분야가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목적용으로 고가의 PC나 S/W(캐드, 일러스트 등)로 연구소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3)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및 신고 절차

(1) 신고할 수 있는 기업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음

① 연구개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②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란?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생서비스(산업)	3701~3900
소매	4711, 4731, 4781, 4791
출판	5811~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5822, 6201~6209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911~5912, 5920
부가통신	6121~6129
정보서비스	6311~6399
광고	7131~713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7211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7212~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7410, 7430, 7521~7599
교육기관(산업)	8550, 8561~8569, 8570
의료 및 보건(산업)	8610~869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9011~9019
문화서비스(기타)	9021~9029

(2) 신고방법

① 先설립·後신고 체계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온라인 시스템(www.rnd.or.kr)을 통해서 접수

② 신고할 곳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설립 및 신고절차

단 계	준비 및 확인사항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여부 확인	•대상기업 여부 확인 •과학기술분야/지식서비스분야(시행령 별표 1에 한정)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여부
↓		
2	인적요건 확인 및 구비	•연구소 직원 수의 적정여부 •연구전담요원이 자격요건에 부합여부 확인 •인적요건의 미비 시 구비
↓		
3	물적 요건 확인 및 구비	•독립 공간 요건의 충족여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적합여부 •물적 요건의 미비시 구비
↓		
4	신고서류의 작성 및 제출	•필수서류 작성 •선택적 서류 작성필요 여부 확인 •온라인 작성 서류의 출력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첨부서류 포함)
↓		
5	심사	•서류심사 •필요 시 현지실사 •종합평가
↓		
6	연구소 인정	•인정신청서 제출 •인정서 발급
↓		
7	사후관리	•변경신고 •연구개발활동 조사 보고 •현지 확인
↓		
8	연구소 취소	•자진취소 •직권취소

(4) 신고서 및 구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등 4개 지정서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소 내부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조직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도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교원·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인원(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보험가입보고서(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보험가입보고서(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5) 신고서 및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는 확인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서류 목록	비고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 -본회로 접수한 서류 일체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립서류 사본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연구전담요원 자격보유여부 확인
•직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	상시종업원 확인

4)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준비요령

(1) 대상기업여부의 확인

당해 기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상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

(2) 인적요건의 확인 및 보완

기업규모별 보유해야 할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확인하고 현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전담인력을 파악한 다음 미달되는 인력이 있을 경우에 신규채용 등을 통하여 보완

(3) 물적요건의 확인 및 보완

① 독립된 공간의 확보

연구소 이외의 업무공간과 독립된 공간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

②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배치

연구, 개발 업무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배치

③ 현판의 부착

- 연구소용 독립 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함
-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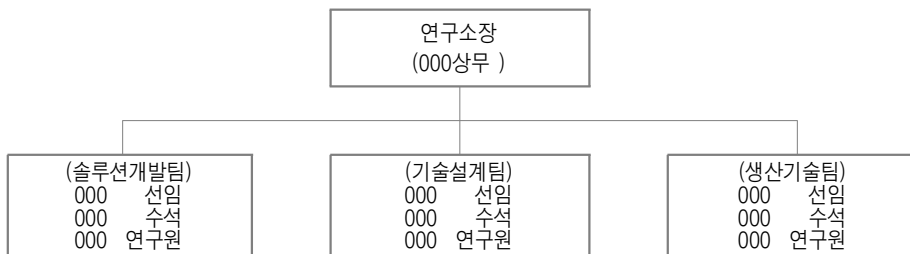
④ 연구소 조직의 구성

- 일반적인 경우

연구소도 회사의 한 부서이므로 조직체계에 나타나도록 조직을 구성하되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하고 연구소 조직도 내에는 연구원 이름을 기재

- 연구원이 많은 경우

- 연구소 조직을 포함하여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부서 내에는 인원수만 표시)
- 연구소 조직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조직도 내에 연구원 명을 기재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사후관리

(1)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매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조사내용 : 일반현황,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기타 연구개발 활동 실적,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

② 조사기간 : 매년 3월 중순~4월 말

③ 대상기관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④ 설문응답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

(2) 현지 확인

① 현지 확인 대상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및 자문
- 연구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의 연구 전담여부 확인
- 연구공간의 적정성 판단
- 연구소 인정요건 확보여부 및 연구 활동 수행여부 종합 판단
-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상담

② 현지 확인에 따른 결과 조치

연구개발 활동	인정요건 충족	신고내용 일치	조치내용
있음	충족	일치	이상 없음
	미달	공간확보, 인력부족	조건부 취소(30일내 보완)
		인력확보, 공간미달	조건부 취소(30일내 보완)
		인력, 공간 모두 미달	인정 취소(자진, 직권, 허위)
없음	미달	불일치	인정 취소(허위 처리)

3.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1)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참여 기업	주관 기관
사업의 개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 시 장비사용료를 지원	
지원 대상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내용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70~6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정부지원비율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장비이용 지원 실적에 따라 일정규모의 운영비 지원
참여 방법	2015.1.28~연중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 사업 참여 신청 *승인된 기업의 경우 2월부터 바우처를 구입 하여 장비이용 가능	중소기업청 공고(매년 초)에 의한 접수 및 평가 선정 *신청기간 : 신규 2015.1.2 ~ 1.16, 기존 주관기관 2015.1.2~1.9
바우처 구매 및 사용 절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바우처 구매 신청 후 기업부담금 납부 •구입한 바우처로 선정된 주관기관의 필요장비 이용 후 사용료 지급(온라인) *바우처 : 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쿠폰형태의 증서 (신청서 및 자세한 참여방법, 운영요령은 동 시스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참고) •사용완료 후 참여기업 지원한도(최대 3천만원/기업) 내에서 추가구매 가능 •단,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구입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이후 환불조치)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받을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지원절차 (참여기업 기준)	지원 절차	비고
	1.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2.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참여기업
	3. 서류검토 및 참여승인	지방청
	4. 온라인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5. 바우처 발행	전문기관
	6. 장비이용 http://www.smtech.go.kr	참여기업, 주관기관
	7. 사용료 지급	전문기관, 주관기관
	8.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2) 창업보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 지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의 보유장비 목록을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별 센터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시설 및 장비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사용 가능한 공동연구장비를 이용하거나 연구 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4.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1) 지식재산권 개요

(1) 지식재산 : 보호하면 돈이 되는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무형재산이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재산적 가치가 없어짐

(2) 지식재산권 :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음

(3)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 산업분야 권리에 대한 호칭

< 산업재산권의 구분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한 것(대발명)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사례 (자동차)	하이브리드엔진, ABS 등 자동차관련 원천·핵심기술	백미러 구조, 컵홀더 체결장치 등 유용한 고안	후미등을 2가지 색의 2중원 구조로 하여 심미감을 높인 것	자동차 제조회사가 생산한 자동차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보호기간	20년	10년	15년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 산업재산권의 종류별 사례 >

*특허 : 원천/핵심기술
•ABS 브레이크 시스템 •저연비 엔진관련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실용신안 : 주변개량기술
•백미러와 관련된 기술 •내부의 컵 홀더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등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차체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백미러, 룸미러 등의 형상

*상표 : 상품의 명칭
•자동차 명칭(소나타, 체어맨, 로체, SM 등) •제조사 명칭(현대, 기아, 쌍용 등)

2)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특허권 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후발기업이 자신의 기술, 디자인, 상표를 모방해서 시장을 잠식해도 막을 방법이 없음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선발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후발 경쟁기업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회피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시장진입 시기가 늦어지게 됨
수익창출을 위하여	특허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하게 해 줄 수도 있음. 즉, 제품생산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음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침해소송 등을 당한 경우 상대방 기업과 겨룰 수 있는 대응무기가 필요하다. 관련 분야에서 상대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음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1) 등록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이 10~20년이며,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2) 감춰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영업비밀

- 영업비밀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감춰야 하는 할 뿐만 아니라, 감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함
- 또한, 원래부터 자신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¹⁾를 이용하거나 기술자료 임치센터²⁾에 맡기는 방법이 있음

(3) 나타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저작권

-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함
- 머릿속에 있는 구상, 아이디어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함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방법

(1) 출원

- 특허청에 신청(이를 출원이라 함)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

1)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영 (<https://www.tradesecret.or.kr>)

2) 기술자료 임치센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 (<http://www.kescrow.or.kr>)

-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되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등록이 거절됨

특허를 출원한다면 언제 해야 하나?	
선출원주의	빠를수록 좋다 : 동일발명의 복수 출원 시, 출원일이 빠른 것 하나만 특허 받음
신규성 상실	제품이 판매된 후에는 특허받기 어려움
공지예외 주장	논문, 박람회 출품 카탈로그 등에 발표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출원서류 작성이나 절차의 진행 등을 변리사가 대신해 줄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음
-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및 중소기업은 대폭 할인됨
-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거나, 이미 알려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선행 기술 검색 필요
- 특허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는 핵심 권리범위로써, 부동산에 있어서 지번, 면적 등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하며,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보호받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출원 필요
- 해외출원은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2) 심사·등록·심판

- 출원 후에 권리부여를 위한 심사과정이 오래 소요됨(권리 종류나 상황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 무형의 지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형식과 표현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
- 특허청의 심사에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실체적 내용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실체심사가 있음

- 심사관은 실체심사 과정에서 선행지식(특허, 논문,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을 검색한 후 출원내용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심사관은 실체심사결과 신청된 출원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자가 있으면 거절결정을 함
- 심사관은 통상 실체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는 반박의견(의견서) 제출이나 출원내용을 수정(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
- 심사관 실체심사 후 등록결정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심판원에서 패했을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신속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함(소정의 추가수수료 납부)
- 다른 사람의 출원에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효심판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권리행사

-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내어야 함
-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자기 혼자만 쓸 수도 있고, 타인에게 라이선스(실시권)를 허락할 수도 있음
- 실시권에는 특정인만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용실시권과 여러 사람에게 허락해 주는 통상실시권이 있음

(4) 기타

- 출원 및 등록내용은 공보로 발간되는데, 출원내용을 공개하는 공개공보와 등록된 내용을 알리는 등록공보가 있음
- 상품광고 등에서 “특허출원 제0000호”, “상표출원 제0000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등록된 권리가 아니며 “등록특허”, “등록상표”라는 표현은 등록된 권리에만 사용할 수 있음

5) 권리별 특징

(1)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 특허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요건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예) 에너지공급 없이 돌아가는 영구기관 •자연법칙과 관계없는 발명 -예) 경제법칙, 수학기식, 작도법, 게임규칙, 교수방법 등 •자연법칙 그 자체 -예)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예) 천연물(예 :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론상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발명 -예) 지구 전체를 자외선흡수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반복재현성이 없는 발명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	•출원일 전에 문헌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국내, 국외 불문) -예) 국내문헌에는 없지만 외국문헌에 기재된 기술 •출원일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알려진 발명 -예) 외국에서 이미 시판되는 물건, 본인이 판매한 제품
기존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분야 종사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공중위생 등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예) 위조지폐 제조장치, 아편흡입기구, 음란도구 등

〈특허의 신청과 처리절차〉

① 특허출원서의 작성 및 제출

- 특허출원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으로 구성되며, 발명이 물품(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이거나,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
- 명세서에는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술 분야의 사람들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②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처리절차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

- 방식심사 : 제출된 특허출원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보정요구
- 출원공개 : 출원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공보로 공표
- 실체심사 : 심사관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를 판단하여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 등록 : 심사관에 의하여 등록결정이 된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 등록

※최근에는 심사처리기간이 빨라져서 대부분 공개공보 발간 전에 실체심사가 이루어짐

③ 등록결정서를 받은 경우 : 3년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신청

-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특허권이 형성되고, 특허청의 특허등록 원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게 됨
- 특허권은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권리가 유지됨

④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 :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청구 또는 특허심판 청구

- 재심사청구 :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출원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심사받고자 하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 심판청구 : 출원내용 변경 없이 심사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됨
- 청구기간 : 재심사나 심판청구는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심판 : 특허심판원에서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판관이 판단하며,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심사관에게 환송시켜 다시 심사토록 함
- 특허소송 : 특허심판원에서도 거절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함

알아두어야 할 특허 상식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받을 수 없지만,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출원하면 특허 받을 수 있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존기술을 개량하거나 기존기술들을 조합해도 특허 받을 수 있음	
•원발명을 개량하여 특허 받은 경우, 그 발명을 실시하려면 원발명자로부터 라이선스가 필요함	
•기존 물건이나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다면 이 또한 특허 받을 수 있음	
•음식에 대한 특허도 가능함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면 특허 받을 수 없음	
•특허출원 전에 자기가 세미나나 논문을 통해 발표하면 그것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공지 예외적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특허를 받을 수 있음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음. 구체적인 실현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허를 사고파는 장터도 있음	
•심사관이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는 사유의 90%는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기존 문헌에 있기 때문이며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2) 디자인권

○ 디자인권의 성립, 등록요건과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요건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이 있어야 한다 (성립요건)	•물품에 대한 것이 아닌 것(글자체, 아이콘 등은 예외) -예) 건축물디자인, 캐릭터 그 자체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육안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 -예) 분자구조, 반도체칩 배치설계도 등 •미적 감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예) 기능이나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
공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한 것 -예) 자연물, 순수미술작품, 서비스디자인, 부동산 등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일 전에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디자인(국내, 국외 불문) -예) 국내문헌에는 없지만 외국문헌에 기재된 디자인 •출원일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알려진 디자인 -예) 외국에서 이미 시판되는 물건의 디자인
창작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해당분야 종사자가 용이하게 창안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 -예) 계란모양의 비누, 자동차모양의 완구, ET 닮은 저금통

※허용되지 않는 디자인권 : 국기, 국장, 훈장, 기장, 공공기관 등의 표장 등과 유사한 디자인이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음

〈디자인의 신청과 처리절차〉

① 디자인출원서의 작성 및 제출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디자인출원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으로 구성되며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해도 가능

② 처리절차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처리절차도 특허출원서의 처리절차와 유사하며 다만, 출원공개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개

알아두어야 할 디자인권 상식

•유사 디자인

자기의 등록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 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한 벌 물품 디자인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 한 벌의 차 세트, 깎연용구세트 등)

•비밀 디자인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무심사 디자인 등록

직물지, 포장지 및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기본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 않음)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출원료 등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부분 디자인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글자체 디자인

글자체 즉,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간주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외국출원

다른 나라에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방법은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출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헤이그 국제출원이라고 부르며 절차는 PCT국제특허와 유사

(3) 상표권

- 상표의 기능 :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재산
- 상표의 구분 :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구분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정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과자, 옷, 자동차 등)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금융업, 요식업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
사례				
권리자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남해축방멸치 영어조합법인

- 상표의 종류 :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결합상표
-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으며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로 출원가능

종류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결합상표
설명	한글, 한자, 외국어, 숫자 등	동·식물 및 다양한 형상의 도형	문자나 도형에 특정 색채가 추가되어 색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등이 결합된 상표
사례				

- 상표권의 등록요건
- 상표의 본질적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함

- 따라서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상표 등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등과 다음과 같은 상표들은 등록받을 수 없음

〈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사례 〉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사례
상품의 보통명칭 사용 상표	•CAR(자동차), 청바지(피복제품), 생수(생수제품)
그 상품에 관용하는 상표	•정종 · 사케(청주류), 깡 · 스낵(과자류)
산지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사용하는 상표	•금산인삼, 품질보증가위, 더덕소주, 정력드링크, 둥근두부 등
지리적 명칭 ·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왕족발, 대전막걸리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표시한 상표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되거나 2자 이내의 외국문자 •2개의 숫자를 결합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기호 또는 ㄱ 등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http://, www, @, CYBER(통신업), NEWS(자료제공업)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공공기관 등의 표장 등과 유사한 디자인이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은 등록받을 수 없음

〈 상표권의 등록신청과 처리절차 〉

① 상표등록출원서의 작성 및 제출

-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면 정해진 양식의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함. 상표등록출원서류는 상표등록출원서, 상표견본(가로, 세로 각각 8cm) 및 상표에 대한 설명서로 구성
-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의 처리절차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
 -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의 처리절차는 특허출원서의 처리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상표에서는 출원공개 제도가 없으며 출원공고 제도가 있는데,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 가능함

알아두어야 할 상표권 상식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면 모든 상품종류에 대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법이 규정해 둔 테두리 내에서 그 상표의 권리가 미칠 상품, 서비스업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때 정하는 상품, 서비스업을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라 함

•**상표의 동일, 유사판단** :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것을 상표의 유사라고 함.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상표의 속성인 외관형상이 유사하거나(예: HOP와 HCP), 호칭이 유사하거나(예: NHK와 MHK) 또는 의미가 유사(예: 왕과 KING) 한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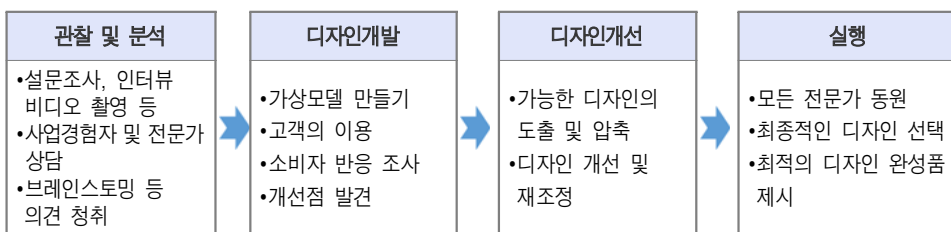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판단** :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상품은 상표출원, 상표심사, 상표권의 효력, 상표 침해 문제에 있어서 표지와 일체 불가분적 의미를 가지게 됨. 예를 들어,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동일·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비로소 혼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국,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은 상품의 동일·유사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음

•**다류 1출원**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출원서로 묶어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입체 상표** :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 상표(예: 코카콜라병 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제5단계 상품화 단계

1. 디자인 개발



1) 관찰 및 분석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을 결정하여 기록
- 디자이너 및 계획제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음
- 계획 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문조사, 비디오촬영, 인터뷰 등을 통해 기획해야 할 디자인이 무엇인지 추적함
- 관찰한 내용을 갖고 사업경험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함
-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

2) 디자인 개발

- 계획제품에 대하여 산업디자인을 적용하고 가상 모델을 만들
- 원래 상품과 똑같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고객들이 직접 이용해 보도록 함
- 제품의 모형을 만들어 보거나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찾음
- 소비자들의 반응은 모조리 기록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즉각 수용하여 반영

3) 개선

-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몇 가지로 압축하고 한 가지를 선택
- 소비자들의 보다 세심한 의견을 반영, 미세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짐
- 디자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재조정을 실시

4)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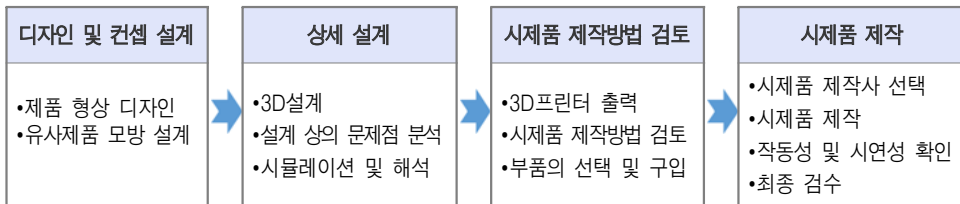
- 제품생산과 관련한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 최종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냄
- 다방면의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디자인을 검토하고 완성품을 내놓음
- 필요에 따라 디자인 MOCK-UP을 제작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 기업의 제품과 목표시장을 설명
 -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야 함
- 위탁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의 체결
 - 디자인 목표 및 사업수행기간, 가격, 창업가의 참여방법, 역할 구분, 검수방법 등
- 디자인 개발과정 및 내용의 확인
 - 계획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과정 및 절차와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2. 시제품 제작



1) 디자인 및 컨셉 설계

- 디자인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결정되어진 결과를 기초로 디자인 전개 방향을 설정
- 유사 제품의 이미지와 이미지 스케일 상에서 비교해 보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최적의 디자인과 제품 컨셉을 결정

2) 상세 설계

(1) 상세설계의 개념

- 제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설계의 최종 단계
-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요구사항 명세서의 모든 내용을 구현해야 함
- 이해가 쉬워서 구현 또는 테스트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유지 보수 시 변경이 용이해야 함

(2) 상세설계에서의 활동 과 결정

- 비용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자체 제작, 구입 또는 외부 제작을 검토해야 함
- 부품 및 자재의 선택과 크기를 결정하고 자재 명세서를 작성
- 기술도면과 제품 설계사양을 작성 한 후 검토 후 최종 설계를 완성
- 세부 도면을 이용하여 생산계획에 따른 최종 비용을 계산

3) 시제품 제작방법 검토

(1) 목업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구현이 비교적 쉬운 기존 제품의 일부 변경 또는 표준적인 기존 소재의 변형과 결합, 응용 등

(2) 상황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구현 방법의 검토

- 3D프린터의 활용,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공법, 마스터와 실리콘 금형, 주물, 선

재의 가공, 아크릴의 가공, 파이렉스 유리 및 크리스털의 가공, 톱슨 목금형, 레이저 가공, 스카시, 시보리 등

(3) 다양한 공정의 후가공 검토

- 시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장, 부식, 인쇄, 연마, 염색, 증착 필름 전사, 레이저 마킹, 도금, 코팅, 샌딩 등 다양한 후가공 공정에 대해 검토해야 함

(4) 자체제작 또는 외부 위탁 제작의 결정

- 다양한 공정의 후가공 검토 비용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자체 제작 또는 외부 제작을 결정

4) 시제품 제작

(1) 시제품제작사의 선택

- 계획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보유하여야 함

(2) 시제품 제작

- 제품설계가 완료되면 시제품을 제작하여 상품화 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모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외형 디자인, 기능성, 사용성, 제작 및 조립성, 원가 및 투자비 분석, 고객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금형의 개발

- 금형의 개발업체는 생산까지 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생산품에 대하여 금형제작 업체와 양산업체간 다툼이 발생될 수 있음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분야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
- 제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문제가 없음
- 워킹 목업을 갖고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 하고 협의해야 함
- 계획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함임

3. 제품인증제도

1) 법정 강제인증제도 현황

구분	관련부처	대상분야		관련 법률	대상품목
안전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선/전동기등
		공산품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유모차 등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산용로프 등
		승강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등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렌지 등
		고압가스용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2종 압력용기 등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광택제 등
		항공기부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고정의 소형비행기 등
	국토 교통부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등
		내화구조		건축법	건축용 벽체 등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저 등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	제작자동차
		항공기		항공법	항공기 등
	미래창조 과학부	무선설비기기		전파법	무전기기류 등
		전자파적합등록		전파법	정보기기류 등
	해양수산부	선박 및 선박용 물건		선박안전법	구명정 등
	고용노동부	유해/위험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전단기 등
		방호장치 및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등
	국민안전처	소방용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용품
식품	식품의약품 안전처	축산물 HACCP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가공업 등
		식품 HACCP		식품위생법	어류류 등

구분	관련부처	대상분야	관련 법률	대상품목
성능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계기 등
		에너지효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형광램프 등
	환경부	정수기	먹는물 관리법	정수기구조/재질 등
		교정용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교정가스 등
품질	국토교통부	벽체의 차음구조	건축법	건축물의 경계벽, 간막이벽 등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주택법	공동주택 바닥슬라브
		주택성능등급인정	주택법	공동주택
환경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등
		자동차소음	소음진동규제법	제작자동차
		자동차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자동차
		고형연료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자재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	기름여과장치 등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환경관리법	용존산소측정기 등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약사법	의약품/마약류 등
		화장품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신원료심사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지정대상 고시품목 의료기기

2) KC 국가통합인증마크 소개

(1) 개요

개 요 (강제)	- 국가통합인증마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강제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 158개가 있음 - 이니셜은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로 표기
대상을 표시방법	 - 대상물 : 제품 - 표시방법 : 제품 또는 포장

(2) KC마크로 통합되는 강제인증마크

마크	이름	분야	주관부처
	공산품 안전인증마크	유모차, 압력솥, 보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 마크	등산용로프, 건전지, 보안경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승강기 인증 마크	조속기, 완충기, 비상정지장치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안전인증마크	전선, 전원코드, 청소기, TV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압가스용기(검마크)	안전밸브, 압축기, 증발기 등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보호포장	방향제, 세정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기기 인증	전화기, 모뎀, PC 등	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냉장고, 냉방기, 형광램프, 승용차 등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검사필증 물마크	정수기	환경부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등	고용노동부
	가스용품(검마크)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연소기 등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 검정마크	전기계량기, 체온계, 저울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용품 검정마크	소화기, 방염재 등	소방방재청

(3)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도운영부서	환경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	변경사항 없음	단, 법정인증제도 도입 시 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인증대상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제품인 증품목	변경 사항 없음	
인증 기관	각 개별법에서 정한 인증기관	변경 사항 없음	
인증 마크	 등 개별 인증마크 사용	 마크로 통합하여 사용	2년간 기존마크 병용 사용 가능
심사절차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심사(20개 유형)	9개 표준인증심사 유형 중 선택하여 심사	
인증 심사원	개별법에서 정한 심사원	변경 사항 없음	

3) 신기술·신제품 인증

구분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조기 발굴	•기술표준원에서 사전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인증의 효율성 제고
산업 트렌드	•신기술 상용화 •기술기대 촉진 •제품신뢰성 제고 •초기시장진출 조성	•인증제의 품목 •엔지니어링 기술 •이주가 되는 플랜트 •임상실험 필요 의약품 •KS, KICS 제품
인증시점	•신기술 개발 완료 후	•제품실용화한지 3년 이내 신개발 제품
준비할 사항	•기술설명서 •ISO 인증서 •제품시험 성적서 •산업재산권의 인증 실적자료	•제품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선행기술 조사서
관련업종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기술 및 제품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한 제품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
우대내용	•기술우대보증 등 자금지원 시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 사업회사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판로확대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577-0900(1544-7115)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577-0900(1544-7115)

4) 해외인증마크

지역	인증마크	인증명	인증대상
유럽		CE Marking	•EU의 공동규격에 상품 •안전,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 준수 •EU, EFTA 지역 및 터키 내에서 추가 인증없이 자유로이 유통가능함을 나타내는 유럽의 적합성평가인증마크
유럽		e-Mark	•승용차 및 트레일러 등(총 60개 품목) •자동차 및 그 부품에 적용되는 EU의 강제인증으로 회원국중 어느 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인증은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
독일		GS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총 125개 품목) •GS마크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혹은 "품"자 마크와 유사하며 •독일 시장에 통용되는 각종의 공산품에 대하여 독일의 DIN 혹은 EN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마치면 GS 마크가 부여
폴란드		B mark	•가정용 전기기기류 등(총 40개 품목) •폴란드의 EU가입에 따라 폴란드 B마크는 자발적 테스트 마크가 되었고 EU의 강제인증제도인 CE마킹을 따름 •현재의 PCBC는 폴란드내의 인증기관중 하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스위스		SEV	•누전차단기 등(총 26개 품목) •교류 50V이상 1000V이하, 직류 75이상 1500V이하의 전기 제품에 적용되고, 새로운 규정은 제삼자 또는 제조업자의 자기 인증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벨기에		CEBEC	•낮은 전압(1000V) 전기제품 인증 •교류 50V에서 1000V, 직류 75V에서 1500V까지의 전압에 사용되는 전기기계 기구 및 전선은 반드시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함. 벨기에는 EC 및 EFTA 가맹국의 인증마크 부착 기기 및 부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
덴마크		DEMKO	•덴마크 전기 규격 •DEMKO는 규격 안을 작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덴마크 전기 규격의 대부분은, EN, HD, IEC 등의 국제 규격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 혹은 덴마크의 규격차이점(deviation)이 반영된 경우도 있음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공장승인 규격, 강제규격 •제품을 노르웨이 선급협회의 검사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테스트 및 공정, 생산설비 및 검사 및 시험 장비까지 심사를 받아야 인증이 가능한 강제적용 규격
그리스		ELOT	•가정용 전기기기류 등(총 40개 품목) •그리스 표준규격이나 기타 국제기준에 합당하게 제조된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 부여

지역	인증마크	인증명	인증대상
슬로바키아		ESS	- 가정용 기기 등(총 13개 품목) - EVPP에 의해 인정된 ESS 적합성 마크는 관련 규격과 제품의 적합성을 나타내고 제품안전상징, 안전 및 EMC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다양한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초로서 제공
체코		ESC	- 가정용 전기기기류 등(총 38개 품목) - 체코의 자율 규제제도로서 EZU인증제도의 ESC마크는 전기 안정성을 인증하는 체코의 고유마크
프랑스		NF	- 프랑스 내에서만 유용하며, 프랑스에 수출을 위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제도는 없음 - 프랑스에서도 유럽전역에 효력을 발휘하는 CE가 적용되나,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인증은 없음. 반면 강제성이 없는 자율인증인 NF마크가 품질보증제도로 시행
이탈리아		IMQ	- 환경 보호 및 안전 등(총 57개 품목) - IMQ마크는 특정의 IEC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전자·전기 제품에만 적용되는 마크
네덜란드		KEMA	- 개폐기기류 등(총 122개 품목) - KEMA의 KEUR마크는 N.V.KEMA가 관리. KEMA-KEUR 마크는 전기 제품만의 인증마크임 - KEMA는 세계적인 규격 기관 중 하나로써 대용량 전기기계 및 전기 부품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증을 획득했을 때 품질의 신뢰성(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영국		Kitemark	- 신체 보호용 기기 등(총 37개 품목)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품질관리 프로세스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호소할 수 있음
스페인		AENOR	- 가정용 전기기기류 등(총 53개 품목) - AENOR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64000여개의 품목에 대하여 12000여개의 인증 조직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헝가리		MEEI	- 가정용 전기기기류 등(총 45개 품목) - 헝가리에서는 전기설비, 기기, 제품 및 부속품은, 시험을 받아,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안전성과 전기안전규격과의 적합성이 승인된 후에야 유통 및 제조가 가능함 - MEEI는 부품, 전기 제품, 가정용품, 그리고 공업용 장비에 대한 승인 마크임
터키		TSE Mark	- 터키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임 - 터키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신발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재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 - TS규격에 일치함이 확인된 제품은 TSE로부터 라이선스가 허용됨

지역	인증마크	인증명	인증대상
호주		Standards Mark	•비디오 등(총 244개 품목) •다른 인증에 비해 호주 내의 거주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음 •SAI-Global의 인증마크를 직접 제품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인증에 대한 사용권한이 제조자(Manufacturer)에게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
오스트리아		OVE	•VE 마크는 오스트리아 전기 기술법에 의거한 전기기기, 통신용 기기 등에 대한 강제 인증임 •VE 마크는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와 유럽 전기기기 통일안전규격 위원회(CEE)의 안전규격과 무선간섭, 전원시스템에 관한 외란, 일부 기기의 성능(오븐, 냉장고) 항목을 포함
스웨덴		SEMCO	•스웨덴 전기 안전 규격 •스웨덴은 전기법(Electrical Act)에 의해서 별도로 선정된 기기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하여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판매, 전달, 획득 등이 금지 •SEMCO는 Nordic/EMKO 협정의 회원국으로 S-mark를 활용하여 기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규격 획득이 가능함
핀란드		FIMKO	•내부장착용 전원공급장치 등(총 50개 품목) •핀란드 전기안전 규격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FI에서의 시험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표시함 •Nordic/EMKO 협정의 회원국으로 Fi-mark를 활용하여 기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규격 획득이 가능
호주		A-Tick	•가정용기기 등(총 34개 품목)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제품의 종류 및 적용 기술기준에 따라 수준(level)1, 2, 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 •제품이 비적합성을 나타내는 경우 제품에 경고문구와 함께 Non-compliance label을 부착
일본		PSE	•고무절연전선 등(총 453개 품목) •국내에는 제조자가, 수입품의 경우는 경제산업성에 신고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 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5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으로 구분
중국		CCC	•전자, 전기통신 등 132개 품목 인증 •CCEE인증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의 CCIB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품인증제도를 CCC인증제도로 통합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대리상 및 수입상은 동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내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됨

지역	인증마크	인증명	인증대상
말레이시아		ST& SIRIM	•Two pole plug with supply cord (max. 2.5A) 등 (총 143개 품목) •강제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은 SIRIM 인증을 받아야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며 임의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이 SIRIM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마크로 시장 진출에 용이
필리핀		PS	•Air conditioners/Electric heat pumps, Dehumidifiers 등(총 92개) •품질 경영시스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국내·외 제조업체에게 마크 부여 •PS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를 할 수 없음 •제품신뢰성 향상 및 시장 경쟁력 확보
태국		Mandatory Standard Mark	•Incandescent lamps 등(총 95개 품목) •태국산업규격 (Thai Industrial Standards)에 따른 제품 인증 제도로 태국에 제조 혹은 수입되는 강제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Mandatory Standard Mark 인증을 받고 마크를 부착해야 함 •강제규격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만 태국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
미국		UL	•가전기기 등(총 295개 품목)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안전시험기관이며, UL에서 제정한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는,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체, 판매상, 수입업체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음
아르헨티나		Safety Mark (S-Mark)	•전선 및 케이블류 등(총 13개 품목) •아르헨티나 내에서 판매되는 AC50-1000 V 및 DC50-1500V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아르헨티나 인가기관인 OAA(The Argentine Organisation of Crediting)에서 인가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강제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
멕시코		NOM	•Household appliances 등(총 57개 품목)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있으며 이중 일부 규격들은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인증기관이 정해진 NOM 규격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
캐나다		CSA	•가정용 가스기기 등(총 260개 품목) •CSA의 인증을 받을 경우, 각 주는 물론 캐나다 전역에 걸쳐 효력이 있음 •Gas 사용기기의 경우, 안전검사는 세계적 수준이므로 북미 전 지역에서 CSA 인증이 UL 인증보다 안전성 보장의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고 북미지역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인지도가 높음

※참고사이트 : 국가표준인증종합지원센터(www.standar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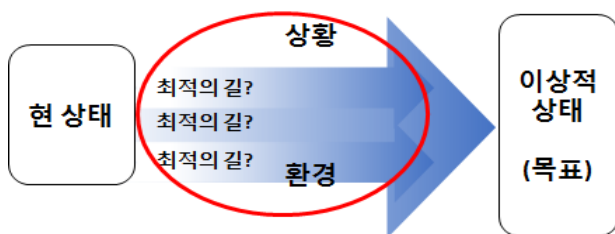
제6단계 사업화 단계

1. 마케팅전략 수립

1) 마케팅 전략의 개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장과 경쟁상황 등에 관한 분석을 행하고 기업 내의 마케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이상적 상태(목표)를 향해 환경 또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

마케팅 전략의 수준은 기업수준, 사업부수준, 사업단위수준, 제품수준으로 나누어 짐



2) 현 상태의 분석

이상적인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현 상태의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의한 후 사명문을 작성하고 사업의 목표를 정하며, 기업의 경쟁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것

사업의 정의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얻는 편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기업의 사명	기업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규명하는 것
사업의 목표	회사의 각 단계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
경쟁분석	현재의 경쟁자, 잠재적 진입자, 대체품의 위협, 공급자의 공급능력, 구매자의 교섭능력

3) 이상적 상태의 선택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이상적 상태를 정하고 최적의 길을 정해야 하는데 최적의 길이란 자원의 배분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도구로서는 BCG 매트릭스 모델과 GE 매트릭스 모델이 있음

(1) BCG 매트릭스 모델

기업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시장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이라는 2개의 축을 갖는 공간에 물음표(question mark), 별(star), 자금젖소(cash cow), 개(dog)의 4개의 셀에 나타내어 각 사업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분석 도구로서 각 셀상의 특징과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장-점유율 분석: BCG매트릭스

높음	별  수익 : 높고 안정적임 현금흐름 : 중립적 전략 : 성장을 위한 지속적 투자	물음표 수익 : 낮고 불안정함 현금흐름 : (-) 시장점유를 위한 자금투자필요 전략 : 사업을 확대하여 별로 이동시킬 것인지 혹은 철수할 것인지를 결정 
	시장성장률 자금젖소  수익 : 높고 안정적임 현금흐름 : 높고 안정적임 전략 : 현상유지전략 필요	개  수익 : 낮음 현금흐름 : 중립적 혹은 (-) 전략 : 철수요망

높음
상대적
시장점유율
낮음

(2) GE 매트릭스 모델

시장 매력도와 사업 강점의 2가지 차원으로 평가하는 분석 모델로서 여러 사업 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사업 단위를 평가하여 집중 육성할 사업 군과 철수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여 기업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GE 매트릭스 〉

시장 매력도	사업강점			
	시장지위 유지 및 집중 투자	시장지위구축을 위한 투자	선별적 투자	높음
	선별적 투자	선별적 투자, 독자적 수익창출	제한된 확장, 단계적 철수	중간
	시장지위 보호 및 신규진출 탐색	독자적 수익창출	철수	낮음
	높음	중간	낮음	

9개의 셀은 각각 전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치별 포함하고 있는 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집중투자, 사업확장	 즉시 또는 단계적 철수	 선택적 투자, 수익창출
--	--	--



산업매력도 및 사업강점

- 산업매력도 :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이익률, 경쟁강도, 수요 변동상황,
- 사업 강점 : 상대적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판매효율성, 고객에 관한 정보 등

4) 마케팅전략수립 프로세스

마케팅전략수립 프로세스란 마케팅 문제해결이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분석을 통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보유 역량을 분석한 후 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계획, 실행, 통제의 단계를 거쳐 수행됨

〈 마케팅전략 수립 프로세스 〉



5) 외부환경 분석

창업자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자사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에 대해 집중분석하고 창업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고려함

(1) 거시환경 분석(PEST)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

〈 거시환경 분석 체크리스트 〉

환경 요인	분석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시사점
정치적, 법적 환경요인	정치이념, 정책노선, 개혁정책, 지원정책, 무역장벽 및 자유화, 조세, 특허, 저작권, 안전, 환경, 규제 또는 규제완화 등을 분석			
경제적 환경요인	국제경제상황, 경기주기,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금융/재정정책, 소비성향, 금융시장의 변화, 임금수준, 에너지 가격 등			
사회, 문화적 환경요인	인구구조,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행태, 여성의 사회진출, 환경보호·에너지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소비문화, 인터넷 보급률,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의 활동 등			
기술적 환경요인	정보기술 및 신기술의 발전, 기술혁신 및 확산, 신제품 혁신, 고객관리도구, 전자상거래 기술, 솔루션 개발 기술,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지원등			
기타의 환경요인	정치적 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이외의 기타 환경요인			

(2) 산업환경 분석

창업자는 기술창업분야에서의 전략수립을 위해 산업동향, 시장, 기술, 수명주기, 유통채널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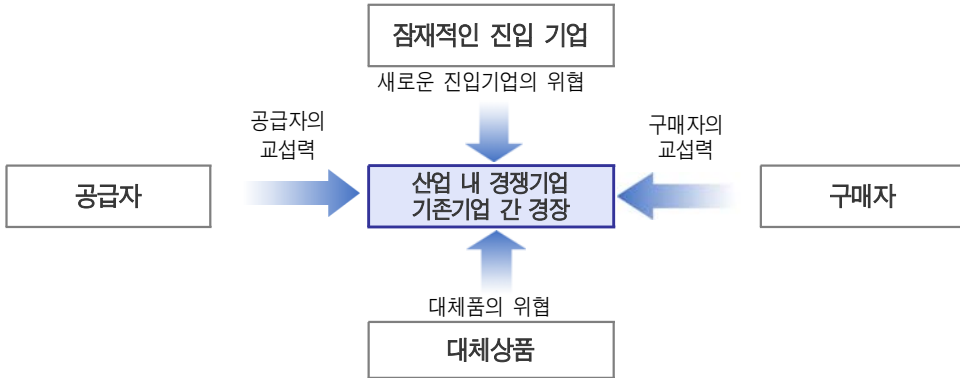
〈 산업환경 분석 체크리스트 〉

환경요인	분석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산업동향, 트렌드	산업자동화 트렌드, 생산 및 소비트렌드, 산업의 발전 전망, 기술동향, 유통시스템의 변화, 산업정책의 변화 동향 등		
시장규모 및 성장성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가능성, 공급자 및 수요자의 현황 시장의 특성, 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기호변화, 시장규모 추이분석 등		
기술 및 원가구조	신기술 및 기술 인프라, 제품 및 기술수준, 요구제품 및 요구기술수준, 기술도입가능성, 제품 및 생산 수준, 요구제품에 대한 원가 및 이익구조 등		
산업의 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유통채널	유통채널의 유형, 유통채널의 단계, 유통구조의 형태, 유통채널의 주요 동향 등		
기타	주요 성공요인, 미래 발전 전망 등		

(3) 경쟁환경 분석

창업자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경쟁자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주요 분석 내용은 산업 내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등



〈 경쟁환경 분석 체크리스트 〉

구분	분석요소	기회요인	위협요인	시사점
기존기업 간의 경쟁	산업 성장성, 제품차별성, 고정비 또는 함몰비, 간헐적인 수요 초과, 브랜드 지명도, 전환비용, 경쟁의 집중도와 균형, 정보의 복잡성, 경쟁자의 다양성, 후퇴장벽 등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규모의 경제, 브랜드 지명도, 독점적 제품 차별성, 전환비용, 소요 자본, 유통망, 정부시책, 압도적 비용 우위, 독점적 학습, 요구되는 입력자원, 독점적 저비용 제품 설계비, 예상되는 보복 등			
대체상품의 위협	대체재의 출현 가능성, 전환비용, 대체재의 성능대비 가격, 대체재에 대한 구매자의 반응 등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력, 기업집중도 대비, 구매자 집중도, 구매자의 수, 기업의 전환비용 대비, 구매자의 전환비용, 구매자의 정보, 후방통합 능력, 대체제품, 총 구매 가격, 브랜드 지명도, 제품 차별성			
공급자의 교섭력	입력물의 차별성, 산업내 공급자와 기업의 전환비용, 대체재의 존재여부, 공급자 집중도, 공급량, 산업 내 기업의 전방통합의 위협과 관련한 후방 통합의 위협 등			

(4) 소비자행동 분석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 발생 단계부터 실제 구매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복잡한 과정이 외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

구분	분석요소	기회요인	위협요인	시사점
정보처리과정	자극, 노출, 주의, 지각, 해석, 태도, 기억, 정보의 인출			
구매의사결정과정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결정 및 구매, 구매 후 행동			
소비자행동의 영향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6) 내부환경 분석

창업자는 체계적인 내부자원 분석을 통해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경쟁적 위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분석방법임. 과거 성과와의 비교, 산업 진화 단계에 따른 평가, 경쟁사와의 비교, 산업 내 핵심성공요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 있음

(1) 기능별 내부능력 분석

기업활동의 주요 기능 부문별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개발

부문	핵심요소	강점	약점	시사점
경영전반	경영자의 능력, 기업이미지, 기업문화, 정보시스템 등			
R&D/기술	신제품개발, R&D투자 연구개발인력, 기술개발체제, 경험 및 노하우, 기술차별성, 특허보유정도 등			
생산	설비의 효율성, 공장입지, 생산성, 공정 혁신, 품질, 원부자재 조달, 생산능력, 제품의 다양성			
인사/조직	조직체계 및 인사정책, 인력의 질과 숙련도, 교육훈련투자, 노사관계			
재무	매출/수익, 재무구조, 자본조달능력, 자금 운용능력 등			
마케팅	브랜드파워, 가격정책, 고객기반, 고객서비스, 유통망/유통경로, 촉진활동, 영업조직, 시장점유율 등			
글로벌화	수출비중, 해외시장기반, 국제적 전문인력			

(2) 가치사슬 분석

기업의 전략적 단위활동을 구분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 하고 원가발생의 원천 및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원천(가치창출 원천)을 분석

부문	핵심요소	강점	약점	시사점
주요활동	투입물류, 생산 및 운영, 산출물,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			
지원활동	투입요소의 획득,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기업의 하부구조			
가치사슬 연계	가치사슬 내의 연계 공급자나 유통경로의 가치사슬과 기업의 가치사슬의 연계 등			

7)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 SWOT 분석

창업자는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한 결과를 결합하여 회사의 전략을 수립

구분	내용
개 념	기업의 환경 분석과 내부 능력 분석의 결과를 결합하여 전략 방안을 도출하는 것 SWOT는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표현 기업의 강점(Strengths) 기업의 약점(Weaknesses) 환경의 기회(Opportunities) 환경의 위협(Threats)
전 제	효과적인 전략이란 환경의 기회와 기업의 강점은 활용하면서, 기업의 약점과 환경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바탕을 둠
역 할	기업이 처한 대내외의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업이 선택 가능한 전략 대안들을 도출하는데 하나의 논리적 틀을 제공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우리 회사는 어떠한 강점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가? •우리의 약점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환경의 기회를 선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가장 우려되는 환경의 위협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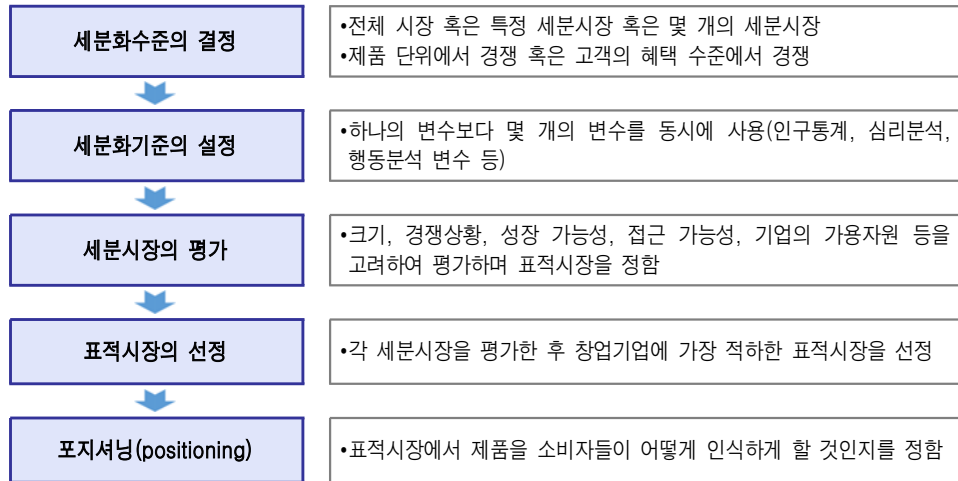
(2) SWOT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기업 외부의 기회와 위협에 대응 시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

구분	강점(S)	약점(W)
기회(O)	SO 전략(우선수행과제)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이 이용되는 전략 •가장 호의적인 상황으로서 환경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내부의 강점이 많은 경우 •이 경우에는 공격적, 성장 지향적인 전략이 바람직	WO 전략(우선보완과제)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시장의 기회는 풍부하나 내부 능력의 취약성으로 기회 활용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 •내부 약점의 단기적 개선을 통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
위협(T)	ST 전략(위험해결과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 •강점이 많은 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여건이 불리한 상황 •이 경우에는 다른 제품 시장에서 현재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즉 다각화 전략이 바람직	WT 전략(장기보완과제) •위험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기업의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서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 능력도 취약한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략방향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어적 전략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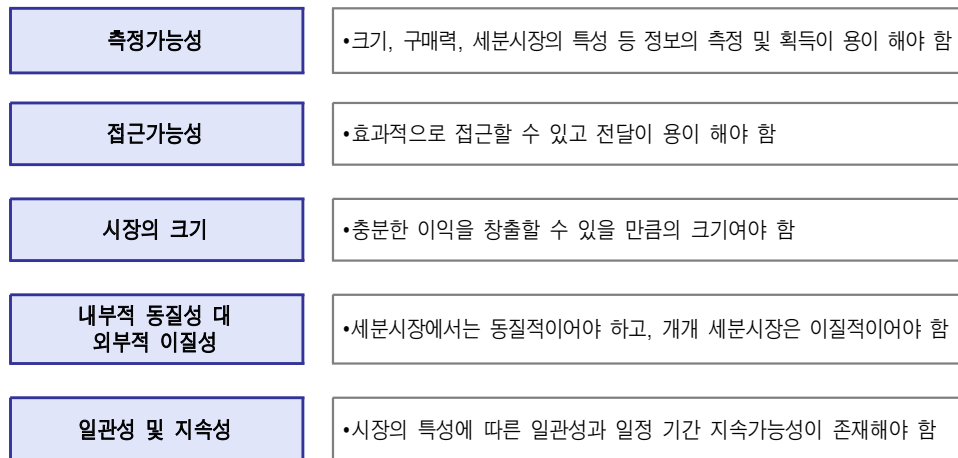
8) STP 전략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고객집단을 나누고 기업의 역량과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자사와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매력적인 시장을 선정한 후 고객들의 마음에 자사의 상품이 자리 잡게 하는 과정



(1) 시장세분화

① 시장세분화의 요건



② 시장세분화에 사용되는 기준들

지리적 변수	•국가, 지역, 도시의 크기, 인구밀도, 기후 등
인구통계적 변수	•나이, 성별, 소득, 직업, 교육수준, 종교, 인종, 세대, 국적, 가족규모 등
심리분석적 변수	•사회적 계층, 생활양식, 개성 등
행태적 변수	•구매 또는 사용상황, 추구하는 편익, 사용량, 상표충성도, 구매자의 상태 등

(2) 표적시장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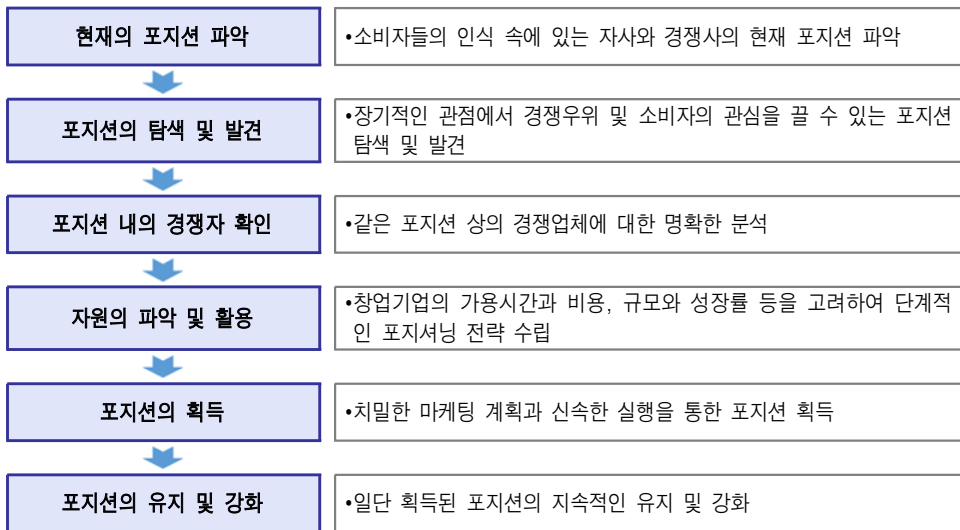
세분화 된 시장을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창업기업과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매력적인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하며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목표와의 일치, 기업의 능력과 자원, 경쟁적 우위 등을 고려

유형	주요 내용	장점	단점
비차별화 전략	•세분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 •대량생산, 대량유통, 광고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 •세분화가 덜 진행된 도입기에 사용될 수 있음 •가격경쟁과 고객 불만족 초래 가능성	•전체시장에 단일마케팅 •규모의 경제로 생산 및 재고관리 비용의 절감	•특징 없는 제품의 제공 •적용분야가 제한적임 •경쟁사가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위험도가 높음
차별화 전략	•세분시장마다 차별적인 마케팅프로그램을 사용 •자원이 풍부한 기업이 사용 가능, 비용이 많이 소요 •전체 판매량 증가, 소비자만족 증가의 이점	•두개 이상 시장에 동시에 진입 •위험부담 감소 •많은 소비자 확보로 매출액과 이익 증가	•고 비용발생 •자기잠식 우려
집중화 전략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시장을 공략 •자원이나 능력이 한정되어 있을 때 사용가능 •하나의 세분시장(니치마켓)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세분시장 내 소비자욕구의 변화, 강력한 경쟁자 진입 등의 경우 위험분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창업기업에 적합 •소비자의 욕구 파악 •자원의 집중화 •시장 안에서의 강력한 위치 점유	•대기업 경쟁사 진입이 쉬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높은 위험의 감수

(3) 제품 포지셔닝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제품과는 다른 차별적인 특징을 갖도록 제품개념을 정하여 소비자의 인식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광고, 포장, 디자인, 촉진활동 등의 수단을 총 동원하여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① 포지셔닝의 절차와 유의점



② 포지셔닝의 유형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 제품의 속성 중 경쟁적 우위를 갖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행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	• 제품의 추상적인 편익을 강조하여 포지셔닝(정서적, 사색적인 고급 이미지 등)
사용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 제품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용목적을 묘사하여 포지셔닝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 제품 사용자나 사용계층을 이용하여 포지셔닝(소비자 자신에게 맞는 제품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
경쟁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 경쟁제품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포지셔닝 하는 방법

9) 마케팅믹스

(1) 제품전략

창업기업은 자사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

① 제품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제품의 속성	제품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품질	•목표 시장 내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 및 품질의 일관성 •가격대비 품질 수준과 가치수준 고려 •경쟁제품의 품질 수준 고려 •전사적 품질관리
특성	•목표 시장 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특성 부여 •제품 특성의 부여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제품특성에 대비 기업의 소요비용
브랜드	•자사 제품의 이점, 품질, 편익을 나타내주는 브랜드 명 결정 •소비자의 인지가 용이 •법적 보호가 가능하고 독창성
디자인	•목표시장 내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디자인 결정 •가격대비 디자인 품질 고려 •제품의 특징과 가치가 표현
포장	•제품의 속성에 적합해야 함(규격, 형태 등) •가격 요인 고려 포장재 질 결정 •제품 디자인의 기능적, 심미적 요인 충족 •제품의 정보제공 및 브랜드 인지

② 제품믹스 관리

구분	주요 내용
제품믹스의 폭에 관한 의사결정	•특정 제품계열을 유지하거나 확장할 것인지 혹은 철수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마케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믹스 유지 필요
제품계열의 길이 및 깊이에 관한 의사결정	•품목을 추가하는 확장전략 •품목을 줄이는 축소전략
기존 제품의 폐기전략	•잔여 제품력이 향상되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 •수확전략, 제품계열의 단순화 전략, 철수전략을 통해 신중히 대응
기존 제품의 수정전략	•제품의 특징 중에서 하나 이상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품질수정, 기능수정, 스타일 수정

(2) 유통전략

창업기업은 거래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전략을 수립

① 유통경로의 설계

구분	주요 내용
고객의 서비스 기대수준의 분석	•대기시간, 입지의 편의성, 최소 구매단위의 크기, 제품의 다양성 등의 면에서 고객의 욕구를 분석 •고객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야 함
유통경로목표의 설정	•고객의 욕구와 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유통경로의 목표를 설정 •제품특성, 회사특성, 중간상 특성, 경쟁사 특성, 환경요인을 고려 (예) 직장여성 들 중 60%가 5분 이내의 운전으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구축하며 “신제품 출시 후 12개월 이내에 목표를 달성” 등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최적의 경로대안 결정	•목표가 설정되면 경로대안을 결정 •이용할 중간상의 유형, 필요한 중간상의 수, 각 경로구성원의 조건과 책임 등을 정함
주요 경로대안의 평가	•경제성, 통제가능성, 적응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한 후 결정 -경제적 평가 : 기대 판매량, 비용, 수익성 비교 -통제적 평가 : 통제가능성 평가 -적응적 평가 :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가능성 평가

② 유통경로 구성원의 선정과 관리

구분	주요 내용
경로구성원의 선택	•신용능력, 영업사원의 규모, 판매능력, 명성,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수익성 및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중간상을 선택
경로구성원의 관리와 동기부여	•긍정적 동기부여 수단과 부정적 동기부여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여 관리
경로구성원의 성과평가	•판매할당량, 평균재고수준, 배송시간, 불량품 처리, 프로모션 협조, 훈련프로그램 등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에 따라 적절히 보상을 하거나 불량할 경우 제거

(3) 가격전략

가격은 소비자의 구매행동 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서 창업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

① 목표중심의 가격전략

구분	검토 내용
시장 확대	•저가격전략, 대중시장 공략, 신규 시장 선점이나 매출 최대화, 규모의 경제 달성
수익률 확대	•고가가격전략, 특정 목표시장 공략,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 이윤의 최대화 목적
기업의 유지존속	•저가격전략, 소비자의 욕구변화, 기업의 외부환경 변화

② 가격전략 방향

전략 유형	전략 활용
고가전략	•수요의 탄력성이 높지 않은 고가품, 전문품 •경쟁사 보다 높은 경쟁우위나 차별성이 존재할 경우 •고품질로 새로운 소비자계층을 유인하고자 할 경우
경쟁가격전략	•경쟁이 심하고 가격변화에 대한 경쟁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자와 차별화 되지 못할 경우
저가전략	•소비자가 가격변화에 민감할 경우 •목표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 •원가우위가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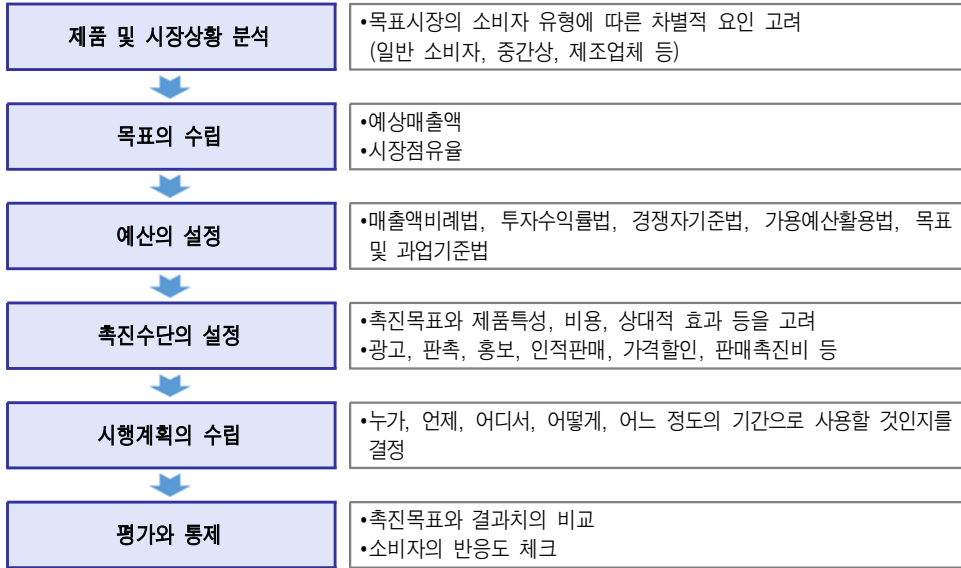
③ 제품믹스 가격전략

전략	주요 내용
제품계열에 대한 가격결정	•제품계열 내 제품수준에 따라 가격결정 •가격차이를 품질 차이로 지각하지 않으면 자기제품잠식현상 발생
사양제품에 대한 가격결정	•주력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사양제품 혹은 액세서리에 부과하는 가격 •주력제품은 저가격, 사양제품은 고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음
종속제품에 대한 가격결정	•특정 제품과 함께 반드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측정되는 가격 •기본제품은 저가격, 종속제품은 고가격
묶음제품에 대한 가격결정	•기본제품과 선택사양,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 •순수묶음 가격제 : 묶음가격으로 통합제품만 구매해야 하는 경우 •혼합묶음 가격제 : 통합제품과 개별제품 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

(4) 촉진전략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믹스전략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

① 촉진전략의 단계와 고려요인



②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믹스의 특성 및 장단점

구분	특징	장점	단점	범위	비용
광고	• 단방향 의사소통방법 • 비개인적 의사전달 방법 (인터넷의 경우 예외)	• 메시지 통제가능 • 다수 대중에게 전달 • 효과가 빠르다	• 효과측정이 어려움 • 정보의 양이 제한됨 • 고객별 메시지 차별화 곤란	대중	고가
판매 촉진	• 부가적 이익의 제공 • 샘플링, 쿠폰, 리베이트 판촉물 등	• 직접적, 즉각적 효과 • 효과측정 용이 • 시행 용이	• 모방이 쉬움 • 단기적 효과	대중	보통
홍보	• 이미지 증대를 통한 매출 증대 추구 • 특별행사, 간담회, 기부금 출연, 사회봉사 활동 등	• 신뢰도 높음 • 효과 높음	• 통제 어려움 • 간접적 효과	대중	저가
인적 판매	• 높은 수준의 주의 유발 가능 • 메시지를 특성별 고객화 가능 • 메시지의 유효성 검증이 즉시 가능 • 관계 지향적 판매	• 정보의 양과 질 확보 • 고객별 정보전달 • 즉각적 피드백	• 높은 비용 • 대중 상품에 부적절 • 느린 프로모션 속도	개별 고객	고가

2 사업의 인·허가

1) 인·허가 개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음

2) 인·허가의 유형

구분	내용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서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 예) 먹는샘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연탄제조업, 소금제조업, 비료생산업, 농약원제업,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등
등록	•등록은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허가의 성질을 갖고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요건은 관련 법률로서 정하고 있음 예) 농약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정화조 제조업 출판 및 인쇄업 음반 및 비디오물 제조업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계량기 제작수리업 전기용품제조업 공해방지시설업 1승강기 및 부품제조업
신고	•신고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으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설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할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함 예) 식품영업, 세척제제조업, 장난감제조업, 항공우주산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

※업종별 인허가의 주요내용은 “제2편 주요업종별 기술창업 가이드”를 참고

3. 공장설립

1) 공장설립의 개념과 유형

(1) 공장설립의 정의

공장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며 신기술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정책목적에 따라 범위를 세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3)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다음을 포함

-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도장)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첨단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과 관련한 도시형공장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 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은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
실험실공장	실험실공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함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하여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하며 동법 제28조의2 내지8,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2 내지6에 의하여 설립과 관리를 받음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산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

공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 목의 제조업소이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시설과 인접한 특성상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한 목적(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2006년 11월 17일)

국민이 생활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 목 슈퍼마켓부터 '다' 목 발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 목 일반음식점, 기원에서부터 '타' 목 안마사술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여 국민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

(2) 제조업의 정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정의

① 제조업이란

-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회업으로 보지 않음

②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업 요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회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회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3) 설립유형

구분	정의
신 설 (법2조14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법2조15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시행령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 전 (령25조 제4항)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령18조의2제4항)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법제14조의3제1항)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확인 (법9조)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토지 지번 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제13호

(4) 설립승인 유형

구분	신청 대상	관련 법률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자 *개별입지에 설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에 적용)
공장설립 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개별입지에 설립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2) 공장설립절차

개별입지에서 창업공장설립에 따른 절차는 크게 입지선정 단계부터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단계, 공장건축단계, 사용승인(공장등록)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타당성검토부터 공장등록증 발급까지 15단계의 절차

〈 공장설립절차 〉

구분	진행 순서	비고
공장입지 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등기부 등본(공장설립 가능 여부 검토)
	입지분석 및 결정(개별·계획) ↓	•사례별 소요기간 편차 큼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토목측량 및 환경 보고서 등 준비 ↓	•사전환경성검토서, 도시계획심의자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서 등 각종 보고서 준비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	•지자체 : 복합민원 형태로 심의(의제처리) 및 외부기관 심의 의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지방환경청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소방방재청(시·군·구 재난안전관리과 내부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민원처리기간 중 위원회 개최(해당부지에 한함) •지역별 편차 20일~90일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 승인 ↓	•시·군·구로부터 승인서 발급
공장건축	토목공사(부지조성) ↓	•농지 30일, 산지 60일 기준 (건축설계 진행)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
	공 장 건 축 ↓	•3~6개월 소요
	건축사용허가 및 준공 ↓	•현황도 작성 및 업무대행 등 •법정처리기간 7일(위험물, 화학공장의 경우 50일)
	제조시설 설치 ↓	•기계시설 및 오염방지시설(해당업종)설치 등
사용승인 (공장등록)	공 장 설 립 완 료 신 고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공장등록증 발급	•식품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해당업종)

3)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공장설립 승인 비교

구분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2
신청대상 (적용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으로서 - 개별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제 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사항	• 36개 법률 69개 인허가 사항(중복제외)	• 35개 법률 73개 인허가 사항(중복 제외)
처리기한	• 20일 이내	• 20일 이내
변경승인 대상	• 사업주체의 변경 • 업종의 변경(세분류 기준) • 공장 건축, 부지, 면적의 변경(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 사업주체의 변경 • 업종의 변경(세분류 기준) • 공장 건축, 부지, 부대시설 면적의 변경(부대시설은 기존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20% 이내의 증감은 제외)
변경신고 대상	• 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의 변경(세세분류 기준)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의 변경(세세분류 기준)
승인취소사유	• 승인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구분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국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흑자년도 포함 차후 3년간) <지방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75%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좌와 동일
농지보전 부담금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 면제 *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	•부과대상(단, 소기업은 100% 감면) *소기업 중 [기준공장면적을 /제조시설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고, 초과면적은 부과대상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 면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부과대상(단, 소기업은 100% 감면) *소기업 중 [기준공장면적을 /제조시설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고, 초과면적은 부과대상임
개발 부담금	•100% 면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50% 감면(단, 소기업은 100%)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 승인 신청대상

- 기존 건물 또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업 후 2년 이상 경과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중기청에 질의답변을 통해 '창업자' 확인 후 신청
-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함
- 승인대상이외(500㎡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음
- 공장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의 2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하며 사무실, 창고, 기숙사 등의 건축면적은 제외

4) 입지선정

(1) 창업공장의 입지선택

① 공장입지 유형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예)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지 등과 같은 개별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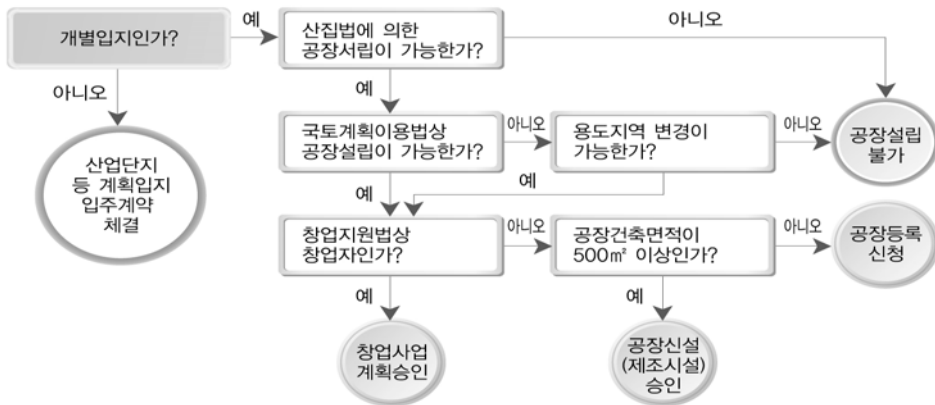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 >

구분	개별 입지	계획 입지
장 점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음 •공장용지의 처분과 사업 확장 시 공장의 증축이 용이함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의 제약이 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부지확보가 가능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 •공해배출업소의 입주가 용이하고, 공장설립허가 절차가 간소
단 점	•공장설립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입지여건이 취약하며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 시설이 미약 •계획입지에 비해 조세 및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	•선 분양 후 입주 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움 •구획된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증축이 불가능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격이 대체로 높음 •공장부지의 매각 등 처분에 제한을 받으며 입주업종에 대한 제약이 있음

② 공장입지선정 절차 및 고려 할 사항

절차	고려할 사항
입지형태결정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적합한 공장입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행위제한을 명시한 원천법을 사항으로 누구든지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의 지역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며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들을 개별법에 의해 검토해야 함
후보지역 현장조사 및 입지분석	•공장입지의 형태가 결정되면 결정된 입지형태에 따라 공장입지 대상 후보지역을 물색해야 하며 입지분석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지역분석과 대상지역 선정 후 공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개별 분석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 -지역분석 : 사업여건 요인, 공장설립예산(부지매입가격), 시장의 위치, 노동력, 교통여건, 생활기반시설, 관련산업과의 위치, 동력, 용배수의 조건, 투자성, 자연적 요인 등 -개별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해 소재지(위치) 확인, 지목 확인, 면적 확인, 경계 확인, 토지의 형상 확인, 지형물의 확인, 기타 주요사항의 확인이며, 권리분석은 소유권의 진정성 판단, 소유권의 제한사항 판단, 지적의 판단, 이용가능성에 대해 판단 -기술성분석은 부지조성의 타당성 및 사용률, 생산자원시설, 경제성분석은 토지의 편익, 부지조성 공사비용, 편익과 비용의 대응
최종입지선정	•의사 결정자 및 실무담당자가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견을 모아 최종 공장입지를 결정

<공장설립 가능여부 검토 프로세스>



(2) 기존공장의 임차 및 매입

기존공장이란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를 불문하고 공장건축 및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를 마친 공장을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공장 용지가 부족하고 부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① 대상공장 선정

기존공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를 선택할 때와 같이 공장입지유형, 공장입지분석, 용도지역분석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입지에 대한 사전분석 없이 기존 공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였을 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및 사업규모에 따라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지에 대한 사전분석은 기존공장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경우라도 필수사항

② 승인 내용

기존공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공장형태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절차	내용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취소된 기존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부지, 건물의 변동 없이 새로운 업종의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절차이며 기계설치 후 공장완료 신고 해야 함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시설, 업종 등의 변경 없이 사업주체 및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공장업종변경 승인	기존공장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업종, 사업주체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의 절차이며 기계시설 설치 후 공장완료 신고해야 함
공장증설승인	매입한 기존공장의 공장등록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추가로 부지 및 건물을 확장할 경우의 절차이며 부지전용, 공장건축, 기계설치가 완료되면 공장설립 완료보고 해야 함

③ 산업단지 입주

산업단지입주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규칙 별지 25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2호의 2)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제출하며 업종 및 환경부분 등을 검토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

(3)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91조

「공장입지기준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공장입지 선정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용도지역의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① 도시지역

용도지역		공장의 허용 또는 제한여부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1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제2종전용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2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3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종일반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4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5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준주거지역 (영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차목(1)내지(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용도지역		공장의 허용 또는 제한여부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내지(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상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상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내지(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통상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함)·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함)
	일반공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미술소 제외)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준공업지역 (영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

용도지역		공장의 허용 또는 제한여부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영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생산녹지지역 (영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단란주점 제외)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함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연녹지지역 (영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② 관리지역

용도지역	공장의 허용 또는 제한여부
보전관리지역 (영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
생산관리지역 (영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계획관리지역 (영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개정 2008.9.25>	1.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용도지역	공장의 허용 또는 제한여부
계획관리지역 (영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개정 2008.9.25>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설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③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공장의 허용 또는 제한여부
농림지역 (영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자연환경보전지역 (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공장설립 불가

④ 자연취락지구 및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취락지구 및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식품, 도정, 제재, 첨단공장 등 일부 업종만의 설립이 가능

(3) 의제처리를 통한 주요 인·허가

의제처리를 통한 인·허가란 창업자가 공장설립을 위해 창업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창업공장의 여건에 따라 관계된 각 분야의 법률에 대한 검토를 일괄 처리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제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36개 법률에 의한 69개의 인·허가를 한번에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창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처리기간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승인된 것으로 인정함. 다만, 민원사무처리지침 등에 따로 보완서류제출 소요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전용규모, 용도의 적정성과 농지의 보전가치여부, 사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적합성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관련법령	•농지법 제22조, 제37조, 제39조, 제40
용어정의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의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등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받아야 되는 허가
허가제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규모 1종 내지 4종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거나 자원의 재활용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외 규정을 둠
허가취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목적 위반, 허가 없이 사업계획변경, 2년 이상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용도변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5년 이내에 대기·수질오염물질의 배출규모에 변동이 있을 경우, 허가 당시 외의 시설과 다른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의 감면에 변동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부담금감면 (농지전용부담금)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 •제조업 창업자(2010년 8월 한시적 적용) 감면 •소기업 중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면적 1천㎡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 감면

②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는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수목의 보존가치, 재해발생우려, 산지 전용면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용어정의	•「산지」라 함은 나무(임목, 죽)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 집단적으로 생육한 나무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또는 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 등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받아야 되는 허가
허가제한 및 허가기준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규모 1종 내지 4종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산지전용 허가가 제한 - 단, 공익용 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불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1)부터 (4)까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허가취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목적 위반, 허가 없이 사업계획변경, 2년 이상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용도변경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부담금감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 •제조업 창업자(2010년 8월 한시적 적용) 감면 •소기업 중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면적 1천㎡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 감면

③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장설립을 할 경우 수반되는 필수허가로서 세밀한 설계도면 및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개발행위허가 주요 내용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												
용어정의	•개발행위허가란 각각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차원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허가대상 및 미적용대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미적용 대상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림에서 행하여지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름 (2)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①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②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높이 50센티미터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로 토지를 절토, 성토, 정리하는 행위 ④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절토, 성토, 정리 행위 ⑤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허가규모	•용도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table border="1"> <tbody> <tr> <td>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td><td>1만 제곱미터 미만</td></tr> <tr> <td>공업지역</td><td>3만 제곱미터 미만</td></tr> <tr> <td>보전녹지지역</td><td>5천 제곱미터 미만</td></tr> <tr> <td>관리지역</td><td>3만 제곱미터 미만</td></tr> <tr> <td>농림지역</td><td>3만 제곱미터 미만</td></tr> <tr> <td>자연환경보전지역</td><td>5천 제곱미터 미만</td></tr> </tbody> </table>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 연접개발 적용 제외기준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구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함)안에서 다음 각목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
-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공장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함

(4)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란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진입로에 대한 허가로서 국토관리청, 국토유지사업소, 시·군·구 등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관할기관에 설계도면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얻어야 되는 허가

관련법령	•도로법 제2조, 제38조
용어정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供用)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구도를 말함. 이러한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석도, 옹벽, 지하통로·무덤 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 •「접도구역」이라 함은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한 구역을 말함
허가신청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공사시기, 도로의 복구방법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5) 공장등록의 특례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함

구분	소기업의 공장 등록	사업분리 시 공장등록
적용법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4
요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	내국법인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적용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적용기간	없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수도권 외 지역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제7단계 실패와 재도전 준비

1. 성공한 사업가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며, 대부분 사람은 실패를 경험 하게 됨.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야구에서 3할 대의 타자를 강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70%의 실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 번의 작은 성공을 갖고 성공한 기업인처럼 평생을 행세하는 중소기업자가 의외로 많은데 사업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실패를 했더라도 이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더 큰 도약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음

2. 실패에 대한 좋은 태도

실패를 했을 경우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가 중요하며 태도에 따라 향후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실패로 인한 낙담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 난다

실패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패에 몰입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함

2) 실패의 원인과 실패 속에 숨어 있는 성공을 찾는다

창업가는 최종 성공에 도달하기 까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패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비록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성공의 요인을 배우는 기회로 삼도록 함

3) 개인과 사업을 구분 한다

창업과정에서 일이 잘못 되어 실패를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창업가 개인에 대한 문제로 보지 말고, 창업가가 제안한 기획안의 내용이나 사업 방법론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함. 실패를 사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나 사업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4) 불의한 성공보다 정직한 실패가 낫다

성공에 눈이 어두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 결과 모든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폐업을 할 때, 고의 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부도덕한 폐업에 해당할 경우 재도전기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회복과 재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불의한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비록 실패할 경우에도 정직한 실패가 되도록 함

3. 실패를 극복한 성공 사례

회사	주요 내용
아이디오 (IDEO)	• 2009년 <비즈니스위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5곳을 발표했는데, 디자인 회사로 유일하게 선정된 곳 • 실패를 좌절이 아닌 하나의 기업문화로 승화시켰으며, 이 회사에서 실패는 가벼운 시행착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음
IBM	• IBM의 창업초기 회사에 1,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게 된 간부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톰 왓슨은 그 간부에게 “우리가 자넌 교육하는데 1,000만 달러나 썼는데, 회사를 관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며 그 간부를 계속 중용했고, 그 간부는 나중에 IBM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음
다음카카오	• 카카오는 2006년에 ‘아이월랩’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음. 아이월랩은 설립 이후 여러 번의 실패를 한 후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원했는지,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사용자가 원했던 기능과 그들의 니즈가 반영된 서비스를 통하여 성공에 이르게 됨
재능마켓 크몽	•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열정만 넘치다보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배움 •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됐든 장기적인 관점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여 성공에 이르게 됨

회사	주요 내용
북팔	•스마트폰을 통한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시장의 속도를 잡지 못해 실패를 하게 됨 •실패를 통해 시장의 속도를 잡지 못하면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의 속도에 맞추어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어 성공에 이룸
클리오니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한 결과 4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됨 •그것의 가장 큰 폐해는 누군가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됨 •창업자는 잘 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진정한 멘토나 스승을 두고 활용할 것을 권고

4.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제도

1) 신용회복 및 재도전 지원제도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조정 및 신속한 신용회복과 재도전 과정을 밀착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금융기관 주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대표이사 등에게 채무를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개인회생 파산지원	•개인회생 : 파산대상자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 •채무범위 : 무담보채무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자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개인파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2 (resu.klac.or.kr)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실패기업인의 채무를 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02-3420-5039 (www.kamco.or.kr)
맞춤형 재도전 지원	•경영위기 기업 및 재도전 기업인에게 전문가 심층 상담후 맞춤형 처방 제시 및 연계 지원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2-6678-4050 (www.rechallenge.or.kr)

2) 재도전 기업인 재창업자금

정직한 실패기업인일 경우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창업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실패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신청시기	홀수월(1월, 3월, 5월, 7월, 9월)1일,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2,4,6,8,10월 접수
대출기간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대출한도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대리대출 선택 가능)
신청할 곳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국번없이 1357,(055)751-9000

3) 재도전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실패 극복 사례

회사	주요 내용
동우에이앤이	•1991년 설립된 국내 1위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2000년 이후에는 연매출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었지만, •2000년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의 자금이 사채로 전환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감 •정부가 지원한 기업회생컨설팅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 재도약하고 있음
엔토피아	•2002년 크리스탈 생활용품 도매업체 '다산' 으로 시작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함 •다시 동료들과 재기를 하기위해 2012년 기술력을 보유하고 엔토피아를 설립하였지만 사업실패 이력과 신용 상의 문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정부의 재창업자금의 지원을 받아 현재는 매출액이 3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 중
케이피전자	•자동차부품 납품으로 연평균 매출 20억원에 달하던 회사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2010년 부도 처리됨 •사업실패 후, 정부의 힐링캠프식 재기교육(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기를 다짐하고,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 마련

※참고 : 성공스마트업 성공이야기(중소기업청, 2014)

제2편

주요 업종별 기술창업 가이드



제1장

제 조 업

제1절 식료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식료품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업종 특성

- 주요 곡물과 육류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농수산 원료에 기반을 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
- 신기술 개발의 부족으로 성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둔함
-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산업
- 최종재 형태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소비재 산업
- 소득탄력성이 낮음
- 원가 구성상 재료비의 의존도가 높음
- 시장이 이미 성숙한 산업
- 1차 산업 및 3차 산업과의 연계성이 있음
-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영세하며 사용 근로자 비율이 낮음
- 소수의 대기업과 대다수의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함

2. 업종 트렌드

- 「식품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 품질 인증품에 대한 정기심사 제도 도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폐지될 예정
- 인구 증가율 둔화, 인구 구조의 변화(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출하량은 소비경기와 관계없이 둔화될 전망
-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과 웰빙 식품, 유기농 식품 등의 꾸준한 성장도 기대

-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 적극 진출, 기존 제품의 판매단가 인상 등이 예상
- 관련 업종 간 기업 인수 합병(M&A) 등을 적극 추진
- 고유의 식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는 지역 전통식품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음
- 안전식품의 소비가 확대되고 편의 식품의 인기가 증가되고 있음
- 전통식품의 재발견 및 식품문화의 새로운 가치 변화 증가
- 다 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동서양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신흥 성장국의 식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 고급화의 가속
- 싱글족과 레저족, 뷰티족의 부상으로 식품산업의 융복합이 가속화 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식료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662	110	64	92	74	54	51	16	9	444	77	135	89	100	77	111	108	51
종사자수	37,922	501	868	1,183	1,363	581	610	236	154	9,418	816	4,795	3,093	6,160	1,903	3,010	2,435	796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097	32	343	25	40	22	16	21	0	197	301	30	194	73	1,165	292	295	51
종사자수	35,965	144	4,958	233	364	180	290	55	0	3,995	3,817	426	2,217	864	8,006	3,333	6,722	361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938	70	61	53	59	59	23	16	9	306	119	111	99	170	215	349	172	47
종사 자수	20,142	380	482	357	475	385	213	79	617	4,078	1,697	2,345	1,665	1,132	1,350	2,928	1,493	466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319	418	277	387	80	56	67	92	7	318	189	77	70	93	105	568	476	39
종사 자수	7,556	706	430	628	611	122	116	191	46	1,163	384	265	193	274	359	993	984	91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47	6	5	5	2	3	2	2	2	39	9	11	15	19	7	8	8	4
종사 자수	9,935	26	235	240	17	422	208	65	623	2,952	630	526	1,169	824	428	740	757	73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5,598	241	116	102	153	101	104	32	33	718	310	436	683	726	646	772	395	30
종사 자수	20,437	598	668	231	913	268	216	153	145	4,044	1,000	1,705	2,437	2,418	2,010	2,066	1,466	99

[107. 기타 식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3,988	4,329	2,647	2,029	1,423	1,030	1,016	792	94	3,655	1,616	1,700	2,461	2,246	2,495	3,130	2,844	481
종사 자수	134,771	10,736	1,851	6,117	5,433	2,683	3,194	1,959	879	36,606	6,175	11,465	11,199	8,453	7,935	8,869	9,479	1,738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604	14	21	6	21	1	3	4	9	142	25	40	93	57	53	45	54	16
중사 자수	10,290	37	341	157	936	14	288	114	65	2,213	312	661	1,931	1,066	534	668	793	160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 니즈가 고도화되고 식품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BT·N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로 해당 분야에서는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보호육성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농어업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가치로서도 주목받고 있음 •현재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는 식품안전 및 건강 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식품·화학·제품 등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유기농,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등을 제외한 일반 식료품의 생산 및 출하가 둔화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의 경쟁심화가 지속될 예상이며 해외 시장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재료비의 원가 구성비가 높아 획기적으로 원가 관리가 필요함 •동일한 품목일지라도 유통과정에 따라 정부기관의 담당부서가 상이함



창업자 체크포인트

- 식품분야는 대부분 계획생산 형태의 품목이므로, 마케팅 부서의 수요예측에 의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HACCP, 친환경제품과 같은 인증마크 획득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반드시 계획하는 것이 필요
- 원자재의 구입에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소비자의 안전이 고려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원재료 공급 및 검수일정, 시간계획 까지 고려한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함
- 품목에 따른 제조공정상 다량의 용수확보, 오폐수 처리, 제품의 이미지 등을 고려한 공장입지 선정을 계획해야 함
- 건강식품의 경우 성분을 표기할 수 있으나 효능을 표기할 수 없음
- HACCP인증시 일반건축설계가 아닌 HACCP 규격에 맞는 건축설계가 이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개발 필요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식품제조 가공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즉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제42조	시행규칙 “별표제14” “업종별 시설기준”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즉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제42조	시행규칙 “별표제14” “업종별 시설기준” 제2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식품첨가물 제조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제42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 용함.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 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
인삼류(인삼, 수삼,홍삼, 태극삼,백삼) 제조업	시·군·구청장 (2일)	인삼산업법 제12조 시행규칙제10조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 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삼류 제조업 등 신고서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서류
양곡가공업 (제분업, 제조업이나 도정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14일)	양곡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제4조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양곡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양곡가공업신고서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수산물가공업	부산광역시장, 시·군·구청장	수산물품질관리 법제19조, 시행 규칙 제33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 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춰야 함	•수산물가공업신고서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식품제조 가공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즉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 기준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즉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 기준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첨가물제 조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함.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인삼류(인삼,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제조업	시·군·구청장 (2일)	인삼산업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삼류 제조업 등 신고서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서류
양곡가공업 (제분업, 제조업이나 도정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14일)	양곡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양곡가공업신고서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수산물가공업	부산광역시, 시·군·구청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33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수산물가공업신고서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3)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업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15일)	사료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사료제조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시설개요서
수산물생산가공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5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시행규칙 제88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가공과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선상수산물가공업	부산광역시청·시장·군수·구청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32조	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시설기준과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수산물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1부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1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을 제외) 1부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 법 제69조외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 1부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시·도지사 (10일)	축산물위생관 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 추어야 함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신청서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자체검사원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 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건강진단서 사본(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에 한함)
소금 제조업	시장·군수· 구청장(30일)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시행 규칙 제9조	시행령 별표2의 소금 제조업 시 설기준을 갖추 어야 함	•소금제조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식제조소금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공장 설계도 및 기기 설치도(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 의 경우에만 제출)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건강기능식 품제조업	식품의약품 안전청(14일)	건강기능식품 에관한법률 제5조, 시행 규칙 제2조,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의 업종별 시 설기준을 갖추 어야 함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신청서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 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 련자료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식품위약품안전처 www.kfda.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mafra.go.kr/
환경부 http://me.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kfri.re.kr/
농산물유통공사 www.at.or.kr	한국식품연구소 www.ka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한국식품영양재단 www.nutritionkorea.com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2) 학회

한국식품과학회 02)566-9937	한국산업미생물생명공학회 02)552-4733	한국산업식품공학회 031)757-4862
한국영양학회 02)3452-0048	한국식품영양학회 041)630-5253	한국식품영양과학회 051)866-3693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02)266-0417	한국식품유통학회 063)238-1222	한국키티ن·키토산학회 054)770-2441
고려인삼학회 02)3473-8772		

3) 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02)1688-7707	한국떡류가공협회 02)929-2434	한국식품기술사협회 02)3473-7171
한국인삼제품협회 02)3672-8502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한국육채가공업동조합 02)416-0250
대한제과협회 02)2055-3345	대한제당협회 02)2275-6071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02)705-1006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3477-2630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02)2635-6315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02)2077-1313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02)424-3141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02)2203-6567	한국팔류가공업협동조합 02)313-409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02)2273-3428	한국식용유지교차공업중앙회 02)2294-2269
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02)2631-7313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한국육가공협회 02)588-1264
한국전분·당협회 031)440-9941		

제2절 음료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곡물, 과일 및 채소 등을 발효시켜 증류하고, 이를 정제 또는 합성하여 각종 증류주 및 합성주를 생산과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인조 눈 및 천연 생수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음료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소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 업종 특성

(1) 공통적인 특성

- 브랜드 로열티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노출빈도와 홍보 규모에 따라 매출실적이 영향을 받음
-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임
-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심함

(2) 알콜성 음료

-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타 업종과는 달리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에서 정부의 규제가 심함
- 판매 가격은 정부의 주류에 대한 세율에 크게 의존

- 경기가 호황이면 맥주 및 양주의 수요가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
- 정부의 주류와 관련된 각종 정책의 변경이 수요에 영향을 미침(세율의 변화, 유통업소 영업시간의 조정, 음주운전 규제의 강화 등)
- 신제품에 대한 수익성 위험요인이 존재(즉,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 광고·판촉비 등을 투자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적정매출을 실현치 못하면 그 기업에 재무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산체제 전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사전 시장조사가 매우 중요)

(3) 비알콜성 음료

-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쟁이 심함(대형 식품업체, 제과업체, 제약업체, 유가공업체와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 수요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정(+)의 비례관계에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 관련 음료가 비교적 성장 추세
- 경기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적음
-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음
-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
- 수익성 악화요인 및 신제품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경쟁회사의 대체음료의 개발, 제품 수명의 단축화 경향, 광고·판촉비의 증가, 앞의 주류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적정한 매출의 실현에 따른 위험)
- 대체음료의 개발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

2. 업종 트렌드

- 대체음료의 개발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유색 탄산음료 시장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건강 지향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기능성 음료시장의 매출 규모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기변동의 영향이 큰 주스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원재료 상승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는 추세
-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가 주스 보다 는 저가 주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유가공업체들이 수익성 다각화 차원에서 음료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스포츠 음료시장은 대대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으나, 수요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향후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생수시장은 꾸준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식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음료 등의 꾸준한 성장도 기대되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함께 소비자 결정은 신중해 지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음료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11. 알콜음료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49	12	11	9	15	10	10	7	6	74	52	83	102	100	111	121	117	9
종사자수	8,342	242	357	340	98	313	237	69	10	1,328	813	1,038	294	1,215	452	483	910	143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05	19	14	11	8	10	7	5	3	67	35	33	37	21	35	45	39	16
종사자수	8,148	118	192	139	50	343	189	50	15	1,729	424	1,159	972	218	366	700	1,001	483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기능성 음료시장의 성장이 기대 됨 • 쌀 소비 촉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막걸리나 전통주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제품의 출시가 예상 • 주류의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서도 주류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제품 개발 활성화로 여성고객과 젊은층 고객의 증가 • 음료, 차, 생수시장에서 프리미엄급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고객의 요구가 증가	•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함 • 시장경쟁이 치열함 • 막걸리나 전통주의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원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약함 •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이 쉽지 않음



창업자 체크포인트

- 음료분야는 대부분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 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검토를 통해서 창업을 하여야 함
- 음료 제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생산계획, 판매계획, 반품회수계획에 대한 정확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음료는 HACCP, 친환경제품과 같은 인증마크 획득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식음료의 경우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제품의 효능에 대한 표기차이가 있음
- 명확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 필요

5. 인·허가 사항

1)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주류제조업	제조장관할 세무서장 (45일)	주세법 제6조, 시행령제4조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을 갖추었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음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증 사본(「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인 경우만 해당)
밀술 또는 술덧 제조업	제조장관할 세무서장 (45일)	주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1항	제조장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신청서 •첨부서류는 주류제조업과 같음
먹는샘물·먹는 염지하수 제조업	시·도지사 (10일)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0조	취수정,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실 및 관련장비에 관한 영업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신청서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출필름 •수질오염방지시설명세서(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시·도지사 (20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시행규칙제25조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실 및 검사장비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허가 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해양환경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신청서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등록업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제조업 등 관련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의 등록절차 이행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www.m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한국식품연구소 www.ka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www.karf.or.kr
식품음료신문 www.thinkfood.co.kr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i.nts.go.kr	

2) 학회

한국식품과학회 02)566-9937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02)552-4733	한국전통주연구소 02)389-8611
한국영양학회 02)3452-0048	한국식품유통학회 062)238-12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051)866-3693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02)266-0417	한국산업식품공학회 031)757-4862	

3) 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www.kalia.or.kr	한국전통주류진흥협회 www.koreasool.or.kr
-----------------------------	-----------------------------------

제3절 섬유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등의 방적제품이나 직물 및 편조 물 등 관련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의 업종을 말함

•면 방적업	•모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기타 방적업	•면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견직물 직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직물포대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숨 및 실 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끈 및 로프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		

2) 업종 특징

- 자본집약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6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 됨
- 면방과 모방 산업의 회사 대부분이 생산기지를 저임금 지역 및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이전하였음
- 최근에는 고급제품에서의 면방과 모방 등 천연섬유의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

- 중저가 제품에서는 화섬 등 인조섬유가 국내시장에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 직물, 염색, 가공 부분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의 2/3을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
- 대기업의 비중이 낮은 중소기업 기준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2. 업종 트렌드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저임금 국가들이 세계 섬유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매년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음
- 해외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해 고기능 제품 개발에 주력
- 차별화된 독자모델에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 차별화 추구
-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인 신소재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섬유소재는 흡수, 흡습, 보온축열 등 쾌적·편리성 기능, 항균방취, 자외선 차폐 등 위생·건강기능과 그 외에 안정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
- 융복합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의료용 섬유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진출 증가

3. 사업체 현황

〈 전국 섬유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830	124	71	529	20	9	2	3	2	396	1	27	32	12	6	534	62	
종사자수	17,884	382	1,182	2,243	348	1,454	17	43	226	2,784	4	1,111	1,104	1,220	108	4,787	871	

[132. 식물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2,120	2,881	1,049	2,133	395	267	308	159	11	2,243	173	252	348	213	178	903	536	71
종사 자수	62,925	8,894	4,588	11,681	1,755	933	997	1,710	35	11,734	442	2,071	2,626	875	742	9,252	4,459	131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974	431	20	72	5		1	1		370			8	17	1	35	13	
종사 자수	5,836	1,807	158	272	57		33	19		2,520			95	74	7	663	131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114	846	171	590	23	9	15	7		1,225	6	20	9	41	29	95	21	7
종사 자수	37,507	3,311	2,030	10,541	151	33	322	30		18,812	9	86	64	835	80	993	184	26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809	653	246	229	63	14	36	18	3	852	14	60	77	32	83	237	186	6
종사 자수	23,378	2,503	2,349	1,828	484	100	166	195	36	7,186	138	1,230	723	272	577	3,891	1,667	33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풍부한 연구 개발 인력과 패션, 디자인 분야의 전공 인력에 의한 차별화된 제품생산 및 제작이 활발 •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신개척 분야 발생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재 분야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상중·하류 생산기반의 균형 있는 발전	• 핵심원천기술이 미흡하여 대부분 OEM생산의 수출 구조로 부가가치가 열악함 • 높은 인건비로 인한 원가 경쟁력 저하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 명품 등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하여 고급시장에 대한 진입이 어려움 • 세계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 • 독창성 있는 고급 인력 부족



창업자 체크포인트

- 섬유분야는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이나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술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생산 및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과다한 설비투자 는 지양(투자비 회수기간 3년)
- 고가품을 제외하고는 중국과의 경쟁이 주된 Point이므로 위안화 환율, 중국의 품질 수준, 동 업계의 중국 기업 추이 등의 관찰이 필요함
- 마진의 문제로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병행판매 하는 것은 자사의 기업이 미지를 하락시키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섬유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은 소재개발 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조직, 염료, 수지 등을 변경한 단순생산형태를 가지므로 창업 후 짧은 시일 내에 경쟁력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초기부터 산학협력, 산산협력 등을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 소재개발보다는 용도개발이 더 중요하며,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
- 섬유산업연합회 등에서 주관하는 발간자료, 세미나 등을 통해 섬유제품 소재의 Trend, 패션 Trend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개발방향 정립이 필요함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www.textile.or.kr	FITI시험연구원 www.fiti.re.kr	국제섬유신문 www.itnk.co.kr
KOTITI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한국섬유소재연구원 www.koteri.re.kr	한국섬유신문 www.ktnews.com

2) 학회

한국섬유공학회 www.fiber.or.kr 02-566-5214	한국고분자학회 www.polymer.or.kr 02-568-3860	한국염색가공학회 www.ksdf.or.kr 053-350-3766
한국토목섬유학회 www.kgss.or.kr 02-583-2167		

3) 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www.kofoti.or.kr 02-528-4030	대한방직협회 www.swak.org 02-735-5741	한국화섬협회 www.kcfa.or.kr 02-734-1191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www.nonwoven.or.kr 02-365-2332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www.textra.or.kr 02-528-5157	한국섬유기계협회 www.kotma.org 053-817-5954
섬유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회 hrd.kofoti.or.kr 02-528-4012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www.texwindow.or.kr 053-252-4081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www.busanfashion.org 051-744-6162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www.weaving.or.kr 02-752-8097		

제4절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구입한 각종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를 재단·재봉하여 의복류, 모자 및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의 업종을 말함

•남자용 정장 제조업	•여자용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군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가족의복 제조업	•유아용 의복 제조업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원모피 가공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2) 업종 특징

- 섬유산업의 최종단계로서 소재, 패션, 유통 등과 관계가 깊은 종합산업
-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 광고 및 정보산업(패션 정보 입수, 소비자 성향 분석, 광고 전략 등)
- 소비자 지향 산업(소비자의 다양화, 개성화,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 시장이 세분화된 산업(아동복, 숙녀복, 남성복, 스포츠 의류, 숙녀복 중 20대 대상 의류, 30대 대상 의류, 제복 류 등)
- 위험 부담률이 높은 산업(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즉 소비자 성향, 계절 요소, 그 해 기후, 사회,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상대적으로 소규모 자금으로 시장 참여 가능)
- 내수중심의 산업이므로 국내 경기와 경제여건에 민감함
- 재고관리, 유통관리, 채권관리가 중요시되는 산업
-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없으므로 새로운 국내 브랜드의 시장진입과 외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하고 성장성에 한계가 있음
- 거시적인 정보에서부터 미시적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 산업
- 모피제품의 경우 기계화된 작업의 어려움으로 노동집약적이며 고소득층이 주된 소비층임

2. 업종 트렌드

- 연예인들의 의류사업 진출 및 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
-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와 고객들의 홈쇼핑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 증가 등으로 유통 채널별 성장세 차별화
- 프리미엄제품보다는 시장 비중이 큰 중, 저가의 제품들의 가격 인하 및 수요 부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전체 시장 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
- 정장부문, 유아동복 부분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짐
-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 시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레저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여성인구의 참여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 디지털 유통시장의 확대와 글로벌 유통의 증가
- 지역 간 FTA 체결을 통한 지역 블록화의 강화

3. 사업체 현황

〈 전국 섬유·의복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41. 봉제의복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9,997	11,588	1,917	1,131	520	529	423	147	3	1,513	189	125	222	499	284	348	460	99
종사자수	123,783	80,143	12,127	4,763	3,831	1,263	1,735	264	7	11,185	780	332	1,040	3,652	448	928	1,140	145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06	224			2	1				75		1		3				
종사자수	2,122	1523			4	1				574		5		15				

[143. 편조의복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350	1,084	37	23	4	2		1		185	2	1	1	7	1		2	
종사자수	8,934	6,759	250	138	34	19		2		1,293	2	90	1	115	79		152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557	1,125	184	294	65	23	19	8	1	623	9	28	18	31	29	38	57	5
종사자수	14,911	5,369	1,065	1,533	341	71	62	80	3	3,730	97	143	545	536	377	550	359	50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로 다양한 의류 유통 판매 채널이 형성 • 레저활동인구의 급증으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골프의 대중화로 해당 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섬유소비의 증가	• 글로벌 브랜드와 마케팅, 글로벌 유통망 등에서 세계 대비 국내 글로벌화 수준은 낮은 편 • 국내 의류업체의 영세성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미진하여 패션선진국의 브랜드와 개도국 중심의 중저가 범용류시장의 양분에서 애로 • 글로벌 경쟁 심화 • 모피제품의 경우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동물 및 환경 보호 등의 압박요인 증대



창업자 체크포인트

- 의복분야는 구매자의 양극화로 정확한 타깃집단에 대한 요구와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구매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여 판매하여야 함
- 유행이 지난 생산 재고물량에 대한 유통 및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
- 브랜드의 인지도 확대전략 필요

5. 인·허가 사항

1)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국방부장관 (40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령 <별표>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허가 신청서 • 시설 도면 또는 시설증명서 •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02-3668-3000

한국연구재단
www.nrf.go.kr
042-869-6114

삼성디자인넷
www.samsungdesign.net
0505-439-0701

한국섬유소재연구원
www.koteri.re.kr
070-7829-2200

서울다자인재단
www.seouldesign.or.kr
02-3705-0000

한국패션산업연구원
www.fck.or.kr
053-721-7400

2) 학회

한국염색가공학회
www.ksdf.or.kr
053-350-3766

한국의류학회
www.ksct.or.kr
02-844-3601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www.fashionfabi.co.kr
070-7705-3040

한국섬유공학회
www.fiber.or.kr
02-566-5214

한국복식학회
www.ksc.or.kr
02-324-1511

한국의류산업학회
www.clothing.or.kr
053-721-74815

다이텍연구원
www.dyetec.or.kr
053-350-3700

3) 협회

한국패션협회
www.koreafashion.org
02-460-8357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www.knit.or.kr
02-548-2131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www.katpa.co.kr
02-766-8661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02-528-0114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www.uniform.or.kr
02-710-0832

한국패션소재협회
kofta.or.kr
02-576-7247

동대문의류봉제협회
www.sewing.or.kr
02-741-1031

제5절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각종 원피를 가공 처리하여 가죽을 생산하거나 천연가죽 조각 및 부스러기를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생 가죽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과 천연 및 재생가죽 합성 및 대용가죽, 플라스틱, 직물, 경화섬유판지 및 기타 재료로 가방, 핸드백, 동전지갑,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각종 재료(석면 제외)를 재단 및 재봉·접합·주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목적용의 신발, 각반, 정강이 받이 등과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2) 업종 특징

- 섬유산업과 함께 소재, 패션, 유통 등과 관계가 깊은 종합산업으로 소비자 지향 산업
- 국내 신발산업 업체, 종업원 수, 부가가치 감소세 지속
- 저가품과 고가품(명품) 시장으로 양극화 현상
- 해외의 유명브랜드에 비해 국내 제품 브랜드는 미약
- 등산화 등 기능성을 활용한 분야에 대한 제품 제조 활발
- 신발 제조업의 경우 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2000년 이후 내수시장의 반등과 수입급증

- 신발을 구매하는 고객은 충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유행이나 패션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보임

2. 업종 트렌드

- 패션화, 스포츠화, 기능화, 특수화 신발의 선호
- 세계 신발시장의 성장 지속예상
-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20~30대를 중심으로 명품이 유행
- 소재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의 기술경쟁 가속화
- 전자상거래 및 해외사업 진출 확대
- 패션과 디자인의 중요성 증대와 디자인 능력이 핵심경쟁요인으로 부각
- IT, BT, NT 인체공학 등의 기타 분야와 융합현상과 첨단과학기술이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587	1,367	140	46	95	19	22	8		822	2	24	4	4	2	14	16	2
종사자수	15,669	5,891	1,063	118	376	58	145	161		6,864	45	469	67	17	3	279	111	2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604	739	1,028	63	80	24	24	14	4	479	9	15	6	11	11	12	80	5
종사자수	20,253	4,873	9,126	205	723	44	188	51	10	3,474	90	50	199	82	12	65	1,052	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등산 등 스포츠용이나 특수 기능성 제품의 성장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소비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지 표명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유지 •정보화로 중소기업의 역할증대 •지속적인 부품소재 수출의 증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보유	•브랜드 및 마케팅 능력의 취약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디자인 등 우수 인력의 취약 •세계적 차원의 마케팅능력 부족 •개도국의 기술습득 능력 가속 •바이어의 지속적인 생산전략 변화 •높은 임금 수준 •경쟁 심화 •EM생산 및 수출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높음



창업자 체크포인트

- 가죽, 가방 신발분야는 특화된 분야와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 필요
- 신소재나 디자인을 특화하여 차별화된 제품 제조가 필요
- 유행 주기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의 요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
- 해외 마케팅 능력 검토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 가족, 가방 및 신발제조업

신발산업진흥센터
www.shoenet.org
051-979-17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053-718-8114

2) 학회

한국신발피혁연구원
www.kiflt.re.kr
051-897-9701

3) 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www.footwear.or.kr
051-317-5202

신발지식정보포탈
www.shoenet.org
051-979-1700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www.leather.or.kr
02-2252-7602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051-831-9812

제6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제재, 대패질, 분쇄 또는 기타 표면 가공하여 목재 및 나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의 업종을 말함

•일반 제재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제품 제조업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2) 업종 특성

- 목재산업은 1, 2, 3차 산업이 모두 연계되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 목재 산업은 내수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음
- 한국목재 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허약한 하부시스템으로 고도로 집적된 성장보다는 외형성장
- 수입 원목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제품은 증가 하고 있으며 수입원목 중 제재용의 소비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

2. 업종 트렌드

- 자연지향적인 주거문화중심으로 바뀌어 가면서 천연소재인 목재에 대한 관심증가
- 온돌마루, 목조주택, 바이오에너지, 방부 및 조정분야가 국민의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와 문화적 욕구 충족심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 목재의 환경 친화적인 특성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통적은 제재, 합판, 팔레트 등의 산업 소재산업에서 주택이나 조경 또는 DIY로의 문화소재 산업으로의 전략적 이동 중
- 저부가가치 중심의 대량생산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
- 주거 및 취미, 여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예상

3. 사업체 현황

〈 전국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75	17	72	16	206	7	11	22	5	273	71	39	43	79	72	110	119	13
종사자수	8,320	24	539	105	2,139	47	68	159	83	1,785	458	226	198	735	360	608	720	66

[162. 나무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687	333	360	199	413	111	80	89	8	1,324	131	161	178	238	171	343	497	51
종사자수	25,380	622	1,710	748	4,896	420	238	721	78	7,587	361	711	1,060	1,084	691	1,707	2,633	113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3	7	2	7	1	1		1		16	1	3	4	8	46	6	10	
종사자수	371	15	4	19	2	2		7		78	3	13	14	29	131	24	30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정부의 목재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관심증대 •DIY자재의 수요증가 및 조경용 목재의 공급증가 •웰빙, 건강 추구로 천연소재를 선호 •NT, BT 첨단기술 접목 실용화 •전통건축, 생활목재 이용기술 성장 •목재 소재에 대한 국민 인식 증가 •정부의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지원 •국산 원자재 구입비 등의 지원정책 •목재 제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유력한 수단의 부각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가중 •수입 목재에 대한 의존과 수입 경쟁이 심화 •물류비용과 가공 인프라 미비 •업체 수 및 품목의 증가와 경쟁 가열 •목재에 대한 잘못 된 인식과 목재제품의 수요 부족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과 목재 수급요건의 악화 등 대외적 여건변화로 목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목재 및 나무제품 분야는 자원 수급과 물류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
- 공업화 목조건축, 홈센터, 친환경방부산업분야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여부 확인

5. 인·허가 사항

1)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농림축산검역 본부장 (10일)	식물방역법 제40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시행령 별표<별표9>의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의 등록기준”에 따른 인 력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 •신청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 •열처리시설별 명세 •목재중심부 및 열처리 시설 내의 온도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국토교통부 www.mltm.go.kr 1599-0001	산림청 www.forest.go.kr 1588-3249	국립산림과학원 www.kfri.go.kr 02-961-25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ww.kict.re.kr 031-9100-1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02-2102-25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02-3299-4000

2) 학회

(사)WCF목재문화포럼 www.woodforum.or.kr 02-871-0155	한국임학회 www.kfs21.or.kr 02-965-0454	한국목재공학회 www.kswst.or.kr 02-877-4781
--	---	---

3) 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www.kwca.co.kr 02-518-0613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www.wooda.org 02-553-2001	(사)한국목조기술인협회 www.kwsea.or.kr 063-642-9922
대한산업안전협회 www.safety.or.kr 02-860-7000	한국목재재활용협회 www.woodrecycling.or.kr 032-330-0808	목재신문 www.woodtimes.co.kr 031-286-8839
한국목재신문 www.woodkorea.co.kr 02-848-6024		

제7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나무, 님마, 고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 업종 특성

- 원자재인 펄프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자원의 재활용도가 높음
- 펄프가격의 인상이 판매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못함
-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일부 전환(문화용지, 백판지)하고 있음
-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수익성이 낮음
- 에너지소비형 산업, 수질 오염형 공해산업, 높은 재활용 비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산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의 시장이 구분(대규모 설비와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신문용지와 고급 인쇄용지는 자본력이 우수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반면에 골판지 등은 비교적 중소기업체들의 생산비중이 높음)되어 있음

-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소재산업
- 한솔그룹, 무림그룹, 한국제지, 흥원제지의 4자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인쇄용지 업계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
- 신문용지 등 일반지 중심의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인 특수지에 대한 생산기술이 부족함
- 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산업
- 수요가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2. 업종 트렌드

- 제지산업은 장기적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전망이다
- 산업과 수요의 전체 성장보다는 몇몇 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 농산물의 포장유통 확대로 골판지 수요 증가
- 음이온을 내뿜는 종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카드나 고급팬시제품용 종이 출현
-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종이사용량 증가
- 선진국 기업의 해외진출 시도와 개도국의 확대 등으로 무역규제가 증가

3. 사업체 현황

〈 전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635	72	17	23	24	5	7	8	6	276	11	21	24	42	8	36	53	2
종사자수	16,584	590	64	901	512	40	382	1,095	189	5,487	78	1,349	1,528	1,639	277	631	1,785	37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362	389	200	183	196	34	39	18	5	1,575	17	116	94	69	42	175	203	7
종사 자수	33,746	1,950	1,333	1,896	1,535	590	285	228	55	16,707	180	1,837	1,269	731	418	2,158	2,442	132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917	408	86	97	48	35	43	13	9	818	23	56	66	39	21	85	62	8
종사 자수	19,488	2,167	426	778	557	307	928	151	371	8,586	248	1,270	1,122	537	135	1,363	443	9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 국내 산업현황 >

(단위 : 톤)

연도	생산능력	생산실적	수출	수입	소비
2008	11,560,000	10,642,495	2,696,509	816,871	8,690,329
2009	11,560,000	10,480,673	2,889,560	714,472	8,438,827
2010	11,560,000	11,105,835	2,829,937	898,643	9,148,883
2011	11,560,000	11,480,372	2,994,848	871,305	9,251,107
2012	11,781,000	11,331,970	3,144,589	858,396	9,071,978
2013	11,781,000	11,801,164	3,383,973	950,972	9,274,238

자료 : 한국제지연합회 2013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고부가가치 제품인 특수지, 농산물 포장지에 대한 수요 증가요인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체재로 촉진될 전망 • 중국과 아시아 시장의 수요 증가 • 농산물의 포장 유통 확대로 골판지 수요 증가	• 원자재의 수요와 물류비의 변동으로 안정적인 자재 확보의 어려움 존재 •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이며, 빅 3사에 의한 시장진입이 어려움 • 전자출판의 수요 증대 • 중국의 대규모 인쇄용지 설비 시설 • 세계적인 경제침체



창업자 체크포인트

- 원자재의 조달과 물류비용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가?
- 어떤 제품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수요처 발굴
- 시설 장치에 대한 자금 확보와 현금유동성이 있는가?
- 입지 선정시 사업용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 폐수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자동화 필요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1644-0007

한국화학연구원
www.kRICT.re.kr
042-860-7114

2) 학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www.ktappi.or.kr
02-786-8620

3) 협회

한국제지연합회
www.paper.or.kr
02-549-0981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www.kcca.or.kr
02-3474-7124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www.paperworld.or.kr
02-567-5912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www.paperbag.or.kr
02-569-0081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www.kpbc.or.kr
02-786-8291

한국포장협회
www.kopa.or.kr
02-2026-8655

제8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 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 활동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2) 업종 특성

- 인쇄산업은 소규모 자본에 의한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전체 생산의 80% 이상이 수주생산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의 특징을 나타냄
- 기업의 규모, 거래처와의 관계, 인쇄업체 상호간의 보완적인 특성 등으로 인하여 도심 지역에 서로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는 도시형 업종임
- 우리나라는 정부 등 인쇄물 계약 시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매년 조달청에서 인쇄 기준 요금을 작성, 고시하고 있음
- 정부 및 산하단체 등 비전문업체들이 상업인쇄 영역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음
- 국내 출판사들의 통상 반품률이 30~40%에 이르는 등 과도한 반품과 출고비용의 2.5~3 배에 이르는 반품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학습지를 제외한 신간 발행 서적 중에서 번역서 비중이 높음

- 국내 인쇄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시장구도로 수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내 한정된 시장에서 많은 사업체가 경쟁하고 있음
- 인쇄업은 주문처의 주문내용에 따라 인쇄물의 형식, 크기, 수량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인쇄물의 선명도, 색재현성, 납기일 준수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임

2. 업종 트렌드

- 교육과 출판이 결합한 고 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발전
- 전자책시장의 성장과 출판물의 영역이 CD-ROM 및 인터넷과 타 산업과의 연계개념의 복합 출판물 형태로 발전
- 인쇄사업체의 수 및 종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전자출판의 증가로 인해 출판으로 인한 인쇄 수요의 감소가 예상
- 디지털 인쇄 분야의 성장가능성 증대

3. 사업체 현황

〈 전국 인쇄 기록매체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8,063	8,091	1,133	1,018	571	449	549	198	17	3,393	215	318	312	352	249	461	620	117
종사자수	71,257	29,139	3,414	3,177	2,470	1,461	1,729	512	287	21,648	461	1,089	895	853	532	1,289	2,013	288

[182. 기록매체 복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2	38	2		1	1	4			35		1						
종사자수	831	192	7		1	1	49			500		81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디지털 인쇄시장의 성장 예상 •아동 교육 분야 등 특화된 분야의 출판 및 인쇄가 성장 •정보를 창출하는 지식산업 시장의 확대	•전자책 등의 등장으로 출판 및 인쇄의 시장 규모 감소 •양극화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화 •소통수단으로 인쇄매체보다 인터넷 매체의 활용 증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심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출판, 인쇄 분야에서 원자재의 수급문제 해결과 반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출판 인쇄업종의 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국내 경쟁을 염두에 두고 수출예의 관심 필요
- 지식정보화 산업으로의 전환
- 분야별 전문화 추진
- 공해문제, 폐수배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의 검토
- 인건비, 유통비, 물류비, 폐기비용 등 비출력 비용의 정확한 고려
-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솔루션을 제공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인쇄사 신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	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없음	•인쇄사 신고서
출판사 신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	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없음	•출판사 신고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www.tkpf.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www.kpec.or.kr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학회

한국출판학회
www.kpss.or.kr
02-712-9169

한국문학번역원
www.klti.or.kr
02-6919-7714

한국기록학회
www.ksas1.org
010-8876-8806

한국기록관리학회
ras.jams.or.kr
053-950-5236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협회

대한인쇄문화협회
www.print.or.kr
02-335-5881

한국신문협회
www.presskorea.or.kr
02-733-2251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www.kstpa.or.kr
02-2272-9538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www.spiic.or.kr
02-333-8631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www.spak.or.kr
02-2266-3056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070-7126-4720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070-7126-4720

(사)한국잡지협회
www.kmpa.or.kr
02-360-0000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
www.kptc.or.kr
02-782-5581

한국제지연합회
www.paper.or.kr
02-549-0981

한국포장협회
www.kopa.or.kr
02-2026-8655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www.kbbic.or.kr
031-924-7182

한국기독교출판협회
www.kcpa.or.kr
02-3474-0820

제9절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할물을 정제 또는 기타 처리하는 산업 활동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를 재처리업	

2) 업종 특성

-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전형적인 장치산업이며 내수중심의 국가기간산업임
- 석유 정제사업의 경우 원재료의 전량 해외조달 및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공익산업 성격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통제(가격, 생산시설 증설 등)를 하고 있음
- 석유관련 산업의 경우 과점체제임
- 수익성은 원유 수입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적정이윤이 확보되는 반면에 성장에 제약이 있음
- 외화금리(리보금리:LIBOR)와 국내 원화금리 차이가 클수록 수입 유산스(usance)기간의 확대와 은행으로부터 유산스 기간에 대한 여신한도(credit line)의 확보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
- 무역장벽이나 각종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와 함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선진국은대형화, 사업별 통합

을 통한 전문화 전략이 주류를 이룸

- 기초 기술은 원천기술 및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매우 열위이고 선진국 기술에 의존
- 연탄은 석유류에 비해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유가상승과 경기 악화 시 소비가 상승함
- 국내 생산석탄은 모두 무연탄으로 유연탄에 비해 저열량으로 주로 연료용(연탄)으로 사용
- 해외에서 수입한 석탄은 대부분 유연탄으로 고열량이며 주로 발전용과 산업(제철)용으로 사용

2. 업종 트렌드

-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은 원재료 부담을 가중시킴
-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제품 경쟁이 심화되어 석유화학 제품 가격 하락
- 석유화학제품의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기업군은 수요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실적 좌우
-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술은 최근 신기술과의 융합화로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소재 생산에 사용
- 수출과 생산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부진 현상이 두드러짐
- 합리화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 비중은 소폭 축소되고 있음
- 88년 이후 민수용 수요 감소로 석탄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낮아짐

3. 사업체 현황

〈 석유화학산업 동향 〉

(단위 : 천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	17,296	18,154	18,165	18,692	19,389	20,995	21,223	21,325	21,985
내수	9,955	9,700	9,379	9,515	9,271	9,655	10,254	10,638	10,992
수출	8,334	9,384	9,679	10,020	10,847	12,117	11,821	11,648	11,980
수입	1,002	931	897	842	729	777	852	961	987

자료 : 지식경제부(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및 무역협회)

〈 전국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60	2	1	3	1	1	3	1	1	3	8	7	2	5	4	16	2	
종사자수	885	55	14	48	6	104	41	3	19	51	93	103	15	40	70	204	19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36	7	11	2	13	3	2	26	1	59	3	13	18	8	6	24	39	1
종사자수	11,566	34	299	12	637	27	9	5,718	9	661	33	105	1,278	67	1,843	328	494	12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핸드폰 산업의 성장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증가 •원유회사와의 수직계열화로 지속적인 내수수요 촉진 •고유가의 지속으로 연탄소비의 증가 •촉매, 공정기술, 복합화 기술의 발전 •유기, 신소재 기술의 발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수요의 성장성 지속 예상	•정부의 탄소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많은 원가 상승요인 발생 •중동 및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중동지역의 환경 불안 •연탄소비의 급증시 수급 불균형 현상 발생 •교역환경의 급변과 환경에 관한 규제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핵심역량 강화에 있어서 선진 다국적 기업에 비해 열위 •범용 부문에서의 성숙단계로 내수 증대의 어려움



창업자 체크포인트

-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 활용
- 원유의 수급과 환율에 대한 적절한 가격경쟁력 확보
-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필요
-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생산 및 교역시스템 수립
- 석탄산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에게 인력 및 기술 수출 고려

5. 인·허가 사항

1)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고 압 가 스 제조업	시장·군수·구청장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4조, 시행규 칙 제5조	시행령 <별표>의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 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 기준” 상의 기준을 갖출 것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9법인인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석탄가공업 등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석탄산업법 제17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별표>의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석탄가공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석유정제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1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시행규칙 제4조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는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석유정제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석유대체연료제조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1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7조	1. 배합·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석유대체연료제조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체연료품질 시험서

3)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시행규칙 제4조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는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석유정제업신고서 •사업계획서
석유대체연료제조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즉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7조	등록요건에 따른 시설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개시 신고서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냉동제조(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2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별표4의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및 정밀 안전 검진 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압가스제조신고서 •사업계획의 개요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www.mke.go.kr
1577-0900

대한석탄공사
www.kocoal.or.kr
031-828-0600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031-260-4114

한국석유공사
www.knoc.co.kr
031) 380-2114

한국석유관리원
www.kpetro.or.kr
031-7890-200

한국광물자원공사
www.kores.or.kr
02-841-5600

한국가스공사
www.kogas.or.kr
053-670-0114

에너지경제연구원
www.keei.re.kr
031-420-2114

태백석탄박물관
www.coalmuseum.or.kr
033-552-7720

2) 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www.kosee.or.kr
02-451-3630

전력연구원
www.kepri.re.kr
042-865-520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042-868-3114

에너지자원합리화기획단
석탄청정분과
http://coal.or.kr
031-219-266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ww.kier.re.kr
042-860-3114

3) 협회

대한석유협회
www.petroleum.or.kr
02-3775-0520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02-3668-6100

한국가스연맹
www.kgu.or.kr
02-563-8107

한국석유유통협회
www.koreaoil.or.kr
02-555-8322

한국석탄회재활용협회
www.coalash.or.kr
051-784-8294

한국석유재활용협회
www.oils.or.kr
042-484-5193

한국도시가스협회
www.citygas.or.kr
02-554-7721

제10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기초화학제품을 합성하여 추출한 중간체 및 원제를 합성·가공하여 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형, 중간형 화학 산업으로서 대표적인 소재산업을 말함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회화용 물감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용향제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재생섬유 제조업

2) 업종 특성

- 자본지식·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중소기업형태로도 전문화가 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고 부가가치 산업
- 타 산업에 핵심소재 및 부자재로 사용되어 연관 산업의 고 기능화,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 기술 수준에 따른 부가가치율의 변화가 급격한 산업
- 생산 형태는 제품 중심형이며 소량 다품종 형태에 맞는 유연성 높은 중소기업의 설비로서 독립형이 많고 전체적인 수준에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 됨
- 기초과학 연구 및 경영노하우의 축적과 관리가 가능
- 최근 융합기술의 출현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개별 제품마다 독특한 기술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어 모방생산이 어려우며, 제품수명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노하우의 축적이 경쟁력의 관건이 됨
- 기술 습득이 용이한 대학 및 연구소 근처에 조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2. 업종 트렌드

- 최근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분업구조 상의 특징을 반영한 구조 개편 움직임이 있음
- 전통적인 제품 외에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신제품을 창출 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신제품의 등장과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영향으로 고급품 및 고기능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양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요성장을 바탕으로 생산 및 수출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
- 시장개방, 개발경쟁의 가속화, 선진국의 기술 및 환경규제강화 등 환경변화가 질적 고도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065	25	40	33	64	12	32	90	8	310	33	63	62	31	72	93	93	4
종사자수	32,272	254	651	212	1,381	123	1,699	7,236	134	5,111	188	1,080	3,003	2,558	5,993	1,685	933	31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10	12	13	17	6	7	12	15	13	137	36	61	72	83	100	123	86	17
종사자수	7,263	68	29	63	31	35	112	642	116	1,138	210	566	680	658	1,151	1,036	578	150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928	91	63	69	66	11	20	70	10	729	11	112	92	43	63	298	178	2
종사자수	28,559	366	709	400	632	82	254	3,441	78	6,864	149	1,660	2,645	1,424	5,319	3,191	1,332	13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213	288	168	138	335	52	89	88	23	1,782	88	237	180	122	98	234	265	26
종사자수	67,198	2,362	2,270	932	5,259	369	1,133	2,795	875	26,017	1,289	6,747	5,690	2,515	2,051	3,308	3,464	122

[205. 화학섬유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43	18		20	1		1	9		22		3	7	5		46	11	
종사자수	6,783	70		131	12		5	2,314		192		12	92	620		3,176	15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화학제품 수요의 고성장화 및 다양화 • 화학기술의 복합화, 융합화에 따른 신기술 개발 기회의 확대 • 화학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밀화학 분야의 투자기회 확대 • 기초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Drive정책 • 다 년간 축적된 다양한 연구개발 노하우의 축적 • 공공 인프라시설의 보유 및 운영 • 범용제품의 생산기술 축적에 따른 산업화 활용기술 보유 •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에 따른 질 높은 인적자원의 보유	•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자립성장의 위험 가능성 •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 간 기술격차의 상존 및 확대 가능성 • 선진국 위중의 기술규제와 환경규제의 강화 • 핵심 원천 기술의 미확보로 대외 경쟁력 약세 • 업체의 영세성 및 기술개발 투자능력 부족 • 모방 기술개발 위주의 연구개발로 핵심기술기반 취약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부족 • 화학산업 및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수인력 확보의 불균형 우려 • 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 기술 개발 및 투자능력의 확보
- 선진국의 기술 및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위험물 처리시설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시설규정적합성 분석 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제조장은 다른 건축물로부터 3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고압가스제조업 (시행령 제4조 해당 규모)	시장·군수·구청장(2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별표 4의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및 정밀 안전 검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고압가스제조신고서 • 사업계획의 개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검역원(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신고서 • 건강진단서(대표자, 제조관리자) • 제조관리자승인서 사본 •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배출방지시설 내역 포함) •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품목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농약제조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30일)	농약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별 표 1의 인력기준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농약제조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품제조업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15일)	화장품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1. 제조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건강진단서 •상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
비료생산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14일)	비료관리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령 별표 2의 비료생산업의 시설 그 밖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재배시험성적서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수처리제조업	시·도지사(7일)	먹는물 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함	•수처리제조업등록신청서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유독물제조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10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제조 및 사용시설,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보관, 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운반차량(유독물 운반업영업자에게 위탁운반 하는 경우를 제외), 그 밖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함	•유독물제조업 등록신청서 •취급하는 유독물의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유독물 취급시설설치명세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첨부)

3)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고압가스제조 허가 (시행령 제4조 해당 규모 이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감리 및 정밀 안전 검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해당, 정관을 시,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소금제조업	시장·군수·구청장 (30일)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92조	* 공통기준 - 염전의 가장자리는 주변의 농경지, 하천, 도로 등으로 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업종별시설기준 •천일염-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海宙, 함수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 •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채함시설, 여과시설, 증발관, 탈수시설, 건조시설, 계량 및 포장시설	- 소금제조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염전개발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조가공공장 설치예정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치도(1/25,000) - 공장설계도 - 기기설치도 - 해수취입구의 해수 성분표
화약류제조업	경찰청장 (2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령 제8조의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화약류 제조업허가신청서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 - 사업계획서 - 위해예방계획서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구조설명서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0일)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4조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동물용의약품제조업허가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 제조관리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배출방지 시설 내역 포함)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1355	한국화학연구원 www.kRICT.re.kr 042-860-7114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1577-0900
특허청 www.kipo.go.kr 1544-8080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110	중소기업청 www.smba.go.kr 1357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1577-1255		

2) 학회

한국고분자학회 www.polymer.or.kr 02-568-3860	화학정보센터 www.chempolicy.or.kr 042-860-709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042-869-100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02-589-22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ww.stepi.re.kr 02-3284-18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053-718-8114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042-869-6114		

3) 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www.kscia.or.kr 02-2088-724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ww.kofst.or.kr 02-3420-1200	대덕연구개발특구 www.ddinnopolis.or.kr 042-865-8800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02-785-7984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 www.ksaic.or.kr 02-842-0747	한국비료협회 www.fert-kfia.or.kr 02-552-2812
그린바이오연구조합 www.kraa.or.kr 02-775-7128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www.kdpic.or.kr 02-783-072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www.tta.or.kr 031-724-0114
한국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www.kpic.or.kr 02-549-3326	화학뉴스 www.chemlocus.co.kr 02-6124-6660	

제11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 및 합성품, 천연약물 유효성분인 의료화학제제 및 원료형태의 향생물질, 약용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 제제품과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

- | | | |
|---------------------|--------------|-----------------------|
|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한의학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제외분야

-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용 캡슐 제조(10713)
- 젤라틴을 주성분으로 한 각종용도의 캡슐 제조(20493)
- 구입한 의약품 포장은 도·소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보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의약품 포장활동을 수행하는 경우(75994)
- 치과용 인상재료와 진단 또는 실험용 시약(혈액분류용 및 환자투여용 제외) 제조(20499)

2) 업종 특성

- 고부가가치산업, 고도의 지식산업임
-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인하여 선진국(높은 기술수준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인

신약개발과 합성원료의 생산에 집중 투자)과 후진국(합성원료를 수입하여 낮은 기술수준과 소자본력으로 가능한 소분-포장-판매 부분에 특화하는 경향) 사이에서 시장이 구분됨

- 의약산업은 결국 신약개발 능력과 그 효능에 따라 성장성이 결정됨
- 세계시장은 선진국의 소수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함
- 국내시장에서는 의약품 유통구조, 의료보험제도의 변경,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규제 및 법령에 따라 판매 가격이나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음
-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및 운전자금의 부담이 높은 산업임
-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 산업임
- 중소제조업체의 난무와 과당경쟁으로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의 양극화 문제 발생
-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 제품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국가가 규제하고 있음
- 제품의 최종 선택권이 처방의사에게 있음
-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가 비대칭임
- 가격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음

2. 업종 트렌드

- 의약품 업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며 특히 빠른 속도의 인구 노령화와 사회보장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감
- 의료수요의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정부의 약가규제 등 보험약가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시장의 성장은 미흡
-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국내에서 특허와 품목허가가 연계되면서 신약보다는 제네릭(Generic, 신약을 모방해 만든 복제약) 품목이 많은 국내 제약 업체에게는 불리한 상황임

- 한미 FTA 체결로 특허기간 중 신약을 모방해 받는 제네릭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곧 바로 특허권자에게 통보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가 자동으로 중지됨
- 2012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9,500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별 시장규모는 북미지역 36.4%, 유럽23.4%,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는 17.5%, 일본 11.5% 등 수준으로 비중이 높으며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18조8,900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음
-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은 일본, 베트남, 중국, 터키, 미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11.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36	7	1	1	5	1	16	2	3	47	8	11	13	5	6	2	6	2
종사자수	5,262	310	2	6	533	6	588	5	100	1,968	63	640	534	148	176	82	90	11

[212. 의약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43	40	9	10	17	3	16	3	4	165	13	62	40	19	14	20	6	2
종사자수	23,397	608	337	287	1,177	18	428	46	507	10,902	603	4,194	2,823	711	283	270	146	57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82	50	14	7	6	6	12		1	113	12	15	18	5	1	11	10	1
종사자수	4,141	489	89	28	39	171	264		33	2,015	343	125	167	62	5	151	158	2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경기방어적인 업계 특성으로 불황에도 수익성은 호조 •국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 •인구고령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조성 •해와 잔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선진 기업대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취약 •완제 의약품 기준으로 업체별 생산액이 영세규모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형 제약사가 없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우 낮음 •한정된 시장을 두고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함 •제품 생산, 품질관리, 유통판매 등의 전과정을 정부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강화되는 정부의 규제 리스크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특허기간 중 국내 제네릭 허가 신청 규제



창업자 체크포인트

- 바이오산업은 임상시험 등 객관적 인증이 필요한 산업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
- 개발단계에서 비용부담이 커 사업화기간을 고려한 자금계획수립 및 조달방안 마련
- 각종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
- 특허등록된 기술은 국제특허등록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 신약개발능력의 확보 필요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시장·군수·구청장 (7일)	구 공중위생법 제14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영업시설 및 설비, 세척제제조업의 경우 위생관리인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를 포함함) •제조방법 설명서 •위생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세척제제조업에 한함)
동물용 의약품제조업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과학검역원장(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동물용의약품제조업신고서.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조관리자의 진단서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품목신고서
의약품제조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일)	약사법 제31조, 제35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2조,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약품 제조업 신고서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2)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동물용 의약품제조업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과학검역원장(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동물용의약품제조업허가신청서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조관리자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
의약품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청 (25일)	약사법 제31조, 제3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약품제조업허가신청서 •건강진단서(신청자 및 제조관리자)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조관리자승인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http://medipatent.mfds.go.kr	Online의약도서관 drug.mfds.go.kr
약사신문 www.pharmnews.co.kr	대한민국의약품정보센터 www.kimsonline.co.kr/	

2) 학회

대한약학회 www.kams.or.kr 02-798-3807	국가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 www.medric.or.kr 043-261-3460	보건연구정보센터 www.richis.org 062-220-4183
--	---	--

3) 협회

대한한약협회 http://kherb.org	대한약사회 www.kpanet.or.kr	한국제약협회 www.kpma.or.kr
한국의약품유통협회 www.kpwa.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제12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물질을 사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제외분야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2030)
- 재생용 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을 가공처리(비성형)하여 제품 원료생산(383)

2) 업종 특성

- 플라스틱, 고무 관련 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기기 등 제반 산업의 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기초 원료를 공급하는 화학소재산업으로서 국가경제활동의 기간산업
- 플라스틱 및 고무 등의 물질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관련 기업 총매출액 중 대기업 매출 비중이 약 71%로서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가짐

-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약 33%로 나타나는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가짐
- 플라스틱, 고무 등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은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완제품이 아닌 산업용 부품을 대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아 생산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 저임금과 미숙련,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취약함

2. 업종 트렌드

1) 플라스틱

- 플라스틱은 고유가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과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로 생가증가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건설경기의 둔화와 내수소비의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의 감소를 보임
- 플라스틱은 국내외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과잉의 지속으로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은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 플라스틱 가격은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에틸렌, 프로필렌 등 원재료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 추세를 보임

2) 고무

- 고무 산업은 최근 눈에 띄는 신증설 현상이 보이지 않으나 타이어 산업의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동률을 상승시키면서 생산량의 증가를 보임
- 내수는 국내 타이어 기업들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확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증가에 따른 수출여력의 축소로 수출은 감소함

3. 사업체 현황

〈 전국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21. 고무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735	218	320	229	194	30	27	29	6	868	12	46	63	28	30	119	508	8
종사자수	50,898	723	4,359	5,081	1,967	3,826	2,899	340	138	8,297	292	1,064	4,111	570	2,070	1,946	13,143	72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6,696	1,131	980	912	1,147	316	138	141	40	7,815	127	588	616	243	234	1,005	1,222	41
종사자수	207,959	5,751	9,594	6,595	15,405	4940	1,298	3,307	1,204	87,925	1,279	12,286	15,057	3,520	3,082	19,832	16,571	313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고무, 플라스틱 등의 화학소재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수요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함	- 국내 플라스틱 가공기업들은 대형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에 납품하는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으로 가격교섭력이 떨어지며 내수경기의 침체로 제품가격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유가의 상승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반영할 만큼의 내수가격 상승은 어려움 - 고유가의 장기화 또는 고착화는 관련 업계의 위협요인이 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가 글로벌화, 강제적으로 변모 - 선진국 주도의 신물질 개발로 인해 물질특허 확보가 취약



창업자 체크포인트

-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강화로 제품원료, 생산공정, 자원활용에 대한 친환경화 전략이 필요
- 바이오폴리머 등과 같은 친환경성분제품, 태양광부품과 같은 환경산업분야 소재 등에 연구개발을 검토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석유화학협회 http://www.kpia.or.kr	한국RC협의회 http://www.krcc.or.kr	한국화학산업연합회 http://www.kocic.or.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krict.re.kr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http://www.coreach.net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ww.kist.re.kr	

2) 학회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한국화학공학회 www.kiche.or.kr 02-458-3078
---	--

3) 협회

한국플라스틱고무산업전 http://www.koplas.com/kr 02-551-0102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www.koreaplastic.or.kr 02-2280-8200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02-3668-6100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www.pra.or.kr 02-3215-7300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www.kscia.or.kr 02-2088-7245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www.kowra.or.kr 02-826-5935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02-585-5052	한국포장협회 www.kopa.or.kr 02-2026-8655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www.katech.re.kr 041-559-311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02-369-8600		

제13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연마재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제외분야

- 석재절단 및 토사석분쇄 처리활동이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될 경우(071)
- 법랑제품 제조(25)

2) 업종 특성

- 시멘트 제조업 등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임
- 시멘트제조업 등의 경우 석회석 산지 확보, 막대한 자본 등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상존하고 있음
- 대부분 내수 중심 산업임
- 업체 간 품질과 생산기술상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제조원가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이 주된 경쟁요소임
- 성장성은 주택건설, 토목공사,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정의 비례관계에 있음
- 물류비용이 과다하여 물류비의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한 산업임
- 대기오염산업(이산화탄소 배출 및 분진, 소음 등 환경문제)임
- 에너지다소비산업(에너지 관련 비용이 총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함)임
- 건설자재의 경우 건설경기에 업종이 종속되고 수요의 계절적 편향성이 강함
- 제조공정상 에너지의 소비가 많음
- 산업 주기상 성숙기에 진입되어 있음

2. 업종 트렌드

- 시멘트 업계는 외형은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됨
- 건자재의 경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가상승부담, 친환경제품 개발경쟁 등이 산업재편을 촉발 시킬 가능성이 있음
- 시멘트는 상대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하고 있는 성숙 제품이므로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시멘트로 쉽게 대체될 수 있으므로 가격 요소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
- 시멘트 시장의 저해 요인 중 하나로서 시멘트 대체재의 출현 가능성이 있음. 즉, 아직까지 대체재로서 큰 시장을 차지할 정도의 건자재는 출현하고 있지 않지만 건자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시멘트보다 우수한 건자재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유리산업은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산기술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태양전지의 부품으로서 Photovoltaic 유리가 고부가가치 소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3. 사업체 현황

〈 전국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 〉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814	223	91	82	113	34	39	21	5	675	48	91	87	68	29	91	106	11
종사자수	28,468	766	545	682	1,093	326	376	272	700	7,650	453	2,037	5,487	1,872	239	4,226	1,633	111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977	98	39	60	42	26	10	31	10	768	38	91	99	77	109	221	245	13
종사자수	16,201	231	217	571	402	47	35	114	182	3,706	276	1,455	1,473	743	1,341	3,117	2,262	29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596	47	44	42	62	26	28	45	23	569	235	220	246	146	240	328	244	51
종사자수	39,720	653	689	529	845	363	406	675	401	9,473	4,252	4,373	3,393	2,240	3,189	3,994	3,719	526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464	73	106	60	127	28	44	42	22	815	139	197	317	386	286	418	352	52
종사자수	20,628	238	638	357	1,088	114	202	351	601	4,877	679	1,249	1,550	1,898	1223	3,115	2,051	397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전세계 건설투자규모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향후 전세계 건설투자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들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하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	•진입장벽이 높음 •원가비중이 높아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오르면 적자를 면하지 못함 •시멘트의 대체재의 출현 •시멘트 제조 시 원료로서 산업 폐기물(타이어, 고무, 아교, 용제, 염료 및 오염된 토양 등을 포함)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창업자 체크포인트

- 집진시설 등 배출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폐기물 처리결과 및 위탁처리 시에는 확인서 등을 잘 보관관리 해야 함
- 레미콘제조업 등 야적장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강우로 인한 오염물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계획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이행
- 고기능 고품질화, 원료분야로 사업 다각화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ww.kist.re.kr 02-958-51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www.cerik.re.kr 02-3441-060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ttp://kcl.re.kr/ 02-2102-250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www.rist.re.kr 054-279-63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02-8601-1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041-589-8114

2) 학회

대한건축학회 www.aik.or.kr 02-525-1841	한국세라믹학회 www.ceramics.or.kr 02-538-8230	한국도로학회 www.ksre.or.kr 02-3272-1992~3
--	--	--

3) 협회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1588-6912	한국판유리산업협회 www.flatglass.or.kr 02-3453-7991	한국시멘트협회 www.cement.or.kr 02-568-5985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www.krcic.or.kr 02-422-1551	전국유리협회 www.koreaglass.or.kr 031-334-6113	한국골재협회 www.aak.or.kr 02-470-0150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www.e-remicon.or.kr 02-540-1891	한국레미콘공업협회 www.krmcia.or.kr 02-3444-1921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www.ascon.or.kr 02-583-5241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www.glasskorea.org 02-364-7799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02-559-3500	

제14절 1차 금속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 업종 특성

-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 설비투자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며 각종 산업분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
- 국가 기간산업으로 과거에는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아 왔음
-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대규모 투자와 공장증설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요,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상존

- 특정 지역의 자원 편중으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높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 공급탄력성은 낮음
- 자원의 유한성으로 스크랩, 재생스크랩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
- 경기순환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고 통상 마찰이 빈번하고 제조과정 상 원자재 및 에너지다소비산업, 환경오염유발산업으로 분류됨
-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국제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
- 생산공정은 자동화를 실현해야 하고 24시간 주야 연속 생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률, 종합효율의 관리가 크게 요구
-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원자재의 확보가 중요하며 판매 가격에서 원자재 가격의 비중이 높음

2. 업종 트렌드

- 최근에는 환경 및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합리화 투자에 주력하다가 고부가가치화 투자로 전환
- 수출 및 대미투자 전략의 확대와 수출품의 고급화 및 부가가치화 추구
- 세계 철강업계는 업체 간 통합에 의한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추세
-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성장세로 전환
- 수입규제, 수입관세 철폐 등 교역환경의 불투명화
- 일본에 비하여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 높음
- 수요산업의 성숙에 의한 내수 둔화
- FTA 체결 시 일부 경쟁력 약화 품목에서의 수입증가 예상
- 공급과잉의 시장구조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
- 시장의 글로벌화, 대체재의 위협, 수입재의 유입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1차금속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41. 1차 철강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163	227	558	176	291	78	31	120	9	1,042	27	118	184	100	106	381	712	3
종사자수	101,971	1,081	10,893	1,579	7,495	1,090	190	2,670	64	13,128	848	1,880	10,908	3,241	9,737	22,172	14,988	7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670	90	75	56	228	26	24	31	10	665	10	51	75	29	21	124	154	1
종사자수	33,556	563	688	1,049	3,248	298	318	3,750	349	11,525	107	1,161	1,952	1,295	475	4,477	2,292	9

[243. 금속 주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517	104	147	117	199	21	29	10	1	465	4	30	31	23	16	153	166	1
종사자수	22,592	288	1,778	836	3,850	377	438	646	19	4,898	111	404	762	397	359	3,465	3,961	3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임 •시장의 규모가 큼 •조업기술 및 우수인력의 확보 •주요 수요산업의 질적인 성장 •생산 기반기술의 혁신 및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 추진 •남북 협력 활성화 시 북한 수요 기대 •국내 고효율 설비의 확보	•FTA체결 시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 •대규모 자본의 투자 필요 •사업준비기간의 장기 소요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환경 규제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 •대체 소재와의 경합 심화 •수요 신장세의 둔화 •세계적인 교역환경의 불명확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의 확보
- 원자재의 확보 능력
- 자동화 시설 및 효율적인 원가관리체계 구축
- 설비의 효율성 확보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043-870-56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www.kriss.re.kr
042-868-5114

한국철강신문
www.kmj.co.kr
02-583-4161

2) 학회

(사)대한금속,재료학회
www.kim.or.kr
02-557-1071

한국주조공학회
www.kfs.or.kr
02-2069-2877

한국표면공학회
www.kisehome.or.kr
02-563-0935

한국소성가공학회(압연관련)
www.kstp.or.kr
02-501-4338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www.rist.re.kr
054-279-6333

3) 협회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02-559-3509

한국비철금속협회
www.nonferrous.or.kr
02-567-2313

제15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분말야금제품,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금속 열처리업
• 도금업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날붙이 제조업	• 일반철물 제조업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튼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금고 제조업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 금속표시판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제외분야

- 기계 및 장비 제조(26~31), 가구 제조(320), 귀금속제품 제조(331)

2) 업종 특성

- 조선, 발전, 플랜트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내수 중심형 산업임

- 저부가가치의 저급제품에 수출특화 되어 있고 수입제품은 고가의 고급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금속제품의 수입단가는 수출단가에 비해 낮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단가가 수입단가의 3배정도 되고 있으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일본,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임
- 품질, 성능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
- 중소기업 위주로 디자인, 성능, 해외 마케팅이 취약
- 납기 및 가격 등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며 환경문제의 유발 가능성이 높음
- 업체 간 경쟁은 높은 반면 개별업체의 전후방 가격교섭력은 낮음
- 업종에 따라 다품종 주문생산이 많음

2. 업종 트렌드

- 해외시장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나 독일, 일본 등과의 경합 관계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전동식 또는 가정용, 산업용 공구의 경우 독일,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높아 수출시장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기타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공구 및 기계공구 분야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소재의 강도 뿐 아니라 특성이 계속 향상되고 있음

- 국내 건설업의 경기 악화가 금속가공업의 외형작 축소를 유발
- 미국의 산업용구, 저가조립 관련공구 및 부품제조업 관련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확대추세에 있음
- 수동식제품은 중국이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음
- 가정용, 산업용 공구의 경우 독일,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높아 수출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금속 가격의 강세로 원가 상승요인 발생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4,939	1,210	1,330	828	641	423	289	325	33	4,019	419	600	692	499	728	1,152	1,597	154
종사자수	107,960	4,294	6,509	3,053	4,272	1,900	1,030	4,695	386	30,451	1,727	6,011	6,615	3,013	7,378	8,191	17,984	451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00	5	2	4	3		3			25		1		4		14	39	
종사자수	7,716	30	447	84	10		453			500		2		411		3,639	2,140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7,144	4,593	4,528	6,201	4,649	961	650	639	36	15,678	174	681	819	523	333	1,669	4,958	52
종사자수	305,116	11,361	25,320	31,728	31,150	7,099	2,781	6,877	261	98,626	771	6,185	10,314	5,770	4,281	18,776	43,673	143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가위, 주방용품 등의 해외시장진출이 활발함 •미국 등 수요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음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세계시장점유율 저조 •선진제품에 비하여 단가가 낮아 수익성 저하 •기술 및 기능인력의 확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음



창업자 체크포인트

- 해외 판매를 위한 브랜드제고 필요
-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성능개선과 판로 확대
-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투자
- 고급, 고부가가치제품군에의 역량 강화
- 건설업의 경기 및 실적동향 고려

5. 인·허가 사항

1)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총포·화약류·전자총격기·도검·분사기·석궁제조업	경찰청장 (20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제4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령 제8조의 제조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조업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사업계획서 •위해예방계획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043-870-56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www.kriss.re.kr
042-868-5114

국방과학연구소
www.add.re.kr
042-822-4271

2) 학회

(사)대한금속,재료학회
www.kim.or.kr
02-557-1071

한국부식방식학회
www.corrosionkorea.org
02-539-5869

(사)한국분말야금학회
http://kpmi.or.kr
02-539-5869

대한용접,접합학회
www.kws.or.kr
042-538-651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www.kimst.or.kr
042-821-2203

한국복합재료학회
www.kscm.re.kr
02-598-1550

3) 협회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02-559-3500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www.koreamold.com
02-783-1711

한국열관리시공협회
www.boiler.or.kr
02-847-6114

제16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엑스선관 제조(2711)는 제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 업종 특성

업종분야	업종 특성
전자부품	•해외시장 의존 산업 •전자산업의 하부구조로서 통신분야와 PC부품 분야의 성장성과 정의 비례관계에 있음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일본과 선진국)가 큼 •환율변동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상존함 •대부분 안정된 수요처가 존재함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제품 개발 후 시장도입기에서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급락하는 위험이 상존, 즉 투자위험이 높음 •기술의존도가 큰 산업임 •생산수율(웨이퍼당 생산된 칩수가 기준)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
컴퓨터	•모든 디지털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중심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함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히 단축되어 오고 있음 •컴퓨터는 조립중심적이어서 시장진입이 용이함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 휴대성 선호, 가격하락 등의 환경이 계속되고 있음 •하드웨어보다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음
영상음향	•기술, 자본,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산업임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복합제품 출현으로 시장의 확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기술주 도형의 산업임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가격경쟁력이 주요 경쟁우위 결정요소가 되고 있음 •생산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산업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컨버전스화 등을 통하여 엔터테인먼트의 기회를 확대
통신장비	•성장율이 높은 산업이며 미래산업 •정부정책에 따른 직접적 시장진입장벽이 있는 산업 •미래의 고도 정보화 사회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음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R&D의 위험부담, 여타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 기술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산업임 •첨단 소재, 반도체 등을 포함한 통신 관련 전자부품산업을 하부구조로 하는 수직적 계열 구조의 경향이 있음 •투자기간에 비하여 자금회수기간이 긴 산업 •하드웨어 생산기술, 통신 관련 전자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기술집약적 산업 •에너지 절약형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관련기기 및 주요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큼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2. 업종트렌드

구분	업종 트렌드
전자부품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영향 증가 •환경변화의 급속화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구조의 개편, 핵심역량 강화, 연구개발 등 자신의 강점을 재정비 •전자부품의 고도화 진행 및 수요 확대
컴퓨터	•상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양상임 •무선정보의 이용환경과 이동성을 극대화 시킨 컴퓨터 시장의 확대 •차세대 컴퓨팅 환경을 지배할 대표적 기술은 그리드(grid)컴퓨팅 기술임 •아시아 지역이 생산거점으로 부상 •인공지능형 컴퓨터의 부상 •보급률 증가는 감소하고 있으나 PC시장은 성장의 여지 있음 •모바일 PC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국산화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율은 상승하고 있음
영상음향	•휴대형 음향기기(MP3 플레이어) 시장의 확대, 카오디오 등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의 등장,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시장의 확대가 세계 음향기기산업의 지속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차세대 음향기술은 방송통신 및 모바일과의 연계를 통한 고품질/고실감 음향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 및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성장 및 지식융합사회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기술의 개발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 •고품질/고실감 기술의 경우 초고화질 TV(UHDTV), 디지털 시네마 등 영상기술과 결합하여 현실감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산업용기기가 소형화 되면서 가정용으로 전환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음 •기능의 복합화가 진전되면서 다기능 경쟁제품으로 개발됨 •기존 제품의 성능과 기술 향상으로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이 증가 •고기능 제품의 저 가격화 현상 •양방향 서비스 및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데이터 송수신 및 멀티미디어 정보교환이 용이하게 됨 •영상기기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
통신장비	•급속한 기술발전과 컨버전스화의 진전 •네트워크의 진화 및 통신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 •전자제품 등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 예상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 경쟁이 심화 되고 있음 •유선통신기기의 감소 및 무선통신 분야 증가 •휴대폰 시장의 경우 세계시장의 포화상태로 다소 성장 둔화 •디지털화와 모바일화의 급속히 진전 •네트워크의 진화 및 통신서비스의 발전

3. 사업체 현황

〈 전국 전자부품 등 통신장비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61. 반도체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47	142	10	23	105	22	38	1	1	547	4	58	87	27	4	48	30	
종사자수	109,511	4,112	88	550	1,878	4,141	1,855	149	2	65,893	9	10,952	10,767	2,091	222	5,834	968	

[262. 전자부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290	500	112	107	1,023	63	81	21	8	2,743	12	154	132	20	8	127	179	
종사자수	185,888	4,225	5,488	3,816	13,224	1,041	1,655	2,549	2,270	80,257	141	15,593	23,381	686	145	26,466	4,951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54	238	11	22	53	5	21	2		385	4	12	15	6	3	62	15	
종사자수	13,781	3,120	73	641	356	8	328	2		6,453	53	688	610	104	106	1,167	72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098	443	58	55	383	48	71	4	1	1,527	14	40	53	11	5	284	101	
종사자수	89,954	6,363	848	1,900	6,460	2,440	2,122	103	126	41,571	325	752	2,179	114	54	21,528	3,069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124	239	35	22	147	16	10	3		466	9	20	18	8	1	91	38	1
종사 자수	35,777	2,899	464	168	2,570	287	359	53		24,799	103	256	442	38	1	2,490	847	1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7	9	1		1			1		18	2	3				1	1	
종사 자수	271	47	4		8			1		135	12	55				2	7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디지털 컨버전스에 적기 대응이 가능한 체제의 구축 •집중적인 초기투자를 통하여 LCD, PDPemd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에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디지털 TV에서 다수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디지털 TV, DVD, DVDR 등에서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국내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우수한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위성 및 지상파 디지털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디지털 가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융합, 복합제품 출현 등으로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신규 수요 및 대체수요의 창출을 촉진하고 있음 •정부의 차세대 이동통신산업 육성정책	•소재 및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글로벌 기업간 경쟁 심화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주요 제품의 기술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전문기술인력 부족 •중국 등의 급속한 성장과 추격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로 국내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세계 시장의 포화상태로 경쟁이 심화됨



창업자 체크포인트

- 융복합화 추세로 소형화 저전력화 고성능화 된 제품개발에 투자
- 제품 기술력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성공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에너지 및 친환경분야에 대한 사전검토 필수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2141-50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02-589-22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042-860-61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www.nia.or.kr 02-2131-0114	한국컨텐츠진흥원 www.kocca.or.kr 1566-111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www.kdb.or.kr 02-3708-5300
전자부품연구원 www.keti.re.kr 031-789-7000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02-405-4118	

2) 학회

대한전자공학회 www.ieek.or.kr 02-553-0255	한국전자파학회 www.kiees.or.kr 02-337-9666	한국CAD/CAM학회 www.cadcam.or.kr 02-501-6862
한국방송공학회 www.kosbe.or.kr 02-568-3556	한국정보통신학회 www.kiice.org 051-463-3683	

3) 협회

한국멀티미디어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www.multimedia.or.kr 02-3409-167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02-3460-9114	(사)대한정보통신기술인협회 www.kte.or.kr 070-4099-7944
--	---	--

제17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내과, 외과, 치과용의 X선 응용장치, 기계요법 및 진단용 기기, 의료용 가구 및 기구, 인조관절 및 기타 인공 인체부분, 정형외과용 기기,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등을 제조, 측량·측정·시험·분석·검사·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를 제조, 안경테 및 조립된 안경, 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기타 재료의 광학요소, 사진기, 영화촬영기, 광학현미경 및 기타 광학기기 등 광학용 기기를 제조, 각종 시계와 시계 구동부를 갖추고 시간을 측정, 기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각을 지시하는 기기와 시계케이스 및 시계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제조업
•시계부품 제조업		

○ 제외분야

- 치과용 시멘트, 외과용 피복용품, 탈지면, 붕대, 장선 및 기타 봉합사 제조(2130)
- 측정 장치가 결합된 펌프 제조(2913)
- 미립자가속기, 신호발생기, 금속 및 광물탐지기 제조(2890)

- 사진용 화학물질 제조(2049) 광섬유케이블 제조(28301) 가죽제 시계줄 제조(1519)
- 치과의사, 안과의사에 의한 치열교정 및 안경맞춤 활동은(86)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2) 업종 특성

업종구분	업종 특성
의료기기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빠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음 • 국내기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투자여력이 낮음 •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 •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기술력 및 전문인력이 확보가 어려움 • 산업에 대한 분석 및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음 • 국내외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음
기타	• 일본, 미국, 독일 등 3대 전통적 기계산업 강국이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임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3~5년정도이며 고정확, 초정밀급 기술은 5년 이상의 격차가 있음 • 유량계, 액면계, 압력계, 온도계, 공정계측제어기류 및 환경계측기기는 국제경쟁력 확보 • 가공도가 높고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숙련공에 의존하는 분야가 많음 • 다품종 소량생산업체가 많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음 • 저가격화와 고성능을 이룰 수 있는 첨단기술의 보유 • 국내 부품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핵심 정밀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가격경쟁력에서 한계 •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기술력 부족 • 생산성증가를 측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R&D투자 및 설비투자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 정보통신, 정보기술, 컴퓨터, 자동화, 전자, 가전, 의료 등 산업분야에 응용 가능

2. 업종 트렌드

1) 의료기기

-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의료기기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 측면에서는 콘택트렌즈가 2012년까지 9.8%의 연평균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질병형태가 선진국화 되면서 선진국에서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품목이 국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 품목은 점차 고가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음
- 중국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내 유입으로 시장 잠식의 우려가 있음

2) 기타

- 중국의 시장점유율 증가 예상
- 국내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융복합화의 지속 예상
- 기업 간 기술협력 증가 예상
- 응용 가능한 관련 시장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시계의 경우 패션화 경향 증가

3. 사업체 현황

〈 전국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7,408	4,191	340	293	164	159	167	81	5	1,087	138	105	114	124	77	149	187	27
종사자수	36,323	7,598	2,329	1,650	1,303	749	995	218	183	12,884	2,097	1,059	1,639	620	305	1,496	1,075	123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409	697	182	238	301	63	221	75	3	1,927	15	76	102	30	36	223	219	1
종사 자수	47,130	6,129	2,300	1,682	2,763	517	2,836	763	815	20,189	116	741	1,768	174	248	2,834	3,251	4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203	98	18	468	67	16	40	1	2	328	7	27	20	5	3	20	82	1
종사 자수	20,244	756	75	2,620	982	600	995	4	49	8,004	356	2,024	902	19	5	1,345	1,505	3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15	90	5	2	32					81		1	1				3	
종사 자수	1,155	414	12	4	114					554		2	33				22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IT, 광학, 반도체용 기계설비 및 나노산업 기반 제조장비 등의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기계개발은 선진국 역시 기술개발단계 또는 상품화 진입과정에 있는 상태 •정보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카트로닉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 •정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등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업종들이 생산성증가를 측면에서 우월성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와 의료기기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시행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기계개발이 개발단계에 머무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R&D투자 및 설비투자가 부족 •국내 창업 시 많은 설비투자비용이 발생하며 기술수준 격차에 따른 초기 시장진입이 제한 •글로벌 경기와 환율의 영향에 따른 민감도가 높음 •지식재산권의 확보 미흡



창업자 체크포인트

- 진출사업분야와 진출지역의 시장동향 및 인·허가제도, 성장잠재력 분야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중요
- 국내 연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기술의 개발과 해외 판로 공동개척의 추진 필요
- 가격이 결정적 요소가 아닌 시장, 선진국의 Global 회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시장에 안착한 후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 연구개발용이 아닌 process용 기기의 생산이 필요
- 자사의 고유기술 개발 필요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의료기기 제조 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5일)	의료기기법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의료기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의료기기제조신고서 •제조공정 또는 시험은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계량기제작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0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계량기의 시험, 검사에 적합한 검사실, 환경조건, 기준기, 검사설비를 갖출 것	•계량기제작업등록신청서 •검사설비명세서 •검사실의 도면

3)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의료기기 제조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5일)	의료기기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제조시설을 갖추고 품목별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함	•의료기기제조업허가신청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법인인은 제출하지 않음)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법인인은 제출하지 않음) •품질책임자가 제7조의4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기제조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안전성·유효성 심사 필요: 80일 2. 기술문서 심사 필요: 65일 3. 기술문서 등 심사 불필요: 10일)	의료기기법 제6조, 제7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의료기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서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학원장(10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제조시설을 갖추고 품목별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함.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허가신청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허가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

4) 개설통보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의지·보조기 제조업	시장·군수·구청장 (7일)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시행규칙 제54조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않아도 됨	•의지, 보조기제조업개설통보서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개설의 경우에만 해당)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개설 또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통보의 경우에만 해당)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www.mw.go.kr
12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02-369-8600

2) 학회

대한의학회
www.kams.or.kr
02-798-3807

대한치과보철학회
www.kap.or.kr
02-569-1605

3) 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2-596-7404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www.komedia.or.kr
02-747-0671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www.kowic.or.kr
02-422-6690

제18절 전기장비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전기발전기, 전기모터, 회전변환기와 각종 변압기, 안정기, 배터리 충전기 및 기타 유도자, 발전소 및 산업장비,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 비철금속 또는 광섬유에 절연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의 절연선, 절연케이블 제조, 사진용 섬광전구를 포함한 각종 전구 및 램프,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 제조,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와 비전기식 조명장비 제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내연기관 및 운송장비용 전기장치(자동차용 제외), 전기용접기, 초음파 세척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일차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제외범위

- 램프용 유리외피 제조(2312)
- 전기식 잔디 깎는 기계 제조(2921) 유압식 모터 제조(29120)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3) 산업용 냉장 또는 냉동장비 제조(29171) 공조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이온식 제외) 제조(2917)
- 전기식 의료 또는 치과용 수공구 제조(271)

-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재료로 주형 또는 성형제조는 222, 231, 232에 각각 분류
- 퓨즈용의 선 또는 스트립 제조(24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30392) 자동차용 발전기 및 크랭크회전용 모터 제조(30392)
- 다이오드 제조(26120)

2) 업종 특성

- 한전에 납품하는 품목의 경우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임
- 국산화 개발이 초기에 이루어진 전동기, 개폐기, 변압기 등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
- 내수규모, 국산화 추진시기 등에 따라 품목별로 가격의 편차가 심한 편임
- 신기술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편이며 환경 관련 기술은 기반 확립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의 진행단계 임
- 설비운영기술 및 조립, 제작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90% 이상 육박한 수준임
- 연구개발과 부품생산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 공정이며 조립생산은 노동 및 자본집약적 공정으로 기술, 자본,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산업임
- 소비자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기술주도형 산업으로 연구개발 비용의 부담이 큰 산업 임
- 안전성, 신뢰성 및 내구성이 다른 요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산업
- LED 조명산업은 다른 디스플레이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력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임
- 규격화 및 표준화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
- 공인인증 시험이 중요

2. 업종 트렌드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기계보다 정보화된 전력기기 또는 디지털 전기기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해외 우수기업들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가정용기기의 경우 선진국 시장은 고급제품 중심으로 개도국에서는 보급형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신제품의 등장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음
- FTA 협정의 확산에 따라 세계시장은 치열한 경쟁 예상
- 새로운 기술개발로 성능대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저가품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시장참여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수명이 반영구적인 LED 조명이 활성화될 경우 전구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구조에서 조명기구 일체를 신규 구매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아시아 지역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트렌드는 친환경, IT융합, 고효율, 초고압부문의 R&D에 많은 투자 예상
- 신뢰성 향상기술 개발의 중요성 증가

3. 사업체 현황

〈 전국 전기장비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631	984	850	500	727	206	158	207	11	3,435	46	216	213	90	96	285	589	18
종사자수	102,290	6,144	7,249	2,279	7,138	2,557	1,206	5,206	726	39,997	203	4,923	5,320	1,477	895	5,957	10,908	105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05	17	5	3	9	12	8	7		76	2	11	14	8		23	10	
종사자수	12,669	135	82	126	72	721	390	247		1,175	37	1,043	6,218	389		1,438	596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426	122	43	30	98	21	4	16	9	738	9	95	66	17	3	58	97	
종사자수	22,711	867	653	447	771	353	23	605	269	8,190	399	3,195	3,201	591	54	1,582	1,511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611	924	436	325	345	224	136	81	4	2,062	128	115	120	124	98	205	246	38
종사자수	34,587	3,345	1,920	2,514	2,559	1,190	483	627	33	14,761	606	425	1,251	609	783	2,671	698	112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746	194	74	73	205	84	16	7	4	705	16	35	53	27	26	59	167	1
종사 자수	31,122	1,626	740	701	2,951	5,689	100	34	51	7,652	465	458	1,964	306	577	713	7,091	4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039	173	83	35	82	26	22	10	5	437	7	21	23	19	5	41	49	1
종사 자수	12,172	1,728	941	329	736	148	338	83	110	5,225	32	377	234	218	31	916	721	5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컬러TV의 디지털 TV로의 교체,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홈시어터 시장 확대 등 고가의 디지털기기로의 교체와 신제품 수요의 증가 •중국, 인도, 동구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되어 신규 수요 및 대체수요 창출 촉진 •LED 조명의 적용제품이 다양하여 전후방의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큼	•소재 및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 심화로 첨단기술도입이 어려움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표준화 경쟁 심화 •삼성 등 대기업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시장 주도 •LED 칩의 원천기술이 해외 선진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기술무역 수지 적자 발생과 영세중소기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편임



창업자 체크포인트

-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개발로 성능대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수 요소
- 해외시장진출 적극 검토하고 개척할 필요성
- 해외 납품 대기업과 협력 모색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고려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1588-7500	한국전력공사 www.kepc.co.kr 02-3456-3114	한국전기산업진흥회 www.koema.or.kr 02-581-8601
전기위원회 www.korec.go.kr 1600-8172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ktc.re.kr 1899-76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www.kriss.re.kr 042-868-5114
한국과학기술원 www.kist.re.kr 02-958-5114	전력연구원 www.kepri.re.kr 042-865-5203	한국전기연구원 www.keri.re.kr 055-280-1114
한국전기신문 www.electimes.com 02-3219-0600		

2) 학회

대한전기학회 www.kiee.or.kr 02-553-0151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www.kieeme.or.kr 02-538-7958	(사)전력전자학회 www.kipe.or.kr 02-554-0184~5
대한전자공학회 www.ieek.or.kr 02-553-0255	(사)전력전자학회 www.kipe.or.kr 02-554-018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www.kiiee.or.kr 02-564-6534

3) 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1566-1177	대한전기협회 www.electricity.or.kr 02-3393-7600	한국제품안전협회 www.ksafety.kr 02-890-830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1899-3838	전력정보센터 www.epic.or.kr 02-6007-0359	전기공사공제조합 www.ecfc.co.kr 02-517-4684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www.klfc.or.kr 032-681-311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www.kemc.co.kr 031-724-6100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www.keic.org 02-597-1010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www.koreacable.or.kr 02-962-9691	한국조명디자인협회 www.kald.org 070-8797-1820	

제19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과 다양한 종류의 기계제조에 이용되는 구성품 제조, 다른 사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제조, 특수목적용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내연기관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승강기 제조업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저울 제조업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제외범위

- 수공구용 또는 공작기계용 호환성공구 제조(25934)
- 전기식 용접기 제조(28909)

2) 업종 특성

- 일본, 미국, 독일 등 3대 전통적 기계산업 강국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IT, 광학, 반도체용 기계설비 및 나노산업 기반 제조장비 등의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기계개발은 선진국 역시 기술개발단계 또는 상품화 진입과정에 있는 상태임
- 글로벌 경기와 환율의 영향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카트로닉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국내 기계산업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에 비해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음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R&D투자 및 설비투자가 부족한 실정임
- 일반적으로 소비재 제품이 아닌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재를 생산하는 자본재 산업이므로 주요 고객층이 제조업인 경우가 대다수임
- 전후방 산업들과의 연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
- 기술력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
- 해외의존도가 높아 기술 도입액이 커서 만성적인 기술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개발된 기술이 상품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수요 기반이 필요
- 여타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기간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수입되는 제품에 비하여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가 낮은 구조임
- 수주형 산업으로 각 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임

2. 업종 트렌드

-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임
- 주력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 확대 및 애로가 예상
-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의 신 시장 개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공장기계, 러시아는 내연기관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됨
- 대미수출의 비중이 계속 하락 하고 있음
- 21세기 정보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달로 메카트로닉스 산업으로 전환 추세가 확산
- 부품 소재기술간의 융복합화 현상 증대
- 가격보다는 기술력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특수 산업용기계와 토목용 기계의 생산이 증가
- 주요 기업들은 기존 시장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화 가속화
- 광범위하게 부품의 모듈화 현상이 나타남
- 지속적인 M&A와 지역별 특성화, 전문화 전략 강화

3. 사업체 현황

〈 전국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291.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5,441	1,206	1,854	676	1,469	259	259	225	17	5,452	87	256	424	191	156	521	2,359	30
종사자수	200,181	7,456	20,151	9,082	17,739	5,067	3,749	4,934	329	58,483	1,442	4,627	10,923	3,357	3,006	6,989	42,746	101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1,918	2,035	1,519	1,725	1,901	460	458	263	25	8,135	59	419	721	259	107	1,292	2,519	21
종사 자수	207,154	9,126	9,012	12,999	21,039	4,475	3,682	4,067	195	77,149	608	5,346	11,296	4,070	1,020	14,575	28,341	94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기술의 융복합화를 위한 풍부한 IT산업 분야에서의 강력한 국내 기반 조성 •가공, 조립 등의 Mid-Tech 강점 •부품, 소재산업기반의 확충 강화 •선진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전시회의 활성화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시행 •세계 수요시장의 확대(BRICs, ASEAN)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육성지지	•핵심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 •국내 창업 시 많은 설비투자비용이 발생 •일부 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주도 •기술수준 격차로 초기 시장진입 시 기술적 어려움 발생 •국산설비의 신뢰성 기반 부족 •기술인력의 고령화 급진전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후발 개도국에 비해 높은 임금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고급인력들의 기피현상 •친환경설비 관련 규제 강화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확대



창업자 체크포인트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
- 해외시장 진출 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현지 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제품공급 전략과 현지 언어로 된 매뉴얼 등 자료제작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제품홍보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정수기 제조업	시·도지사 (7일)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0조	검사실, 검사장비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함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에 의 뢰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검 사실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정수기제조업신고서 - 정수기의 품목, 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함)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 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4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설비, 성형설비, 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냉동기의제조등록기준 :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 제관설비, 건조설비, 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특정설비의제조등록기준 :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 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10일)	하수도법 제52조, 시행규칙 제53조	시행령 별표 5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 처리용량산출서 - 처리효율산출서 - 설치, 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건본 -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043-870-56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scs.ktl.re.kr 02-860-1114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042-861-74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02-6009-3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041-589-8114

2) 학회

한국정밀공학회
www.kspe.or.kr
02-518-0722

(사)한국농업기계학회
www.ksam76.or.kr
063-224-2392

한국유체기계학회
www.kfma.or.kr
02-563-1867

(사)한국기계가공학회
www.ksmpe.or.kr
055-213-2858

3) 협회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www.ref.or.kr
02-2193-4300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www.koreamold.com
02-783-1711

대한건축자재협회
www.kbm.or.kr
1688-3398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www.komma.org
02-565-2721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www.kocema.org
02-2052-9300

한국동공업협동조합
www.cu-kcic.or.kr
02-786-3341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www.tool.or.kr
02-711-0989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www.plasticsmachine.or.kr
02-2677-5080

제20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자동차용 엔진 및 엔진이 결합된 샤시, 도로주행용 트랙터, 승용·화물용 또는 기타 특수 목적용의 각종 완성차량을 제조·재생 및 개조하거나 완성차를 조립부문별로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도록 분할·포장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되고,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제외범위

- 타이어 및 튜브 제조(22111)
-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
- 내연기관용 공기 및 액체여과장치 제조(29174 또는 29175)
- 차량용 공기조절장비(29172)
- 자동차수리 활동(9521)

2) 업종 특성

- 세계 최대 제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연관 산업 및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에너지기술, 환경기술 등 신 성장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과 기술과급효과가 큰 산업임
- 시장진입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진입 및 철수장벽이 매우 높은 자본집약형 산업임
-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경계에서 전통산업에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 21세기 신 기간산업으로서 산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신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임

2. 업종 트렌드

-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 기기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음
- 단순 상품에서 복합상품으로 진화됨에 따라 전자산업은 물론 IT산업 등 신산업과의 연관성도 커지고 있음
- 안전, 환경, 에너지, IT기술을 접목한 무공해, 첨단 자동차시대로 이동 중이며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선진국 업체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해외 직접투자 및 생산제휴의 증가에 따라 대형 완성차 업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 가속화
-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지역 및 차급간 경계가 붕괴되고 있음
-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개도국의 수요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통신, 편의장비가 차별화된 주요 요소로 부각
-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기위한 신차개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자동차와 전자통신 기술이 접목된 안전지향형 시스템인 텔레매틱스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시키고 차량정보화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도 일본 및 한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3	2	2	1	5	3	1	3		14		2	5	5		1	8	1
종사자수	82,225	10	2,511	8	10,485	7,109	6	26,986		21,515		22	3,172	7,460		13	2,920	8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650	18	27	9	39	43	10	9	6	219	6	45	51	63	20	37	46	2
종사자수	6,888	68	133	65	248	724	145	126	26	2,108	18	321	618	1,346	108	338	492	4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7,746	165	540	596	566	210	63	406	28	1,829	47	160	567	272	36	673	1,588	
종사자수	230,578	884	10,045	17,894	12,764	6,091	2,676	18,256	1,229	49,631	3,888	8,783	29,478	9,973	668	25,941	32,377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한국 자동차에 대한 해외의 인식 개선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시장과 인접하고 있음. •수요가 큰 지역의 현지생산 확충을 통한 수익창출 가능 •미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미국진출기회의 확보 및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에 기여 •풍부한 생산경력과 선진국과의 가격경쟁력 •지능형 자동차 관련기술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 •수출마케팅 능력 확보와 풍부한 해외영업의 경험 보유 •급속한 품질 및 기술수준 향상 •관련 산업 기반의 존재(전자, 정보통신, 금형 및 공구, 기계, 금속 등)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 가능성 상존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 단순 조립생산기지화 우려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국 현지생산능력의 증가 반면에 국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지연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자동차의 점유율 증가 •신용자동차 생산국의 도전 •부품업체의 독자기술개발 능력 부족 •대립적인 노사관계 •완성차 업체와 연계한 부품업체의 공동기술 개발 및 공조체제 미흡



창업자 체크포인트

-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 글로벌 조달 및 생산체제 구축
-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kari.hmc.co.kr
02-3464-2828

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031-910-3114

자동차부품연구원
www.katech.re.kr
041-559-3114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02-2230-6114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www.kitia.or.kr
02-3488-5100

2) 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www.ksae.org
02-564-397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02-369-8600

3) 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www.kama.or.kr
02-3660-1800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www.kapkorea.org
02-3271-2965

한국수입자동차협회
www.koroad.or.kr
02-2230-6114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www.kaica.or.kr
02-587-0014

대한타이어공업협회
www.kotma.or.kr
02-551-1901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www.kasa.or.kr
02-867-0623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 제조협회
www.tama.or.kr
053-586-9717

제21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각종 재료로 유조선, 화물선 등 각종 항해용 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등의 기타 비행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 활동, 철도·궤도용의 기관차 및 비자주식의 차량과 철도용 관련 장치물 제조, 동력 및 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기구, 우주선 및 기타 우주비행체 등을 제조·재생 및 개조하는 산업 활동, 탱크 및 장갑차량 등 전투용 차량,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용 엔진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 동물견인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제외범위

- 선박용 엔진 제조(29111), 항해 및 기타 선박용 측정기구 제조(272),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2721)
-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부품 제조(28909)
- 무기 및 총포탄 제조(25200)
- 은행권 또는 귀금속운반용 장갑차량 제조(30122)

2) 업종 특성

- 고용 창출형 산업임
-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자본회전율이 낮은 산업임
- 종합조립산업(기계, 금속, 철강, 화학, 전기 등)임
- 노동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임
- 막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소요되기 때문 장기 자금순환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 산업사양이 다양하므로 양산이 불가능한 주문생산산업임(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등 일부 업종 제외)
- 노동집약적이며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중요함
- 제조공정상 하도급 기업이 공존함
- 성숙산업으로서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임
-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임
- 세계가 단일시장이므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산업임
- 군수, 방위 산업적 성격으로 정부의 지원, 규제에 의존함
- 수익성과 수주는 환율(특히 경쟁국가인 일본의 엔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시스템 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의 견인 역할 기대
- R&D집약 및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임

2. 업종 트렌드

업종구분	업종트렌드
조선산업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형태에서 수요자 리드형 기술개발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수요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속화, 대형화, 경량화, 전용화, 지동화, 경제선형화, 고마력화, 환경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선박설계 분야에서, 표준화, 전산화, 정보화, 국제규격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해상수송환경의 변화로 전용화, 자동화, 경제선형화, 구출력 추진시스템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영활동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상거래화,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일부 고부가가치 선종 및 핵심 기자재의 기술분야를 제외하고 선진 조선국에 비해 기술경쟁력 비교 우위 또는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북극항로의 개방 가능성으로 해양프랜트, 쇄빙기능 선박의 수요 등도 증가하고 있음 •조선해양시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켓으로 해외기업보다 국내기업 간 시장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항공우주산업	•G7국가들의 매출액이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에 이은 21세기 국가 기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미래 중점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지정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군수중심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 및 통합이 이루어졌음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음 •유럽국가들은 상호간 협력과 동시에 경쟁하는 상황임 •유럽은 항공우주산업 전 부문에서 국가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보잉여객기사업, 헬기를 비롯한 일부 사업에서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고 있음 •한국은 전반적으로 초기단계인 시장의 진입기에 있으며 부품 등 일부 제품만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 됨 •한국의 경우 전통적 일반제품 수준의 시장접근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주산업은 정보통신용 인공위성 사업과 일부의 상업용 발사체산업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R&D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타	•자전거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산업으로 자전거도로 확장 및 자전거 타기 운동 등의 활동 증대 •자전거 동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3. 사업체 현황

〈 전국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 〉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372	16	307	3	26	3	1	326	1	35	9	7	16	42	403	128	1,045	4
종사자수	140,210	61	5,675	7	268	18	9	37,696	26	186	50	48	252	2,019	16,189	1,911	75,776	19

[312. 철도장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44	27	27	7	15	1	5	1		91	1	7	4	5	1	8	44	
종사자수	6,479	153	328	90	195	2	25	5		1,936	7	293	153	142	15	209	2,926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77	4	15	3	6	2	8			21	1	7	5	2	1	4	98	
종사자수	12,576	18	3,160	22	108	6	288			251	4	91	497	166	2	120	7,843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28	22	26	28	18	8	3	3		93	3	8	9	2	2	14	88	1
종사자수	5,156	49	165	291	142	12	5	11		732	13	30	186	5	5	197	3,312	1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구분	촉진요인	애로요인
조선 산업	• 각종 다양한 선박의 건조경험 •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형 건조설비, 풍부한 기술인력 및 공급기반 • 후판 및 선박용 엔진 등의 낮은 건조단가와 높은 품질 • 해외 선주들에 의한 품질 및 공급조건에 대한 신뢰 형성 • 경쟁국(일본)의 성장가능성 소진 예상 • 철강, 엔진 등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 세계시장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 • 안정적 공급구조 지속 예상 • 해상 구조물 등 신규 분야의 수요 증가 예상 • 설계 유연성 및 생산성 제고	• 주요 발주국의 자국건조주의 확대와 빈약한 내수물량 • 고임금에 의한 원가경쟁력 취약과 고부가가치 선용의 낮은 국산화율 • 다양하지 못한 금융환경으로 파이낸싱 조건이 불리함. • 국내 업체간의 협력이 어렵고 출혈경쟁이 발생 • 중소 조선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기능인력이 부족 • 조선업체들의 전업도가 높아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력이 낮음 • 조선기자재 산업의 발달이 조선해양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 조선시장의 불안정성
항공 우주 산업	• 훈련기 개발기술 등 일부부문에서의 기술능력 확보와 항공 우주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 다양한 라이선스 생산 경험으로 생산경험 풍부 • 다양한 부문에서의 인적자원 풍부 • 소비자, 생산자 전 부문에 걸친 마케팅 능력의 확보 • 레저용, 산업용 경비행기 수요의 증가	• 기초기술 및 핵심부품 가공, 생산 기술 취약 • 전반적인 항공기 설계, 시험평가 등의 기술 취약 • 내수시장의 부족 • 항공기 전문 설계, 시험, 평가, 인증 인력 취약 • 군수, 민수, 헬기 등 세분시장에서의 차별적 마케팅 능력 부재 • 항공기 부문에서의 글로벌 A/S시스템 미확보
기타 운송 장비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육성 •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 자전거도로의 확장 및 자전거타기 운동	• 도로환경의 문제

5.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해당업종	처리기관	관련법	신청서류
항공기, 우수비행체 기기, 소재, 지원장비, 지상훈련기 등	항공안전본부장·전문검사기관의 장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성능·품질검사신청서 •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 부품 및 원자재표 •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선박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건조검사신청서 • 건조검사관련승인도면(도면 승인을 한 대행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 검정증서, 확인서 또는 합격증서, 검사증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www.khoa.go.kr 051-400-4400	선박안전기술공단 www.kst.or.kr 032-260-22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www.kordi.re.kr 031-400-6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02-2105-2700	중소조선연구원 www.rims.re.kr 051-974-5500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www.komeri.re.kr 051-400-5000
국방기술품질원 www.dtaq.re.kr 055-751-511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www.krri.re.kr 031-460-500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www.moeri.re.kr 042-866-3114
항공산업연구소 www.airi.re.kr 02-3408-3339		

2) 학회

(사)대한조선학회 www.snak.or.kr 02-3452-2370	대한용접, 접합학회 www.kws.or.kr 042-538-6511	한국해양공학회 www.ksoe.or.kr 051-759-0656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www.kimst.or.kr 042-821-2203	(사)한국우주과학회 http://ksss.or.kr 042-865-3391	한국항공우주학회 www.ksas.or.kr 02-552-4795

3) 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www.koshipa.or.kr 02-2112-8181	한국선급협회-KR www.krs.co.kr 1566-1682	한국선주협회 www.shipowners.or.kr 02-739-1551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co.kr 02-6096-2000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 www.ksra.re.kr 02-2112-8181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www.kosic.or.kr 02-587-312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www.aerospace.or.kr 02-761-1101		

제22절 가구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각종 재료(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기제 제외)로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과 매트리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가구 및 장치물 등은 주택, 호텔, 음식점, 병원, 극장, 사무실, 교회, 학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각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과학·의료 및 실험실 장비가 장착된 가구는 제외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제외범위

- 의료용, 수의용 또는 이·미용실용 가구 제조(2719)
- 세라믹, 콘크리트 및 석재가구 제조는 (23)에 분류
- 그림, 거울, 사진용의 틀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 시계케이스 제조(27402)

2) 업종 특성

- 우리나라 가구산업 구조는 내수 중심으로 되어 있음
- 동종 업종간의 판매경쟁이 치열 함
- 디자인 모방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음
- 가구의 종류, 형태, 크기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띠고 있음
- 디자인, 성능에 따라 차별화가 가능하고 기술수준에 따라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

- 내구성 소비재로서 제품의 내용연수가 길고, 경제발전 수준과 국민처분가능소득에 따라 시장규모 형성됨
- 소규모 영세가구점의 난립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산업
- 도시형산업 업종으로 제조공정상 협력업체를 필요로 함
-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모델주기가 빠르며 소재, 금형, 사출, 도금, 접착 등 관련 산업의 기술적 파급이 큰 업종임
- 품질과 가격에서도 천차만별이며 수요자의 취향이나 기호에 크게 의존하는 감성상품, 문화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인구수, 혼인건수, 세대수가 시장수요에 큰 영향을 미침
- 가정용 가구산업은 목재산업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
- 사무용 가구산업은 양극화가 심하고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음
- 주방용 가구산업은 디자인과 품질이 경쟁요소로 부각

2. 업종 트렌드

- 과거 종합가구 업체의 대리점 중심의 판도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의 업체 등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생산체제는 분업화된 전문 생산업체로 성장하고 있음
- 경영과 판매는 전문경영조직이 맡는 형태인 공동브랜드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디자인, 패션, 환경성이 기본적인 구매 요소에 추가 되고 있음
- 자연소재와 티크 같은 고급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음
- 모더니즘 한 디자인과 공간 효율적인 가구 디자인,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음
- 주방용 가구는 환경친화형 상품으로 바뀌고 있음
- 다기능, 다용도 가구를 선호하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가구와 친환경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조립식 가구의 종류가 침대, 응접세트, 사무실용 세트로 다양화되고 디자인이 단순화

되고 있음

- 가정용 가구는 앤틱류와 모던가구가 공존하고, 디자인 중시로 중고가품이나 수입 명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사무용 가구는 사무실을 가정처럼 느끼게 하는 퓨전가구가 유행하고 있으며 중고가품 수요가 많음
- 업소용 가구는 유행과 독특한 개성 표현을 추구
-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심증가로 기업의 마케팅 대응도 다양해지고 있음
- 외형 확대 속에 원가하락으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3. 사업체 현황

〈 전국 가구제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20. 가구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104	757	869	532	713	257	270	240	12	4,717	228	281	331	281	251	555	727	83
종사자수	64,848	2,365	3,493	1,676	6,428	1,339	850	2,040	74	29,972	589	1,786	3,594	1,470	799	4,473	3,692	208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분업화된 생산체제로의 변화 추세 •소비자 중심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 •실용성, 예술성 추구의 고 부가가치 시장 등장 •미래형 패션 산업으로 목재업에 비하여 6배 이상의 고부가가치형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산업임 •패션감각과 수공기술을 요하므로 손재주가 섬세하고 특출한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적합한 산업 업종임 •유행의 변화에 따른 신시장 창출 가능	•규모의 영세성 •노동과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방식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흡 •경쟁의 치열 •제품개발, 디자인 혁신, 경쟁력 있는 브랜드개발의 미흡 •저가의 동남아 제품과 고가의 이탈리아 제품 공세 •혼인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창업자 체크포인트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
- 지식과 기술을 핵심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의 형성
- 목표시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생산 및 유통시스템 형성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gsbc.or.kr
031-289-6000

가구산업개발원
www.furniture.or.kr
031-828-7107

2) 학회

한국가구학회
www.kofuso.or.kr
042-821-5758

한국디자인학회
www.design-science.or.kr
031-781-502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www.kiid.or.kr
02-564-2598

3) 협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www.kofurn.or.kr
02-2215-8838

제23절 기타 제품 제조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특정 산업영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귀금속제품, 악기류, 운동·경기용구 및 오락용품, 모조장신 및 장식품, 흥행 및 유희용품, 사무용품, 회화용품 및 기타 잡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피아노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전자악기 제조업	•국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교사용 모형 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제외범위

- 합성귀석 제조(201)
- 요업제품 제조(231 또는 232)
- 고무 또는 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221 또는 222)
- 금속의 주조제품 제조(243)

2) 업종 특징

(1) 게임기 및 장난감 제조

- 아케이드 게임은 개발사, 유통사, 게임사업자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시장구조를 가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게임을 개발사에 공급하고 개발사는 게임기를 제작하며 유통사는 공급받은 게임기를 게임장, 놀이공원 등에 공급)
- 게임산업은 설비 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전통 제조업에 비해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음(게임산업은 PC, 서버 등 유형자산 보다 게임의 오락성, 캐릭터의 대중성 등 무형의 자산이 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
-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인적자원 활용도가 높고 특히 노하우 및 기술이 축적된 전문 개발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 스포츠용품 제조업은 여가, 오락성, 감동, 건강에 대한 관심 등에 영향을 받음

(3) 귀금속 산업은 원자재 시세와 경기변동에 민감함

2. 업종 트렌드

- 국내 게임 시장은 온라인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국내 게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외국게임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공략이 필수적임
- M&A에 따른 게임업계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장난감 고객들은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상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용 장난감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줌
-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비싼 값을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신기술과 혁신을 가미해 만든 제품을 선호함
-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귀금속 산업은 예물시장이 축소되고 가격경쟁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기타제품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205	1,363	179	80	33	62	14	5		273	17	18	13	95	16	15	21	1
종사자수	8,507	5,262	346	209	197	84	29	6		1,748	23	38	53	282	26	174	27	3

[332. 약기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67	32	6	5	45	3	7	1	1	113	7	10	9	10	2	9	6	1
종사자수	2,327	113	8	13	865	9	20	1	4	1,015	16	60	69	15	4	69	43	3

[33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84	73	142	43	116	9	11	6	4	342	13	14	7	7	14	20	56	7
종사자수	6,810	567	1,028	219	850	46	40	156	17	2,617	68	427	57	16	35	130	512	25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59	146	62	5	49	7	10	3	1	224	7	8	6	10	3	6	10	2
종사자수	3,660	821	549	17	330	12	31	9	6	1,484	29	37	83	23	44	80	102	3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게임은 영화, 음악, 광고 등 다 콘텐츠와 연계, 혹은 융합화 되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함 •우리나라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생태계’의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모바일콘텐츠 및 솔루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신흥강국으로 부상 중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따른 게임업체의 수혜 폭 증대	•불법 복제로 인한 시장 수익 구조 악화 •온라인게임 시장의 증대에 따른 오프라인게임시장 위축 •버그에 대한 실시간 A/S 취약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사행성 문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통한 상업적 게임의 출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2002년 3월 “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분류 강화” 대책이 발표)



창업자 체크포인트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
- 학습활동을 돕는 장난감으로 필수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마케팅전략이 필요
- 구매자 수준별로 세분화하고 목표시장을 명확히 하여 그에 맞는 생산 및 유통시스템 형성

5. 인·허가 사항

1)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사행기구 제조업	경찰청장 (15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	회전판 돌리기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40대를 초과하여 시행기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사행행위 영업허가신청서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및 설비명세서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 형상, 구조, 재질, 성능, 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군용장구 제조업	국 방 부 장 관 (40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제3조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군용장구제조업허가신청서 •시설, 도면 또는 시설증명서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

2) 승인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	관계중앙행정기관(장관)(10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성을 심사하고 승인을 결정	장은 해당 위해 여부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신청서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에 관한 서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의 현황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1566-1114

(사)한국귀금속업중앙회

www.jewelkorea.org

02-776-9989

귀금속경제신문

www.diamonds.co.kr

02-743-6101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031-780-2114

2) 학회

한국귀금속보석학회

www.kagj.org/

02-765-5866

한국광물학회

www.mskorea.or.kr

055-772-0985

3) 협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www.kgta.co.kr

031-788-7104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www.gak.or.kr

02-742-3744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

www.kgda.or.kr

02-3153-2781

한국보석협회

www.kojema.or.kr

02-744-1266

한국옥외광고협회

www.koaa.or.kr

02-889-8855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www.boardgame.or.kr

070-8611-9803

차세대융합콘텐츠평산협회

www.game.or.kr

02-558-5180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www.gamek.or.kr

02-3477-2785

제2장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제1절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하수 및 산업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 활동과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 활동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축산분뇨 처리업		

2) 업종 특성

- 대중위생 보호, 공공급수 보호, 수중자원 보호, 공공수역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분야임
- 2013년 말 기준 국내 528개 하수처리 시설 중 54.1%인 286개가 민간에서 위탁 운영
-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중심의 사업 영역으로, 지방 공기업 등의 영역이 확대되면 민간 부문이 축소되는 특징이 있음
- 2012년 11월 기준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폐수 처리업은 전국 79개로, 지역별로는 인천 34, 경기12, 부산11, 대구경북6, 대전충청6, 경남울산6, 전남북4개로 구성되어 있음
- 배출허용 기준, 시설 기준, 자가측정 기준, 운영일지 등 관리 기준, 기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단순한 운반 뿐 아니라 처리기술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하는 장치산업에 속함
- 시설·장비 등 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업종임

2. 업종 트렌드

-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으나 육상처리 시설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015년 말까지 유예함(분뇨 및 분뇨 오니는 2013년부터 금지, 산업폐수 및 산업폐수 오니는 2015년까지 연기, 준설토·수산물가공 잔재·동식물 가공잔재는 해양투기 가능)
- 공공의 환경 보호를 위해 관리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오염 발생 기업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7011. 하수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18	82	20	13	16	4	4	14	2	125	30	27	19	24	46	38	45	9
종사자수	8,383	1,137	500	402	335	131	115	141	44	1,946	367	495	289	315	530	571	950	115

[37012. 폐수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44	11	20	12	30	3	5	5	1	68	7	14	10	10	13	16	16	3
종사자수	2,801	63	194	220	445	14	91	40	7	569	78	134	161	104	235	322	118	6

[37021. 분뇨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647	55	40	47	28	9	9	14	2	133	56	34	33	38	44	52	45	8
종사 자수	77	941	310	162	119	94	65	58	3	640	224	103	120	131	142	185	196	37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77	1	1		1					10	10	3	7	13	6	11	14	
종사 자수	525	14	4		3					34	100	16	88	80	28	87	71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민간 참여 확대 •국제적인 해양투기 금지 협약에 따라 육상처리 및 중간처리 기술개발 유인 증대 •환경의 중요성 인식 증대로 기술개발 유인 증대	•관리기준의 엄격함 •높은 시설비 •투자 대비 산출 시점의 장기화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장 축소 가능성 및 시장 분야의 변화 가능성 존재 •시설·장비 및 기술적 능력이 혼합되어야 허가 가능



창업자 체크포인트

- 원천기술과 핵심인력 확보
- 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 확보
- 기술개발 및 투자능력 확보
- 해양투기 등 업종 환경 변화 관찰

5. 인·허가 사항

1)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시장·군수·구청장(10일)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자격증명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시장·군수·구청장(7일)	하수도법 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자격증명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시장·군수·구청장(10일)	하수도법 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자격증명 1부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서류(처리공법 설명서, 설계도, 처리용량 산출서, 처리효율 산출서,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2)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 관리업)	시장·군수·구청장(7일 : 가축분뇨 처리업의 경우 4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기술능력 보유 현황 1부
분뇨수집·운반업	시장·군수·구청장(7일)	하수도법 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 분뇨수집·운반허가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환경부 www.me.go.kr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국립환경인력개발원 www.ehrd.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2 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www.kosee.org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www.kossge.or.kr	한국환경통계정보학회 www.kesi2008.or.kr
한국환경사회학회 www.ecosociety.net	한국물환경학회 www.kswe.org	

3) 협회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www.eksma.or.kr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www.kodsta.or.kr	한국산업수처리협회 www.kwta.or.kr
경기도환경산업협회 www.geia.or.kr		

제2절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 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금속원료 재생업	•비금속원료 재생업

2) 업종 특성

- 대부분 허가업종임
-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의 수익은 폐기물 처리 수입과 순환골재 판매 수입 등 두 가지로 구성됨
-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 약 61%, 산업폐기물 약 88%로서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어 “폐기물은 곧 자원”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함
- 허가 시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하천법/문화재보호법/농지법/산림기본법/수산업법/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계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자연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하수법/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 등이 있음
- 산업 경기 및 국내총생산 증감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업종 트렌드

- 단순히 부과금과 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 정도를 높이기 위한 자원 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흘날림이나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되며, 최종처리업은 공공재적 특성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고수익 달성이 가능함. 중간처리업의 경우 최종처리업 대비 법적, 초기 투자비용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심한 편이며, 최근 정부의 재활용 장려 정책에 따라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임
- 정부의 규제에 따라 지정폐기물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3. 사업체 현황

〈 전국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01	101	81	45	67	25	18	35	4	309	56	54	47	35	44	72	103	5
종사자수	18,163	2,251	2,220	491	909	746	555	380	18	4,886	528	524	778	972	464	702	1,678	61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43	19	24	13	24	15	13	11	1	64	19	24	9	17	21	27	41	1
종사자수	2,134	323	162	70	143	95	134	35	7	391	73	99	58	57	167	94	224	2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38	49	66	23	42	5	21	7	2	75	20	12	24	14	23	26	27	2
종사 자수	2,544	240	307	72	279	18	96	44	29	472	135	31	159	72	210	118	251	11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35	29	16	7	23	11	13	16	2	93	29	28	27	16	28	36	52	9
종사 자수	9,429	602	380	205	716	199	158	253	39	2,471	524	449	570	285	562	817	969	230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49	8	10	9	5	4	5	11	1	28	5	13	8	8	8	13	12	1
종사 자수	2,044	88	155	51	89	8	66	176	9	444	42	188	81	150	220	192	80	5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578	30	35	19	15	10	13	13	2	109	43	34	39	47	42	64	54	9
종사 자수	7,709	145	293	113	284	121	56	126	54	2,135	463	528	729	594	624	625	690	129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															1		
종사 자수	256															256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022	19	42	42	65	33	9	16	3	245	38	55	66	57	69	113	136	14
종사 자수	8,151	97	325	309	707	179	96	132	16	2,036	190	387	762	339	727	815	962	72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888	29	19	39	48	22	12	22	3	286	12	50	49	33	28	138	95	3
종사 자수	6,422	263	136	258	403	162	144	213	41	2,088	47	380	373	190	199	940	579	6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유리 •성장률이 높지 않지만 매년 2~3% 지속 성장 예상	•정부의 폐기물 발생 및 최종처리 억제정책이 시장 축소 요인으로 작용 •경쟁 심화로 중간처리업의 이익률 저하 •매립량 감소로 최종 처리업의 고수익 달성 어려움 •높은 투자 금액



창업자 체크포인트

- 원천기술과 핵심인력 확보
- 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 확보
- 기술개발 및 투자능력 확보
- 정부 정책 관찰

5. 인·허가 사항

1)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폐기물 처리업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10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요건 상이함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생략) 1부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건설폐기물 처리업	시·도지사(10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허용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환경부 www.me.go.kr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국립환경인력개발원 www.ehrd.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2) 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www.kosee.org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www.kswm.or.kr	한국환경통계정보학회 www.kesi2008.or.kr
한국환경사회학회 www.ecosociety.net	한국물환경학회 www.kswe.org	한국방사선�폐기물학회 www.krws.or.kr
유기성자원학회 www.korra.or.kr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www.korec.org	

3) 협회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www.cwa.or.kr	한국폐기물협회 www.kwaste.or.kr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www.kowra.or.kr
경기도환경산업협회 www.geia.or.kr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www.kofra.org	한국건설자원협회 www.koras.org

제3절 환경 정화 및 복원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오염된 건물, 지역, 토양, 지하수, 지표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 활동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2) 업종 특성

- 국가의 예산에 따라 시장이 결정되는 정부 주도형 사업
- 기술집약적 산업
-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정도 낮음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위되는 사업

2. 업종 트렌드

- 2013년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 행동계획” 발표에 따라 중국시장 증대 예상
- 중국 대기 및 토양 정화시장은 주로 프로젝트 형태로 발주가 이루어지며, 입찰에 의해 수주(한국기업은 주로 현지 기업과의 협업 형태로 진출)
- 국토의 협소함과 토지 이용 및 활용가치 증가로 인해 성장 잠재력 높음
-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화사업을 통해 기술능력이 향상되고 실용화 되는 추세임

3. 사업체 현황

〈 전국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0	8	5	1			1	3		9	2	3	2	1	3		2	
종사자수	465	88	71	2			7	22		180	27	14	27	5	18		4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5	5	4		1	1	1	1		9	1		2	1	10	3	4	2
종사자수	530	51	79		1	20	5	34		121	3		25	13	72	31	56	1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환경에 대한 중요성 증대 •시장의 급속한 성장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부사업 지속	•대부분 운반비 부담이 높은 자재 •시멘트와 골재 사용 기업의 경우 건설경기와 상반되는 단가 변동(건설경기가 호황이면 단가 상승) •기술력, 자본력 등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창업자 체크포인트

- 국가 차원의 사업 내용 분석
- 등록 요건 확인
- 원천기술과 핵심인력 확보
- 기술개발 및 투자능력 확보

5. 인·허가 사항

1)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토양정화업	지방환경청장 (10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1부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명세와 증빙서류 1부 •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지하수정화업	시장·군수 (10일)	지하수법 제29조의2,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 지하수정화업등록신청서 1부 •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환경부 www.me.go.kr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국립환경인력개발원 www.ehrd.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2) 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www.kosee.org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www.koserrt.or.kr	한국환경통계정보학회 www.kesi2008.or.kr
한국환경사회학회 www.ecosociety.net	한국물환경학회 www.kswe.org	한국환경생태학회 www.enveco.org
유기성자원학회 www.korra.or.kr		

3) 협회

함안환경보전협회 www.hamane.org	환경보전협회 www.epa.or.kr	부산환경보전협회 www.bepa.or.kr
경기도환경산업협회 www.geia.or.kr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www.kofra.org	한국건설자원협회 www.koras.org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www.kacn.org	인천환경보전협회 www.inepa.or.kr	경기도환경보전협회 www.ggepa.or.kr
한국산업수처리협회 www.kwta.or.kr		

제3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1절 출판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된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 있음

- | | | |
|-----------------|-----------------|---------------|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 •만화 출판업 | •기타 서적 출판업 |
| •신문 발행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

2) 업종 특성

- 스마트기기 기반의 온라인 서적 및 콘텐츠 개발 등 영역이 계속 확대되는 산업
-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음
- 전국 출판사의 8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음
- 출판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25%를 차지함
- 2013년 전체 출판사의 94%(39,620개)가 실제 책을 발간하지 않음
- 2013년 신간도서 중 번역서적 비율이 25.7%를 차지함

2. 업종 트렌드

- 종이책 시장은 정체, 전자책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
- 스마트 기기 이용 증대로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출판산업 수출액은 일부 종이책과 함께 국내 베스트셀러의 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등 지역 다변화 예상
- 대형 업체와 온라인 유통업 매출 감소 추이
- 베스트셀러 상위권 판매량 감소 추세이며, 양극화는 지속
- 가구당 월 평균 서적 구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출판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837	610	12	29	10	4	12			125	2	4	3	4	3	11	4	4
종사자수	11,921	9,997	28	124	46	14	44			1,520	12	19	7	14	37	41	14	4

[58112. 만화 출판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8	18		1		1				8								
종사자수	297	252		1		2				42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407	1,702	38	40	27	37	38	8	2	328	37	20	18	27	9	30	29	17
종사 자수	12,072	8,286	84	127	156	86	96	27	2	2,596	98	56	56	104	35	85	114	64

[58121. 신문 발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60	133	9	16	19	25	11	9	2	66	11	14	25	27	19	35	32	7
종사 자수	15,026	9,133	519	583	373	546	491	188	6	784	275	349	84	509	50	399	524	213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417	898	37	23	25	22	14	4		141	18	21	33	25	49	41	60	6
종사 자수	10,135	7,854	154	132	147	108	70	16		705	62	80	131	106	185	137	220	28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94	94	22	11	10	23	6	7	2	68	17	13	23	20	15	31	27	5
종사 자수	4,607	898	196	279	117	216	154	120	9	968	206	179	198	232	149	274	324	88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19	103	12	13	5	8	5			28	8	3	2	8	3	8	11	2
종사 자수	1,126	485	55	38	11	24	273			126	21	8	2	29	8	13	27	6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2014년 도서정가제 도입 •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소비자에게는 탐색비용 감소, 공급자에게는 진입비용 감소 • 서적의 문화적 가치로서의 인식 증대	• 스마트 기기 사용 증대로 서적 구입자 감소 •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등 산업 변화 진행 중 • 신간도서 발행 감소 • 전반적인 소비 감소 • 재고처리 문제



창업자 체크포인트

- 출판업 신고 요건 확인
- 서적의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확인
- 서점의 재고처리 방법 확인
- 도서정가제 내용 확인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출판사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3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출판사의 명칭,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 출판등록신청서
인쇄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인쇄사의 명칭,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 인쇄사 신고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한국문화예술회원
www.arko.or.kr

문화포털
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센터
www.kcisa.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www.tkpf.or.kr

2) 학회

한국출판학회
www.kpss.or.kr

3) 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www.kfoba.or.kr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www.kstpa.or.kr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www.kpmac.net

한국학술출판협회
www.kspas.or.kr

한국전자출판협회
www.kepa.or.kr

한국만화출판협회
www.koreacpa.or.kr

한국출판협동조합
www.koreabook.or.kr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ebcoop.archiveindustries.com

제2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는 산업 활동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을 녹음하거나 출판하는 산업 활동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2) 업종 특성

- 모바일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핵심 분야로 부상
- 한국영화 주 관객이 20~30대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확대
- 영화의 1인 관람객 증가
- 소비의 후 행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산업
- 집적성향이 강하고 인력조달 및 네트워킹 관련 요인이 중요
- 상품개발 및 기능구조가 매우 복잡함
- 상품제작 단계마다 독특한 인력, 장비, 시설, 행정 및 재정수요가 발생
-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
- 사람이 중요하며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성립됨
- 기업 간 네트워크보다 개인 간 네트워크가 강함

2. 업종 트렌드

- 지상파 방송에 이어 케이블 방송 드라마 제작에도 CG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
-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울트라 HD콘텐츠의 제작 시도가 증가할 전망
- 이동통신사와 콘텐츠기업의 협력사례가 증가하는 등 콘텐츠기업의 이종산업 간 융·복합화 증가 예상
- 모바일 방송시장을 두고 순수 플랫폼 사업자인 통신 3사 계열과 콘텐츠 계열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스마트 콘텐츠 중심의 수요 증가로 성장 지속 전망
-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따른 투자가 용이해지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17	32	5	5	1	6	5	2		47	3	1	2	8	2	5	3	2
종사자수	2,703	2,155	21	16	1	38	8	3		383	36	1	2	23	3	8	3	2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42	224	15	1	3	26	3			51	2	1	5	2	3	1	4	1
종사자수	4,103	2,713	224	5	22	167	15			766	97	1	35	10	5	2	18	3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875	642	36	18	9	14	12	8		47	11	12	10	17	6	6	19	8
종사 자수	4,839	3,849	170	137	25	40	38	33		179	62	47	48	69	14	27	82	19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645	562	9	2	2	4	6	1		32	3	3	3	1	3	4	5	5
종사 자수	6,716	6,201	39	24	12	22	41	5		268	16	13	4	8	15	11	15	22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46	102	8	4		2	2			18	3	1	1	1	3	1	2	1
종사 자수	1,303	1,087	13	7		58	2			96	20	1	3	1	5	4	5	1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33	109	3	5	1	6	2			4				1		1	1	
종사 자수	835	759	7	17	9	20	5			13				2		1	2	

[59141. 영화관 운영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71	77	30	21	18	14	14	6	1	80	12	10	15	15	8	18	26	6
종사 자수	12,129	3,639	982	715	742	511	382	132	6	2,640	291	175	259	377	217	422	539	100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817	218	66	50	38	43	21	18		173	20	22	17	24	14	43	35	15
종사 자수	1,641	483	149	112	63	66	37	46		341	33	36	29	49	21	76	69	31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21	264	6	3	3	4	2			33		1			3	2		
종사 자수	1,785	1,562	15	4	9	7	2			175		2			7	2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44	260	16	10	4	6	3	4		34	2	2		1		2		
종사 자수	970	814	18	18	7	11	4	4		85	2	2		3		2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영화 콘텐츠 소비패러다임 변화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콘텐츠 수요 확대 •웹툰 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원천 소스 활용 가능성 증대	•경기 및 소비 수준과 밀접한 관계 •플랫폼, 네트워크, 고성능 기기 등 주변 상황의 영향력 높음 •3D, 4D 등 기술력 확보 필요 •투자 선순환 구조의 미흡



창업자 체크포인트

- 신고 요건 확인
- 활용 가능한 플랫폼 확인
- Hard Ware의 변화 가능성 검토
- 관객 기호변화 관찰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신고사항 외에는 특정 요건 없음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영화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신고사항 외에는 특정 요건 없음	•영화업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영상 독립 제작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5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고서류에 다음의 문서 포함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수출에 대한 실적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요약서	•방송영상 독립제작 신고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실 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 제 작 및 수출계획 요약서
온라인 음악서 비스 제공업	시장·군수·구 청장(3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고사항 외에는 특정 요건 없음(다수인을 대 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 는 경우는 신고사항 아님)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음반·음악영 상물 제작업, 배급업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3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고사항 외에는 특정 요건 없음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문화포털 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센터 www.kcisa.kr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www.kbatv.org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www.tkpf.or.kr		

2) 학회

한국방송학회 www.kabs.or.kr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www.iibc.kr	한국방송공학회 www.kosbe.or.kr
한국언론정보학회 www.kacis.or.kr	한국언론학회 www.comm.or.kr	

3) 협회

한국영사예술인협회 www.cinedriver.or.kr	한국영화인협회 www.koreamovie.or.kr	한국영화배우협회 www.kfaa.kr
한국디지털영상작가협회 http://www.kdva.or.kr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www.koifa.org	한국독립영화협회 http://www.kifv.org
한국영사기사협회 www.cinedriver.or.kr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한국독립PD협회 www.indiepd.org	한국언론인협회 www.akj21.org	한국언론사협회 www.kpa.so
한국방송협회 www.kba.or.kr	한국케이블방송협회 www.kcta.or.kr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제3절 방송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는 산업 활동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을 녹음하거나 출판하는 산업 활동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 업종 특성

- 소프트 자본주의에서의 기간산업 역할
- 한가지의 영상 제작물이 서로 다른 미디어에 이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구효과를 가지고 있음
- 공공재와 정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스마트 기기 이용 확대에 따른 소비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은 일부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도 전반적으로 흑자구조 실현이 용이하지 않음
- 매출 향상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역량 지속 여부가 실적편차 요인으로 작용
- 소비에서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공공성이 있음
- 광고라는 거래 방식을 통해 시장 형성
-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됨
-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끼침

2. 업종 트렌드

-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등 플랫폼별로 매체 증가와 고화질 콘텐츠 소비 증가로 교양·오락물, 드라마 등의 기획 및 제작 증가 예상
- 올림픽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이 광고수익 증대 견인과 함께 매출 성장 전망
-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자본력이 열악한 케이블사업자는 실적악화 예상
- IPTV, 스마트기기 등 콘텐츠 소비에 있어 디바이스 및 플랫폼의 다양화로 모바일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 이용증대, 실시간 콘텐츠 이용 중심의 중장년층에 대한 소비변화 유도, UHD 방송콘텐츠 수요 등이 향후 방송콘텐츠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
- 방송 콘텐츠 수출액은 내수시장의 다매체화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외수출 진출 시도 확대 전망
- 통신과 방송의 융합 증대

3. 사업체 현황

〈 전국 방송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60100. 라디오 방송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69	11	7	6	2	7	3	4	1	4	5	2	1	4	2	4	3	3
종사자수	1,899	948	121	107	87	109	103	67	5	49	78	23	6	71	28	36	31	30

[60210. 지상파 방송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95	16	3	3	3	3	2	3		10	15	6	5	5	6	6	6	3
종사자수	11,474	6,543	490	406	22	421	255	248		511	569	389	34	302	242	235	533	274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73	122	6	5	2	2	7	1		16	4	1	2	1	2		2	
종사 자수	5729	5249	31	56	2	7	55	7		282	16	4	3	6	7		4	

[60222. 유선방송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16	85	14	13	17	8	4	3		32	33	37	18	22	53	40	34	3
종사 자수	7,827	3,178	305	328	359	182	147	170		646	330	203	223	264	325	452	510	205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52	11			3	4	2	2		7	3	3	1	1	5	5	5	
종사 자수	814	582			44	13	40	37		17	12	6	3	4	11	36	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제조업 대비 높은 부가가치 창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수단 존재 •소프트 자본주의 확대 •낮은 한계비용 •유선방송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해외 진출 증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높은 진입 장벽 •공공재 성격이 강함 •케이블 TV 경쟁 심화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약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인·허가 사항 확인
- 플랫폼 변화 추이 관찰
- 해외 진출 동향 분석
- 전국 사업자 분포 확인

5. 인·허가 사항

1)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통신위원회(30일)	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데이터 방송을 하기 위한 경우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함)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 확보계획서 포함) 4부
음악유선방송사업	방송통신위원회(30일)	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데이터 방송을 하기 위한 경우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함)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신청서 •법인의 정관 1부 •법인설립 계획서 1부 •신청인 및 편성 책임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개요서 및 시설 설치계획서 1부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국립전파연구원
http://rra.go.kr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www.kbatv.org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중앙전파관리소
www.crho.go.kr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future.na.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2) 학회

한국방송학회
www.kabs.or.kr

한국언론정보학회
www.kacis.or.kr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www.iibc.kr

한국언론학회
www.comm.or.kr

한국방송공학회
www.kosbe.or.kr

3) 협회

한국방송협회
www.kba.or.kr

한국독립PD협회
www.indiepd.org

한국케이블방송협회
www.kcta.or.kr

한국언론인협회
www.akj21.org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한국언론사협회
www.kpa.so

제4절 통신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

•우편업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2) 업종 특성

- 2000년대 디지털 컨버전스의 흐름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경쟁이 심화
- 이동통신사들의 부가서비스 경쟁이 심화
- 부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매출 중 정보 이용료 비중 증가
- 휴대폰 이용자의 50%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시장의 포화상태 진입
- 무선인터넷 시장의 포화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기가 인터넷 시장으로 변화 중

2. 업종 트렌드

- LTE 가입자 증가와 Data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장 예상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
- LTE 대규모 투자 종료와 CAPEX 하향 안정화에 따른 이익이 상승
- 유선에서는 기가 인터넷의 상용화를 계기로 정체되어있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부활
- 망 중립성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선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 이동전화시장은 보급률 포화로 성장 둔화 예상

3. 사업체 현황

〈 전국 통신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61100. 우편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481	443	207	124	100	96	103	60	14	439	198	166	230	267	307	338	340	49
종사자수	51,133	3,546	3,337	2,663	1,744	1,641	1,374	1,009	122	9,274	2,546	1,826	2,598	2,786	3,194	3,324	3,633	560

[61210. 유선통신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061	242	87	44	29	33	37	18	1	162	55	40	46	44	66	67	73	17
종사자수	30,531	10,028	2,416	1,152	852	911	1,011	373	47	5,978	892	826	966	1,110	884	1,293	1,286	506

[61220. 무선통신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51	94	10	12	9	9	8	3	1	31	16	7	7	6	10	11	12	5
종사자수	12,219	8,594	338	336	162	287	317	27	7	612	789	179	88	36	173	124	120	30

[61230. 위성통신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6	2	2							1							1	
종사자수	96	51	12							29							4	

[61291. 통신 재판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07	96	19	7	9	8	5	3		33	6	2	3	5	2	8	6	
종사 자수	2,500	1,667	81	60	64	79	15	7		341	27	5	10	39	11	61	86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66	57	10	5	6	4	9			24	6	1	6	7	14	8	4	5
종사 자수	3,546	2,481	77	58	120	25	57			295	31	7	62	69	108	61	18	77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 요금제 업그레이드 • LTE 음성·데이터 무제한 가입자 증가로 매출 성장 지속 가능성 • 통신사업자 전체 영업이익 증대 예상 • 정부의 통신 육성 정책	• 단통법 폐지·개선 요구 증대 • 요금인하 압력 증대 • 가입자당 매출액 성장 저하 우려 증대 • 새로운 요금 경쟁 심화 가능성



창업자 체크포인트

- 인·허가 사항 확인
- 기가 인터넷 확대 동향 분석
- 단통법 변화 가능성 분석
- 통신사 영업전략 관찰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부가통신사업	관할 전파관리소장 (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업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전송망사업	방송통신위원회 (30일)	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12조, 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등록사항 외 특정 요건 없음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 •법인의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설설치계획서 1부
별정통신사업	관할 전파관리소장 (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6조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사업계획서 등	•별정통신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별정통신 사업계획서 •법인의 정관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보증보험 증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사업	시·도지사 (14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등록사항 외 특정 요건 없음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 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제21조 2호에 따른 확인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future.na.go.kr

국립전파연구원
http://rra.go.kr

중앙전파관리소
www.crho.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부산정보산업진흥원
www.busanit.or.kr

2) 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www.katp.or.kr

한국정보통신학회
www.kiice.org

한국통신학회
www.kics.or.kr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www.kiict.or.kr

3) 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www.kica.or.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www.ktoa.or.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ww.kait.or.kr

정보통신인증센터
www.bica.or.kr

제5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 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 •컴퓨터시설 관리업 |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2) 업종 특성

- 대기업 계열 SI사는 영업과 PM을 담당하고,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는 하도급 구조임
- 원재료 투입 없이 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하도급과 달리 1, 2차 수급사업자의 개념이 없음
- 하도급 구조는 고정적 구조가 아닌 유동적 구조임
- 건설위탁과 달리 하도급 거래 단계의 제한이 없어 중소 SI사는 대형 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참여할 수도 있음
-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2. 업종 트렌드

- 개별 개발보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기획에

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SI사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 대형 SI사는 대부분 대기업으로부터 분사한 기업이며, 모기업의 지원 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형태
- 모기업의 지원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서비스 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토대로 차세대 제3의 플랫폼(3rd Platform)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3. 사업체 현황

〈 전국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6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761	1,857	233	172	101	112	118	24		707	50	58	49	53	40	71	96	20
종사자수	28,310	17,084	1,457	784	452	467	807	160		5,044	160	204	387	222	272	275	395	140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247	768	62	26	19	21	46	18		208	7	10	10	6	7	12	23	4
종사자수	45,809	32,371	643	165	192	198	901	177		10,290	39	74	143	67	17	45	474	13

[662022. 컴퓨터 관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15	132	21	18	10	18	14	4		42	8	4	8	5	3	10	16	2
종사자수	4,438	2,291	123	85	195	150	175	36		789	36	15	66	64	13	152	238	10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56	200	31	30	21	15	15	8		64	6	6	6	6	5	8	27	8
종사자수	4,708	2,668	132	248	164	73	160	39		912	14	10	25	20	9	13	182	3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IT의 소비재화 확산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 가속화 •빅데이터 솔루션 수요 확대 •보안 인식 증대 •소셜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IT 영역 전반으로 확대	•하도급 구조로 인한 수익률 하락 •대기업 분사 SI사의 과점 형태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IT 투자 축소 •SW 특허 중요성 증대 및 SW업체들의 저작권 강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IT 트렌드 분석
- 정부 정책의 방향 관찰
- PMO(전문관리조직) 변화 내용 관찰
- 특허 및 저작권 동향 분석

5. 인·허가 사항

1)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행정자치부장관(30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정보시스템감리법인 등록신청서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future.na.go.kr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SW융합기술지원센터 www.swct.or.kr	소프트웨어공학센터 www.sw-eng.kr
부산정보산업진흥원 www.busanit.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공개SW포털 www.oss.kr

2) 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www.katp.or.kr	한국정보통신학회 www.kiice.org	한국IT서비스학회 www.itservice.or.kr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www.kiict.or.kr	SI기법학회 www.si-tech.kr	한국융합소프트웨어학회 www.e-kcss.or.kr
인하대학교소프트웨어공학연구실 selab.inha.ac.kr		

3) 협회

대전IT진흥협회 www.dita.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ww.kait.or.kr
정보통신인증센터 www.bica.or.kr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blog.naver.com/kasom200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www.kossa.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 보호협회 www.kosupa.or.kr	

제6절 정보서비스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함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업종 특성

- SI 시장, IT컨설팅 시장, IT 아웃소싱 시장 등으로 구성됨
-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ERP, 생산관리시스템, 문서중앙화 사업 등이 이슈가 됨
- 금융업종의 경우 e뱅킹 고도화, 스마트 브랜치,페이퍼리스 등이 주요 이슈가 됨
-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IT 투자, MVNO 등이 주요 이슈가 됨

2. 업종 트렌드

- SI프로젝트 수요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을 통한 효율화·고도화 및 IT융합서비스 수요로 확대되고 있음
 - 시스템의 통합 구축 운영, 관리 등 IT 서비스 영역이 웹·모바일 기반 업무환경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시스템의 운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고 있음
 - IT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신비즈니스 서비스 발굴 증가에 따라 IT융합 수요가 확산되고 있음

-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에 따른 신사업 개발과 중견, 중소기업체의 공공시장 진입 전략이 본격화됨
-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공공시장을 대신할 새로운 신사업 창출에 주력하거나 해외시장 진출 전략 구사가 일반화되고 있음
- 중견, 중소 IT 서비스업체들은 공공시장 선점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수급 특화 분야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정보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63111. 자료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201	99	12	3	2	9	10	2	29	29	3	9	4	6	2	3	6	2
종사자수	3,847	2,619	51	18	12	55	112	18	704	704	29	57	64	35	13	12	25	23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28	78	5	5	2	4	1			25	1			1		1	4	1
종사자수	2,796	2,209	16	81	54	14	4			396	4			1		6	9	2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060	642	20	22	15	26	28	7		117	20	13	16	14	19	45	34	21
종사자수	18,132	11,182	94	157	76	156	199	15		4,465	450	89	79	69	42	113	92	848

[663910. 뉴스 제공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80	40	11	7	4	5	2	4		41	5	3	15	8	10	17	4	4
종사 자수	1,485	966	34	42	11	17	16	15		146	20	38	32	34	26	48	19	21

[6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791	577	34	15	10	11	14	4		93	3	4	4	8	2	7	5	
종사 자수	12,868	11,000	289	147	55	49	111	9		989	60	30	22	34	4	44	25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8	8			1	3				1		1	1	1		1		1
종사 자수	405	232			1	5				2		1	1	158		4		1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공공기관 발주 IT 아웃소싱 사업에 대기업 참여 금지 (2015년부터) • 국내 및 세계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관련 서비스 투자 증대 • IT융합 서비스 분야 확대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심 스마트워크 도입 확대	•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 수행 능력 미흡 • 기업들의 IT투자 감소 • 유지보수 중심의 IT 투자가 성장 폭을 제한할 가능성 • SI 신규 수요 감소 • 통신산업 성장 여건 둔화



창업자 체크포인트

- 중견 IT 서비스 기업 움직임 관찰
- 공공기관 발주 내역 분석
- IT 서비스 영역 변화 추이 관찰
- SI영역 변화 추이 관찰

5.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공개SW포털
www.oss.kr

부산정보산업진흥원
www.busanit.or.kr

SW융합기술지원센터
www.swct.or.kr

소프트웨어공학센터
www.sw-eng.kr

2) 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www.katp.or.kr

한국정보통신학회
www.kiice.org

한국IT서비스학회
www.itservice.or.kr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www.kiict.or.kr

SI기법학회
www.si-tech.kr

한국융합소프트웨어학회
www.e-kcss.or.kr

인하대학교소프트웨어공학연구실
selab.inha.ac.kr

3) 협회

대전IT진흥협회
www.dita.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ww.kait.or.kr

정보통신인증센터
www.bica.or.kr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blog.naver.com/kasom200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www.kossa.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
보호협회 www.kosupa.or.kr

제4장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1절 연구개발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연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2) 업종 특성

- 연구개발 주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촉진·지원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속함
- 선진국은 R&D 아웃소싱을 개발형 혁신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들이 폐쇄형 연구개발을 선호하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개발 계약에는 기술창출형, 기술양도형, 기술담보형, 기술대여형, 노무제공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의 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연구개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과 위임의 혼재적 성격을 가짐
- 고객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개발 서비스는 외부로부터 구매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전략임

2. 업종 트렌드

- “아이디어 발굴 → 연구개발 → 사업화” 까지의 기간단축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해지면서 더 이상 내부 연구개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거래관행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하는 추세임

3. 사업체 현황

〈 전국 연구개발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85	132	21	8	14	16	62	15	2	146	31	21	12	26	23	25	15	16
종사자수	15,930	1,690	75	69	321	118	8,708	121	4	2,832	266	251	33	558	490	152	136	106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76	38	8	8	3	9	7	1		70	39	31	25	33	23	35	36	10
종사자수	11,761	1,082	717	63	165	31	162	21		4,831	781	606	531	751	446	643	658	292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61	251	22	20	8	10	42	1		145	16	11	7	8	7	6	4	3
종사자수	10,443	4,853	89	179	235	29	1,058	6		3,302	122	288	35	15	81	88	16	47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38	40	12	5	2	2	9			20	9	5	3	5	6	4	9	7
종사 자수	3,447	480	110	52	16	8	1,671			699	49	65	50	11	62	84	56	34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225	304	43	27	46	48	73	5	2	501	16	29	15	23	3	48	37	5
종사 자수	41,688	16,886	251	213	1,190	439	4,046	34	4	16,892	44	276	59	190	32	506	595	31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229	240	138	52	54	37	95	24	6	354	32	16	45	27	12	45	42	10
종사 자수	41,224	3,632	902	842	2,297	537	5,099	153	55	23,546	182	358	1,027	263	58	1,048	1,188	37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81	109	6	7		9	6	1	1	21	4		1	2	2	2	7	3
종사 자수	3,193	2,266	66	162		81	35	3	2	419	45		1	9	3	35	46	20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924	487	46	27	8	32	28	10	1	95	29	22	17	29	17	25	33	18
종사 자수	11,224	5,373	298	113	19	144	704	212	1	1,705	346	271	296	198	186	528	668	162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정부의 관심 증대로 지원 확대 •공공부문 연구개발 아웃소싱 증대 •사업화 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개발 아웃소싱 필요성 인식 •정부의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확대 •시험 인증 시장 확대	•국내 기업(특히 대기업)의 폐쇄형 연구개발 분위기 •자금조달 어려움 •기술확보 보다는 기술을 제공하는 업계 분위기 •세제 지원 미약 •불공정 거래 관행



창업자 체크포인트

- 표준 계약서 확인
- 결과물의 권리관계 및 용역비 수취 방법에 대한 안 사전 결정
- 연구개발 인력(이공계 인력) 수급 가능성 확인
- 신고 요건 확인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연구개발업	미래창조과학 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 법 시행령 제17조	•이공계 인력 5명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명 이상 •독립된 연구 시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 개요 •조직 및 직원 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개발지원업	미래창조과학 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 법 시행령 제17조	•이공계 인력 2명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명 이상 •독립된 연구 시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 개요 •조직 및 직원 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교육부 www.moe.go.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ww.steipi.re.kr	미래연구센터 www.foresight.kr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www.jnso.re.kr	R&D사업화투자협의회 www.rndinvest.or.kr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http://gj.innopolis.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2) 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www.kasr.org	한국제약공학회 www.kspe2.co.kr	대한환경공학회 www.kosenv.or.kr
한국생물공학회 www.ksbb.or.kr	한국화학공학회 www.kiche.or.kr	한국주조공학회 www.kfs.or.kr
한국자동차공학회 www.ksae.org	대한전자공학회 www.ieek.or.kr	한국통신학회 www.kics.or.kr
한국정보처리학회 www.kips.or.kr		

3) 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www.rndservice.or.kr	한국바이오협회 www.koreabio.org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www.witeck.or.kr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www.kaat.org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www.railconst.or.kr
FEST창의공학교육협회 www.fest.or.kr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www.kise.or.kr	

제2절 전문서비스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이러한 산업 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됨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2) 업종 특성

- 전문서비스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음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동시에 중간 투입요소로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
-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고 최종소비보다는 생산과정의 중간재로서 투입비중이 높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특징이 있음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산업 대비 및 전체 서비스업 대비 사업서비스 생산비중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국가 전문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 있음

2. 업종 트렌드

- 협소한 내수시장이 국내 사업서비스업의 대형화, 글로벌화의 제약요소로 작용함
- 법률, 회계 등 전문가 자격에 대한 법적 보호 등으로 국내 사업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격여됨
-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업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양질의 사업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간 선순환적인 발전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 지식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정책에 따른 변화가 예상됨

3. 사업체 현황

〈 전국 전문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71101. 변호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4,201	1,999	249	194	162	122	148	77	1	566	89	65	87	115	59	84	150	34
종사자수	31,774	20,294	1,401	1,173	1,037	772	764	472	2	2,709	327	466	417	519	268	332	685	136

[71102. 변리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98	423	19	14	11	6	46	3		48	2	3	3	4			16	
종사자수	7,745	6,811	118	88	58	37	287	14		229	4	8	16	16			59	

[71103. 법무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522	1,541	381	274	280	198	137	91	7	1,046	189	158	202	202	193	233	328	62
종사자수	22,245	5,825	1,603	1,218	1,225	827	538	366	38	4,395	775	686	780	704	734	894	1,322	315

[71104.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976	609	167	88	78	63	44	48	7	376	62	34	47	82	70	84	112	5
종사 자수	4,839	2,029	358	196	190	126	108	92	8	937	110	86	75	127	87	127	175	8

[71201. 공인회계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240	512	119	80	60	42	18	11	1	155	5	29	30	37	33	31	67	10
종사 자수	22,641	15,847	1,306	886	393	390	317	146	19	1,065	57	348	188	255	323	336	680	85

[71202. 세무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8,927	3,655	698	442	401	229	216	127	6	1,893	130	137	190	182	91	160	298	72
종사 자수	46,721	17,055	3,644	2,378	2,270	1,282	1,232	835	33	9,998	898	866	1,219	1,082	587	1,124	1,884	364

[7120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5	7	3	1			1	1		5	1		1				5	
종사 자수	190	140	10	3			1	3		12	4		2				15	

[71310. 광고 대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993	2,246	111	104	29	47	61	15	1	235	17	16	16	24	13	23	29	6
종사 자수	25,506	22,242	576	450	176	149	252	43	5	1,232	27	27	55	74	29	50	91	28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842	312	48	43	21	32	29	14	2	112	24	33	33	41	27	24	44	3
종사 자수	3,474	1,855	196	141	59	86	108	46	2	404	63	76	87	114	73	46	110	8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16	49	9	8	4	3	7	1		10	6	3	1		3	6	5	1
종사 자수	801	509	22	47	14	20	37	2		36	20	20	3		4	31	33	3

[71393. 광고물 작성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235	2,034	321	276	90	144	155	41	1	480	91	84	75	88	61	92	165	37
종사 자수	12,274	7,263	692	599	232	363	329	67	1	1,167	200	200	152	208	138	153	406	104

[71399. 그 외 기타 광고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18	98	31	27	17	17	17	8		71	22	13	13	14	15	16	34	5
종사 자수	2,639	634	252	112	59	127	133	47		519	70	50	38	296	35	66	185	16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80	239	26	21	4	19	17	2		29	7	1	4	2	1		5	3
종사 자수	7,733	6,080	469	235	9	182	381	11		152	117	3	14	9	3		48	20

[771511. 제조업 회사본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615	994	81	62	36	14	18	17		308	12	14	11	2	7	17	17	5
종사 자수	102,964	84,812	1,821	793	1,277	185	724	200		10,767	112	132	148	8	117	1,496	346	26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620	243	55	54	20	9	18	12		130	29	9	6	7	3	6	16	3
종사 자수	28,387	19,676	799	516	322	56	314	110		5,580	219	108	34	29	23	218	301	82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7	28	1	2			1			3				1				1
종사 자수	1,616	1,347	4	62			1			167				10				25

[71531. 경영컨설팅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586	2,973	246	175	20	90	125	22	2	528	44	43	37	48	15	34	107	19
종사 자수	31,326	22,534	1,161	1,140	322	676	956	256	5	2,544	321	177	195	170	147	165	488	63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30	97	3	2	3	2	2			8	5			2		1	3	2
종사 자수	1,257	1,054	19	11	12	5	4			36	26			7		53	19	11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부가가치 유발효과 높음 •사업서비스업의 중요성 인식 확대 •정부의 지원 확대 •일부 업종 진입장벽 낮음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선진국 대비 생산성 낮음 •선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산업 내 경쟁 심화 •통계별 산업분류 상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국내 사업서비스업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저조 •협소한 내수 시장



창업자 체크포인트

- 자격요건 확인
- 등록요건 확인
- 진입 가능시장 분석
- 창업자의 특화 가능 분야 정립

5. 인·허가 사항

1)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법무사사무소	대한법무사 협회장	법무사법 제14조,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무소 설치 •법무사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함	•법무사 업무개시 신고서
법무사합동사무소	대한법무사 협회장	법무사법 제14조,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23조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	•법무사 업무개시 신고서 •합동사무소 규약 1부
변리사업	특허청장 (7일)	변리사법 제5조,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변리사 등록신청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2매(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세무대리업무	국세청장 (14일)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 세무사법 제33조의5, 세무사법 제19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 •이력서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 개정법을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자에 한함) •사진(반명함판) 2매
세무법인	국세청장 (10일)	세무사법 제16조의4,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자본금 2억원 이상	•세무법인등록신청서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세무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기재된 서류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함)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1부

2)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옥외광고업	시장·군수·구청장(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별표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
경영·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청장 (20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경영(기술)지도사등록신청서 •이력서 1부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사진(최근 6개월 이내) 3장
회계법인	금융위원회 (10일)	공인회계사법 제24조,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회계법인등록신청서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3) 허가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법무사합동법인	대법원장	법무사법 제34조, 제35조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 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	•법무사합동법인인가신청서 •합동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대법원 www.svourt.go.kr	특허청 www.kipo.go.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국세청 www.nts.go.kr		

2) 학회

한국특허학회 www.patent.or.kr	한국회계학회 www.kaa-edu.or.kr	한국경영컨설팅학회 www.ks-mc.or.kr
한국세무학회 www.koreataxation.org	한국세무회계학회 www.kata.re.kr	한국상사법학회 www.korcla.net
한국해사법학회 www.kimlaw.or.kr	한양법학회 www.hanyanglaw.or.kr	한중법학회 http://kochilaw.co.kr
한국법학회 http://koreanlaw.jams.or.kr	한국광고학회 www.koads.or.kr	

3) 협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www.kmcca.net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www.kmtc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대한법무사협회 www.kjaa.or.kr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대한세무사회 www.kacpta.or.kr	한국옥외광고협회 www.koaa.or.kr	한국광고주협회 www.kaa.or.kr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www.akoam.or.kr		

제3절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건축 설계·감리 서비스,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 서비스, 측량·지질 조사·지도제작 등의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 물리적·화학적 및 기타 분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업	

2) 업종 특성

- 주어진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에 속함
- 이미 검증된 개별 기술요소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복합 시스템을 새로이 구성하는 시스템 기술에 속함
- 엔지니어링의 경우 각 분야의 컨설팅과 혼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음
-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속함
- 지식, 인력 의존형 산업에 속함
- 누적적 경험이 기술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함

2. 업종 트렌드

-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아 해외시장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연관산업 및 전방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선도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국가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성능-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규모임

3. 사업체 현황

〈 전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9,060	2,857	603	570	294	294	279	188	19	1,437	257	283	292	320	240	434	553	140
종사자수	57,219	30,915	2,810	2,372	1,375	997	1,266	1,173	82	7,432	979	1,576	1,106	1,045	683	1,211	1,660	537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586	229	34	27	12	21	10	4		111	27	22	17	11	17	24	18	2
종사자수	5,063	1,998	508	467	110	215	52	20		822	157	120	80	107	115	147	129	16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038	849	162	129	53	62	69	45	5	813	80	84	121	77	97	139	233	20
종사자수	62,581	27,795	2,344	1,432	901	1,374	1,187	536	30	16,657	1,135	1,169	882	1,113	1,787	1,176	2,522	541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546	207	21	20	7	20	16	8	1	142	18	14	13	6	9	17	23	4
종사 자수	5445	1975	192	219	144	271	99	41	2	1589	98	156	91	14	96	138	266	54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556	920	370	128	135	85	87	202	2	830	33	52	46	50	91	161	351	13
종사 자수	46,668	15,607	5,302	663	1,165	588	507	3,007	13	8,802	340	428	797	433	1,267	2,081	5,368	300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707	138	36	39	31	35	39	27	1	164	19	31	23	24	22	27	41	10
종사 자수	11,178	2,491	556	515	507	581	634	392	18	3,091	235	451	158	168	243	413	663	62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184	362	197	90	91	72	62	95	4	475	73	80	84	87	76	101	222	13
종사 자수	42,321	8,814	3,721	1,375	1,522	1,065	1,114	1,867	30	10,440	602	1,994	1,367	1,081	744	1,250	5,144	191

[72921. 측량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345	96	24	22	39	26	15	5	7	514	154	110	131	35	54	67	41	5
종사 자수	11,678	1,914	535	270	362	209	222	69	44	3,493	965	666	761	349	490	647	591	91

[72922. 제도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02	85	12	19	14	7	7	16		69	4	4	8	11	9	15	21	1
종사 자수	1,838	639	88	46	36	17	30	142		309	14	14	41	38	29	75	315	5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60	44	17	1	4	8	5	1		62	5	3	1	2	3		4	
종사 자수	1,392	433	121	3	50	59	43	1		555	35	6	2	20	6		58	

[72924. 지도제작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25	45		2	6	2	1	1	1	42	1	1	1	4	3	8	6	1
종사 자수	2,060	905		14	74	5	4	4	2	692	2	25	16	35	41	121	110	10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진입장벽 낮음 •경쟁력을 갖출 경우 고부가가치 가능 •관련법 제정,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지원 확대 •관련 산업에서의 중요성 증대 •엔지니어링의 경우 해외 진출 용이	•경기 부진 •과다한 경쟁으로 저가 수주 •엔지니어링의 경우 EPC사의 지배적 구조 탈피 어려움 •e-Business 환경 미약



창업자 체크포인트

- 인허가 요건 확인
- 전방산업 추이 관찰
- 자신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업종 선택
- 정부 정책 관찰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건축사 사무소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5일)	건축사법 제23조	신고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건축사 업무 신고서 •자격증 사본 •사무실 보유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환경건설팅회사	지방환경청장 (21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9	등록사항 외에는 특 정 요건 없음	•정관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측량업	국토지리정보 원장 또는 시· 도지사 (14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36조제1항 측량업 의 등록기준에 따름	•측량업등록신청서 •측량업용 장비명세서 및 해당 장비 의 성능검사서 사본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감리전문회사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25일)	건설기술관리법 제28 조,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 제54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6 조	시행령 별표에 표기 된 등록기준 충족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감리원 경력 확인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또는 결 산 재무제표 증명원) •장비 보유 증명 서류 •건축사 면허증 사본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환경부 www.me.g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환경취업포털 www.ecojob.re.kr	순환자원거래소 www.re.or.kr	환경보건포털 envhealth.nier.go.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ww.kict.re.kr	건설기술정보시스템 www.codil.or.kr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도시경영연구원 www.umi.re.kr		

2) 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www.kicem.or.kr	한국건설IT융합학회 www.kcici.or.kr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www.korec.org
한국건축시공학회 www.kic.or.kr	대한토목학회 www.ksce.or.kr	한국조경학회 www.kila.or.kr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www.kpa1959.or.kr	한국토지공법학회 www.toji.or.kr	한국측량학회 www.ksgpc.or.kr
대한지질학회 www.gskorea.or.kr	대한지질공학회 www.engeo.or.kr	한국비파괴검사학회 www.ksnt.or.kr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www.kosme.or.kr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www.kosse.or.kr	

3) 협회

한국환경운동본부 www.knature.or.kr	한국환경청소년단 www.key.ne.kr	한국지도학회 www.cartography.or.kr
한국조경사회 www.ksia.or.kr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한국도시계획가협회 www.kiup.org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한국건설안전협회 www.kocosa.co.kr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www.kopcea.or.kr	국제교량구조협회 www.iabse.ethz.ch	한국환경건설팅협회 www.koreca.or.kr
한국환경기술사회 www.kepea.or.kr	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 www.koepa.or.kr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제4절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산업특성

1) 사업의 범위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수의서비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수의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매니저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업종 특성

-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음
-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임
- 전방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내수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분야임
- 고급 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임
- 고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산업임

2. 업종 트렌드

- 전반적인 산업은 성장 추세이지만 개별 분야 또는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성장이 지연되고 있음
- 해외시장 진출의 한계성으로 국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 제고, 노동 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조정, 고용의 질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

3. 사업체 현황

〈 전국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

[73100. 수의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3,323	735	181	131	151	78	74	52	8	778	90	98	149	144	139	241	235	39
종사자수	8,598	2,327	540	322	411	184	182	144	10	2,188	197	240	292	248	250	403	563	97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009	631	59	31	27	30	21	13	1	115	13	15	16	4	3	5	18	7
종사자수	4,564	3,458	203	91	86	103	40	24	4	350	31	49	33	5	6	20	38	23

[73202. 제품 디자인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수	1,145	673	38	36	26	42	31	4		210	11	5	13	23	5	5	19	4
종사자수	5,137	3,272	125	143	94	181	97	11		937	30	16	55	75	12	16	64	9

[73203. 시각 디자인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656	993	69	64	28	48	46	18	5	178	21	29	18	43	16	11	48	21
종사 자수	7,019	4,920	220	285	75	152	171	37	11	599	41	78	42	131	29	15	137	76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763	565	32	57	1	3	4	1		84	2			6	1	3	4	
종사 자수	3,064	2,280	219	188	4	3	8	1		332	4			13	1	5	6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7,421	1,773	534	449	325	269	257	167	9	1,348	275	238	276	288	264	387	451	111
종사 자수	14,862	4,032	1,077	826	680	510	579	309	16	2,693	491	425	510	522	459	703	820	210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58	357	20	12	5	5	3	4		40		2		2			4	4
종사 자수	1,167	941	48	20	6	8	3	5		118		5		2			7	4

[73303. 사진 처리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900	295	61	31	42	17	28	13	1	156	27	23	24	55	21	45	44	17
종사 자수	2,097	771	129	114	87	44	56	23	2	329	49	34	79	138	41	72	93	36

[73901. 매니저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49	318	1	3	1	1	1			22	1						1	
종사 자수	2,386	2,295	2	7	4	1	1			73	1						2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462	316	27	8	6	7	4	4	1	55	4	3	2	5	1	10	8	1
종사 자수	2,265	1,625	58	40	31	13	8	6	5	381	11	4	5	10	4	37	26	1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342	232	26	16	3	9	12	2		26	1	1	1		1	3	5	4
종사 자수	1,915	1,450	169	55	6	22	107	6		62	6	1	1		7	8	8	7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208	63	11	11	4	6		3	1	29	3	6	18	6	9	19	18	1
종사 자수	677	278	19	17	15	21		56	1	53	13	8	46	8	73	37	31	1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체수	164	72	11	4	2	3	6	1		39	3	3	3	3	4	5	3	2
종사 자수	3,450	1,879	57	19	5	37	60	5		1,015	22	18	10	54	56	51	13	149

자료 : 통계청(지역별 2012년 사업장)

4. 촉진 및 애로요인

촉진요인	애로요인
• 낮은 진입장벽 • 높은 산업 성장률 • 제조업의 부가 가치를 증대하는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증가	•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쟁 심화 • 선진국 대비 서비스화 발달 수준 미흡 •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국내 진입 가능성 • 일부 업종 공급과잉 현상



창업자 체크포인트

- 인·허가 사항 확인
- 해당 업종의 경쟁 정도 분석
- 전·후방산업 분석
- 국내시장 개방 정도 확인

5. 인·허가 사항

1) 신고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4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 전문인력 분야별 3인 이상 보유, 종합디자인분야는 9인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종합디자인분야 3억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정관 • 제9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등록업종

해당업종	접수 및 처리	관련법	요건	신청서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증명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0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사항 외의 특정 요건 없음	• 등록신청서 • 검사설비 명세서 • 검사실 도면(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 계량실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함)

6. 관련기관

1)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한국계량측시험연구소 k-f.co.kr
한국기기유치시험연구원 www.mpi.or.kr	중앙대학교통번역연구소 www.itri.cau.ac.kr	

2) 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www.kiid.or.kr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www.kdai.or.kr	대한전시디자인학회 www.koses.org
한국디자인학회 www.design-science.or.kr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www.pdik.or.kr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www.branddesign.or.kr
한국니트디자인학회 www.kskd.or.kr	한국조형디자인학회 www.art-design.or.kr	디지털사진학회 내에.or.kr
한국통번역교육학회 www.kaitedu.or.kr	국제번역학회 www.iatis.org	한국번역학회 www.kats.or.kr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www.detra.org		

3) 협회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www.kjda21.org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www.vidak.or.kr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www.kaid.or.kr
한국사진작가협회 www.pask.net	한국프로사진협회 www.kppa.co.kr	한국디지털프로사진가협회 www.kdpa.or.kr
한국여성사진가협회 www.kowpa.or.kr	한국기독교사진가협회 www.christianphoto.or.kr	한국광고사진가협회 www.kapa.or.kr
한국계량측정협회 www.kasto.or.kr	한국번역가협회 www.kstinc.co.kr	한국통번역사협회 www.i-kati.or.kr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www.kima.or.kr	국제인테리어디자인협회 www.iida.org	실내건축공사협회 www.kicc.or.kr

제3편

부록(회사의 설립과 경영)



제1장

회사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제1절 회사설립

1. 법인설립 체크포인트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함

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 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

1) 법인형태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 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

2)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여부를 결정

신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에 대한 표시를 요구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3) 자본금 규모

인·허가업종의 경우 법정자본금 규모가 규정되어 있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이행 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시기 및 사업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

4) 발기인 및 임원구성

발기인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서명날인과 회사설립에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로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하는 만큼 발기인 구성 시 이를 고려하여 선임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 임원구성에 대하여는 정관과 상법 등에서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성

5) 상호결정

등기신청 시점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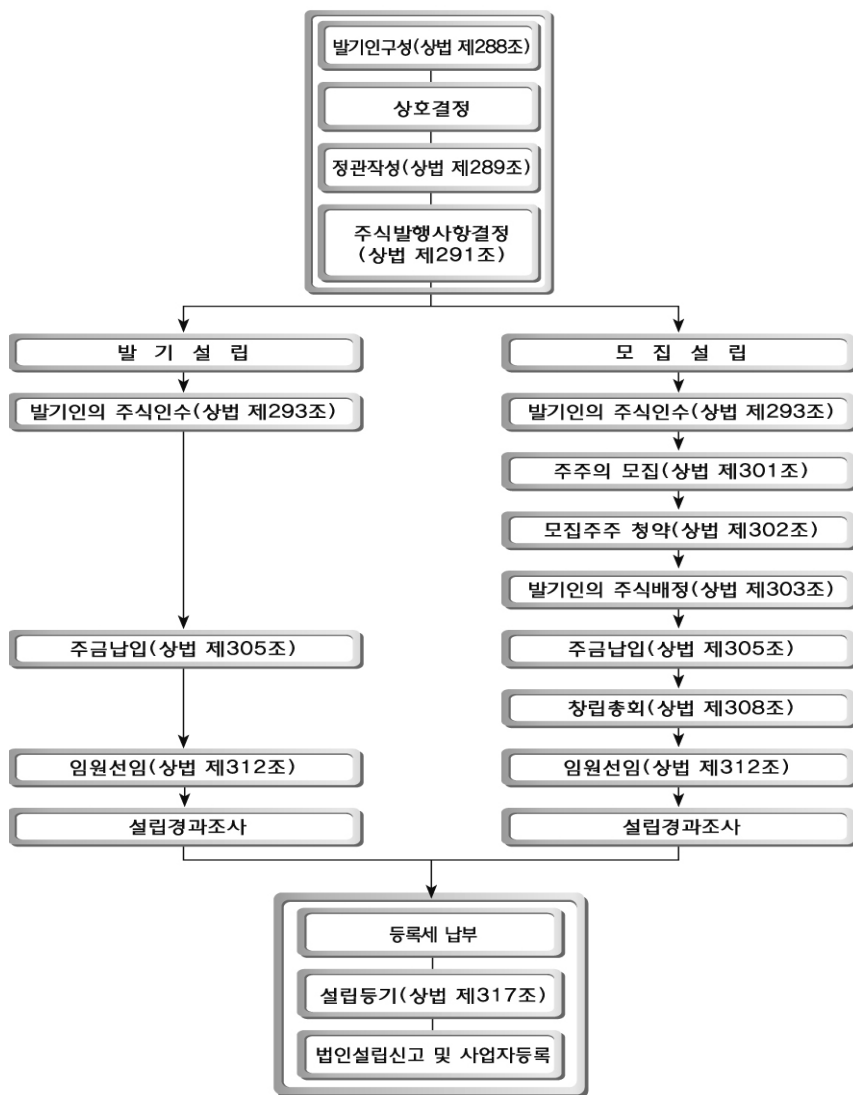
6) 본점 소재지

기존 사업자가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2. 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

〈 법인설립 절차도 〉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임

발기인 자격	•내·외국인 및 법인 또는 자연인과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발기인의 수	•최소 1인 이상(상법상 발기인의 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인수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

또한 회사의 설립 방법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중 어떤 것으로 할 것 인가는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함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	1인 이상 발기인	좌동
주식취득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청약(연고모집,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
자본금	제한없음	좌동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공증인의 인증 필요
임원선임	이사3인, 감사 1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좌동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함	좌동
변태설립사항 조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단, 현물출자에 대한 공증인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 첨부도 가능	좌동

2) 상호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등과 같이 회사형태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여러 개 준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의 법인상호 찾기 메뉴를 통하여 관할등기소 내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를 조회
- 동일한 사업목적의 동일 상호가 아닌 상호에 대해 영문표기방법을 포함하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직접 문의
- 결정한 상호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3자가 먼저 사용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음

3) 정관 작성

발기인은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규모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 ① 목 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해야함. 즉,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작성은 안 됨
- ② 상 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
-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 ④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백 원 이상이어야 함
-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 설립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함
- 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행정구역까지 표시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되 추상적,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2010년 5월 28일 이후부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도 가능)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병기[예, 사나이사 미합중국인 존리(John.Lee)]

(2)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함

상 대 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 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가격·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 의 적 기재사항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등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 하여야 하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음

5) 정관의 인증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김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는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인정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음

6) 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 발총주식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인수는 효력이 없고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함

(2) 출자의 이행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 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에서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현물 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 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며 현행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으로 규정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현물출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 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함

(3) 이사 및 감사 선임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 없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출

-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하되 자본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선임을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나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설립경과조사를 감사 또는 이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인이 아닌 자로 선출

(4)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①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함.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함
- ②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 작성
- ③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수행

7)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청약서 작성내용 〉

- ①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②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 ③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④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⑤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⑥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⑦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⑧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⑨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⑩ 주금(주식인수에 따른 대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⑪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3) 주식의 배정과 인수

발기인 조합은 응모한 주식 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해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

-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통지
- ②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 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4) 주식대금의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하며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 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5)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 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을 결의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함



발기설립의 창립총회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발기인)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를 선임할 수 있음

- ① 발기인은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 상황과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
- ② 이사와 감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
-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 할 수 있음
- ④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6)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

8)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감면받은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시·군·구에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구분	등기 등록 종류	세율
법인등기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0.4% (세액이 11만2천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 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출자증가	0.2%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40,2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지방세법 제138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대상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 설립등기
-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9) 법인설립등기

(1) 법인설립등기 시기

발기설립 등기시기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 등기시기	•창립총회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2) 신청장소 및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

(3)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① 정관
-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③ 주식청약서

- ④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⑥ 감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⑦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발기인 회의록)
 - ⑧ 창립총회의 의사록
 - ⑨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⑩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⑪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 ⑫ 벤처기업확인서(창업 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을 통한 등기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발급, 접근번호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신청서 작성만 이용하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5)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
- 회사설립을 위한 창업가이드, 사업인허가, 회사설립 절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수의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회사설립 시스템



복잡하고 어려웠던 회사설립!

이젠 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개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 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법인전환의 유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음

1)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것



법인전환 방법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위의 법인전환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가능성
- 법인전환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및 효과
- 법인전환절차상의 복잡성
- 법인설립자금의 크기와 준비 여부
- 보유자산과 부채의 유형 및 규모

2) 법인전환의 요건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개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것
-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3)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 신청

(2) 취득세의 면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3)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의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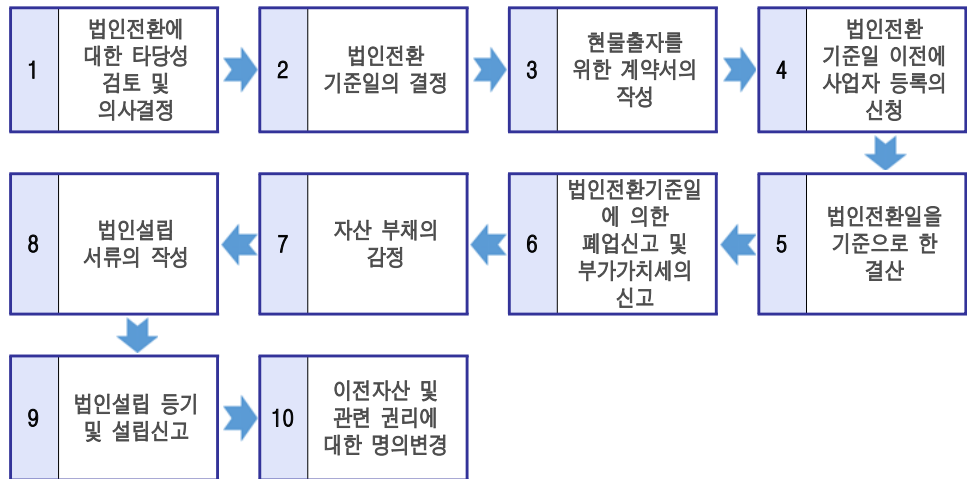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에 적용되던 다음의 감면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과 재산세의 감면(재산세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전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수도권권밀역제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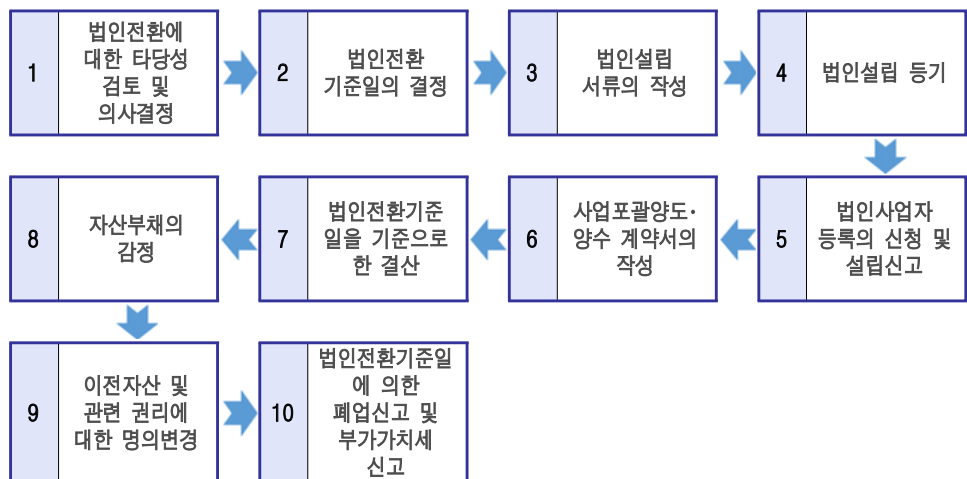
4) 법인전환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거래처 등에 상호변경에 대한 공지와 관련 서류 및 명칭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이행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제2절 사업자등록

1. 개인사업자 등록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설립이 완료됨

1.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신고인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3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 이라함)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형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⑥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 이라함)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⑧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붙임서류에 추가로 적어야 하는 사유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명세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현황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등록 시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사업장이 확정 될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개인사업의 상표출원을 통한 상표(브랜드) 관리

-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상호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상표출원이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고유 브랜드에 대한 보호 및 유사상호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하기도 함



사업자등록 요령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2.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1.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 ① 법인설립등기 완료
- ② 인·허가 및 신고 업종여부 검토
- ③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④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첨부서류

- ①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⑤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 ⑥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⑦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 ⑧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 ⑨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 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3.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며 사업의 개시와 함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기타 행정절차를 신고해야 함

-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는 법인의 임원 및 대표자를 포함하며,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신청과 각종 변경 및 탈퇴에 관련한 신고는 4대 보험 공통서식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

〈 4대보험 담당기관 및 온라인 연계사이트 〉



〈 4대 사회보험 비교표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법인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 반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1998년10월1일부터 1 인 이상근로자 의무 가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신고기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 터 14일 이내		가입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 까지	
부과소득 상한선	360만원 (45등급)	548만원 (등급 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 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연납 (분할납부 가능)	연납 (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당해 연도의 3.31까지 (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당해 연도의 3.31까지 (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제2장

기술창업경영

제1절 자금·투자·재무

1. 자금확보

1) 은행을 통한 자금 확보

은행차입 Point	•은행의 대출 의사결정 Point는 원리금 상환능력, 담보능력과 신용도를 모두 감안하여 대출 •2008년부터 바젤 II (신 BIS기준)의 적용으로 은행거래에서의 기업신용도는 그 중요성 증가 •기업의 신용도는 재무항목의 평가와 비 재무항목의 평가를 병행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시점부터 신용도 관리가 필요
은행 창업자금 예시	•창업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은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이 담보 없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의 은행거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신용평가 항목 예시

- 안정성 :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비유동장기적합률, 유동비율, 당좌비율
- 수익성 : 총자산세전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부담률, 이자보상배율
- 활동성 : 총자산회전율, 영업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생산성 :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
- 성장성 :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 현금흐름 : 영업활동조달현금, 투자활동 후 현금흐름
- 기타 검토항목 : 경영능력, 업계 평판, 지분구조(경영권의 안정성), 기술력(연구개발비율, 특허, 조직, NET, NEP등), 인증(ISO,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 기업형태(법인, 개인, 상장여부, 일반, 등특), 소속 산업의 경제적 지위, 임원의 평균 재직기간, 우발채무, 부외부채, 소송 등의 여부, 추정매출액 및 추정이익증가율, 금융권 연계·부도 여부, 세금 체납 여부, 신용조사 자료의 신뢰성, 구매 안정성, 생산 효율성(인력확보, 환경, 설비, 기술), 시장점유율, 제품 인지도, 시장 지배력, 거래처의 분산 정도, 주거래처 신용도, 고정거래처 비중, 제품의 수요기반 안정도, 대금회수 조건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확보

기술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이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Point 〉

일반적인 평가	기술평가
매출액, 자본금, 기타 재무사항 등 과거의 실적위주 평가	기술 및 경영능력, 시장성 및 수익성 사업계획 타당성, 미래 성장 가능성

- 기술평가보증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종합 기술평가
- 80백만원 이상 보증 시 벤처기업 지정 가능(창업 1년 미만은 40백만원)
 - 기술평가를 통한 투자
 - 투자방법 :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 투자한도 : 일반10억, 특별30억
 - 경영권 보호장치 : 지분 50% 미만, 1대 주주 지분을 미만(지분취득 상한 제한) 등
- ※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3)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확보

신용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이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

*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 대상	창업 전 6개월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 후 1~3년	창업 후 3~5년
보증한도	10억원(시설 포함)	10억원	20억원	30억원
보증료	0.7% 고정	0.4%p 차감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100%	95%	90%

* 퍼스트 펍킨형 창업기업 보증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업 력		창업 후 2년 내		
대상기업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		
보증 한 도	총 한도	총 지원 가능한도 30억원		
	Credit Line	신규설정 3년간 지원한도 →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연차별 한도	Min(20억원, 1년차 추정매출액, 소요자금)	Min(25억원, 2년차 추정매출액)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보증료율		0.5%p 차감	0.5%p 차감	0.5%p 차감
보증비율		100%	95%	90%

* 우수 창업기업 보증

구 분	개별요건
우수기술 창업기업	•창업 1년 이내 •기술력등급 T1~T5 또는 SB3 이상 •보증지원 한도 2억원
전문가 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력등급 T1~T3 또는 SB3 이상 •사업 개시일전 1년 이내에 교수·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보유 •보증지원 한도 3억원

※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4)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자금 확보

사업명	취지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기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자금	총사업비 70% 이내, 5천만원 한도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성공벤처기업 노하우 전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기업	공간, 멘토링, 사업 기획, 기술, 마케팅	총사업비 70% 이내, 9천만원 한도
시제품 제작터 운영	초기 창업자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디자인, 설계, 실물 모형 제작	시중가의 60% 수준으로 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 지원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공간, 상담, 커뮤니티, 교육	월 50만원 내외의 창업활동비
스마트 창작터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교육 및 창업 지원	모바일앱, ICT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	개발교육, 창업지원	교육비, 창업자금 최대 3천만원
엔젤투자 매칭 펀드	초기기업의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제공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정부가 1:1 매칭 투자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창조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1인창조기업 및 창업 예정자	디자인개발, 브랜딩개발, 홈페이지 제작 외	총사업비 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 위 내용은 2014년 기준이므로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5) 정부 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

정부출연 연구개발 자금은 대부분 기업이 일정비율의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 출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내용 〉

사업명	취지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기업의 생존을 제고, 성장기반 강화	창업 7년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	연간 4회 접수(2, 4, 6, 8월)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소요비용의 90% 이내, 최대 2억원

※ 위 내용은 2014년 기준이므로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 공고 내용 참조)

6) 정책자금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융자)하며, 매월 1~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구분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시설자금	변동금리 (2014년 1/4분기 3.14%)	기업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2. 투자유치

1) 투자유치 준비 사항

사업계획서 준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하되, 현재가치 보다는 미래가치를 부각시켜야 함
지분에 대한 개념 정립	•투자유치 후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야 함
기업의 투명성 확보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경영성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1차 투자유치가 2차, 3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이 필수

※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투자제안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수익성,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입지조건, 생산계획, 마케팅전략, 투자의 경제성, 소요자금 규모 및 조달 계획, 차입금 상환 계획, 조직, 인력 계획 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함

2) 투자자의 관심 사항

경영자	•경영자의 경험 및 경력 •경영자의 도덕성 •경영능력
제품	•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여부 •경쟁사와의 차별성
사업성	•성장산업 여부 •합리적인 수익성 수반 가능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배당, IPO 등)

3)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요령

투자유치 시기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창업 초기보다는 매출 실현 시기 등)
우선주 중심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보통주는 최소한으로 부여
추가 투자유치	•2차, 3차 투자유치를 위해 지분에 대한 전략 수립

4) 벤처캐피털의 기능

High Risk High Return 기업에 집중 투자	•첨단 기술 벤처의 초기자본을 담당 •위험부담은 크지만 성공하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벤처기업의 속성과 일맥 상통
IPO전까지의 모든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이 IPO 전까지 필요한 경영자원, 재무 및 회계 등 Value-Added 서비스 제공 •투자 이후의 활동, 즉 벤처기업에 대한 백업
포트폴리오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포트폴리오 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특정 분야의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각 포트폴리오 업체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벤처 산업자본	•벤처캐피털은 전통적인 금융이 담당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금융의 선두 주자

5)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하지 않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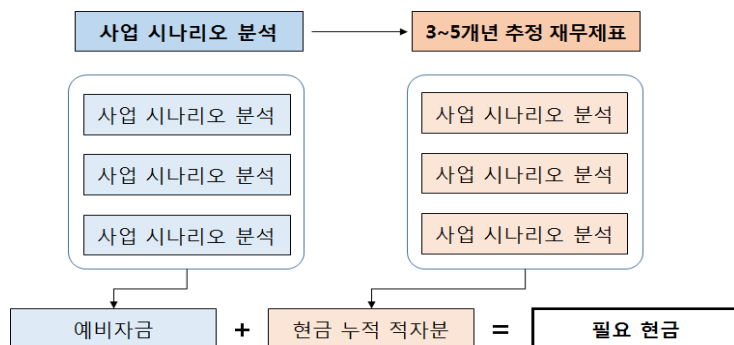
투자하는 기업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 •독창적인 판매망을 갖춘 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
투자하지 않는 기업	•평범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너무 혁신적이어서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재무관리

1) 필요현금 예측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산출을 위한 추정 재무제표 작성 시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야 함

〈소요자금 예측 Process〉



2) 예비자금 예측

(1) 예비자금의 예측

예비자금은 창업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자금소요를 충당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추정손익과 추정현금흐름 혼합법	동업계 대비법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지출 예상 금액(A) •매출발생 후 현금화 될 수 있는 개월 수(B) •매입발생 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개월 수(C) •월 평균 예상 매출액(D) •월 평균 예상 매입액(E) ▷ 예비자금 = $A + (B \times D) - (C \times E)$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B)와 (D)를 산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지출 예상 금액(A) •매출발생 후 현금화 될 수 있는 개월 수 $(B) = 12 \div (\text{매출액} \div \text{매출채권})$ •매입발생 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개월 수 $(C) = 12 \div (\text{매출액} \div \text{매입채무})$ •월 평균 예상 매출액(D), 월 평균 예상 매입액(E) ▷ 예비자금 = $A + (B \times D) - (C \times E)$

(2) 창업기업의 자금부족 요인

창업 이후 자금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영자의 오해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자금이 허락되면 원자재 재고를 많이 보유
- 매출채권은 언젠가 회수 됨
- 장비 및 설비는 많을수록 좋음
- 자금만 조달할 수 있으면 자가 사업장을 확보해 두는 것이 후일 부동산 값이 올라 이익이 됨
- 팔릴 것 같다 싶으면 제품재고를 많이 만들어 둬

(3) 고정비에 대한 점검

창업기업은 내·외적인 경영요소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높아 어느 한 가지에 문제가 발생해도 기업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해 짐	창업자금 운영계획에 너무 많은 고정비가 할당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 필요	고정비가 높으면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도 늦어지고, 경기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 폭도 커지게 되어 기업이 안정되기도 전에 위험부터 닥치게 될 수도 있음	대기업은 고정비가 높아도 불황 때 견딜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 호황기에는 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만 창업초기 기업이 고정비가 높으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	--	--



매몰원가(Sunk Cost)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운영

자금을 투입하여 자원을 소유하기보다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위험 감소의 방법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확보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일정기간동안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정비와 매몰원가가 높아져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됨	결론적으로 자금운영계획은 매우 보수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	--

3)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운용

(1) 자금의 규율

- 타인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므로 무리를 하지 못하지만 갚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오면 무리(방만한 경영)를 하게 됨
- 따라서 자금조달은 사업목적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조달된 자금으로는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어야 함. 일단 자금을 조달해 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조성한 자금은 방만한 행동을 하게 함
- 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기업은 모든 경영책임이 오직 기업인의 자월에 맡겨져 있으므로 투자유치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고,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이 필수요소임

(2) 자금의 상환시기와 경영성과 발생시기의 Match

기업의 자금	운전자금	•자금을 투입한 후 경영성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자금
	시설자금	•자금 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야 경영성과로 나타나는 자금

※기업의 자금은 용도에 따라 회수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회수기간에 따라 자금조달 방법을 달리해야 함

〈 자금 용도별 운용방법 예시 〉

자금 용도	운용 방법
창업 초기자금	가장 기본적인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총당(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 활동비…), 나머지는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정부의 간접지원 활용(특히 출원비,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
연구개발자금	자기자금 또는 정부출연자금(개발 후 제품화 하여 성과를 실현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시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자금 활용)
운전자금	자기자금, 정책자금 차입, 금융권 자금 차입(1년 내외의 단기간에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 필요한 자금)으로 만기에 상환계획을 수립해도 무방한 자금 활용)
공장설립 및 시설자금	자기자금, 정책자금 차입, 투자유치(부지매입, 건축, 설비도입, 정상생산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성과가 발생할 때까지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금 활용)

(3) 정부 출연 연구개발 자금 수혜 준비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관련 산하기관이 기획·운영·관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70~90% 까지 무담보·무이

자로 정부가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단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며,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 전략이 필요

-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개발 능력 보유
 - 국내 또는 세계 유일의 기술임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떤 기술로 시장을 창출 도는 점유할 수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성이 이어야 함
 -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 보다는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기술이어야 함
- 개발장비 및 개발조직 보유
 - 대표자의 기술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개발장비와 조직을 보유해야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정부주관 또는 공인기관 주관 인증 등의 준비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유망중소기업, ISO, 각종 포상, 특허 등
- 시장분석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장성을 분석한 자료 보유

(4) 정책자금 융자 수혜 준비

정책자금 융자는 장기저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용해 야 할 용도에 적합하며,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 전략이 필요

- 지원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 : 신용불량, 융자지원 제한부채비율 초과, 금융기관 연체, 국세체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
- 필수 또는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 사업성 있는 특허보유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기타 각종 인증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외의 사업설명자료
- 선착순으로 자금소진 시 까지 운영되므로 자금소요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

이와 같은 준비 사항들은 필요할 때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직 전사업 연도 말에 공고가 되어 정책자금이나 정부출연자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창업기업의 회계관리

1. 회계의 기초

1) 회계의 정의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형식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재고(Stock)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경제적 흐름(Flow)에 관한 정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2) 회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회계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은 회계정보에 대한 왜곡을 가져 오게 되고 결국은 잘못 된 의사결정을 하게 됨

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회계에 대한 사실
회계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이다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일에 속함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면 된다	기업의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자문을 받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일
담당직원이 알아서 하면 된다	경영자가 이해하고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함
장부정리만 잘하면 된다	산출된 결과를 자금의 차입 및 투자유치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음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경영관리와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일
이익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3) 회계처리를 잘 못할 경우

-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움
- 회계장부와 실재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됨
- 산업 표준 또는 동종업계와의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회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재무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
-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회계시스템의 관리와 회계정보의 활용

구분	주요내용
회계처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 없이 즉시 기록함 •회계처리방법, 계정과목 등은 일관성 있게 처리 •가치급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연구개발비계정을 정확하게 기장
위탁기장관리	•정기적으로 기초적인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지출과 연관이 되는 서류도 제출 •회사의 사업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도 제출 •정기적(매월 또는 3개월 단위) 으로 기장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확인
회계정보의 활용방법	•정기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매출액과 관계비용의 증감내용을 파악 •회계정보를 월별비교, 연도별 비교, 산업표준과의 비교,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함 •매출액과 발생비용의 구성 비율을 파악 •자금의 차입, 투자 유치, 정부과제의 수행, 자원제도의 활용 시 관련 자료를 제출

3. 기업의 손익계산방법

1) 재산법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를 비교하여 손익을 파악하는 방법

$$\text{기말자본} - \text{기초자본} = \text{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재무상태표
년 월 일 현재

자산(1,000)	부채(600)
	기초자본(200)
	당기순이익(200)

(1) 자산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 등의 경제적 자원을 말함(현금 및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상품, 토지, 건물...)

$$\text{자산} = \text{부채(채권자지분)} + \text{자본(소유주지분)}$$

(2) 부채

기업이 장차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를 말함

$$\text{부채(타인자본)} = \text{자산} - \text{자본}$$

(3)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기업의 순자산을 자본이라 함

$$\text{자본(순자산, 자기자본)} = \text{자산} - \text{부채}$$

2) 손익법

$$\text{총수익} - \text{총비용} = \text{순이익(또는 순손실)}$$

손익계산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총비용(800)	총수익(1,000)
당기순이익(200)	

(1) 수 익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아들인 모든 금액을 말함

(매출액, 용역수입금, 이자수익, 임대료 등)

(2) 비 용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희생가치를 말함

(매출원가, 급료와 임금, 세금과 공과, 보험료, 광고선전비, 접대비, 이자비용 등)

4. 재무제표 읽는법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읽는 법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일정시점의 기업에 관한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1.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 × ×	× × ×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 × ×	× × ×
3. 자본조정		
4.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 본 총 계	× × ×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 ×	× × ×

(2)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구성과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과목 유형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
재고자산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
비유동자산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적인 투자 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
유형자산	사업을 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
무형자산	사업을 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자산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
기타의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
유동부채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등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이외의 부채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자본금	사업의 수행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총액	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
자본조정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3)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읽을 때 유의할 사항

과목	주요 내용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적정자금의 보유가 요구 •자금의 유형에 따라 이자율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운용 필요
매출채권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잔액의 증감여부를 전년도와 비교 •매출채권의 증가는 단기운용자금의 압박요인이 되며 즉, 증가한 금액만큼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상매출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매출처별, 기간별로 회수주기를 계산하여 매출채권의 적시 회수 여부를 확인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될 경우 대손처리를 하여야 함
재고자산	•판매 및 생산계획에 연동된 적정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 •적정재고량을 초과한 재고자산의 증가는 재고관리의 문제를 의미 •적정재고의 보유는 금융비용의 절감 및 재고의 진부화, 가치소멸 등의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음
투자자산	•안전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취득이나 M&A 또는 전략적 사업제휴 등 필요한 경우가 있음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유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올바른 집행에 의하여 실행된 자산의 증감 확인
매입채무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현금흐름에 양(+)의 효과를 나타냄 •적절한 상환 스케줄을 통해 안정적인 구매처 확보 필요
단기차입금	•적시상황을 대비하여 현금흐름을 유지 •흑자기업도 단기의 현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자금운용상 항상 유의해야 할 부채
비유동부채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자금소요의 원인과 정확한 사용여부를 확인 •사업계획의 수립 시 적절한 상환계획을 수립
기타	•부분이 아닌 전체를 파악 •전기와 비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배분이 적정한지 파악 -자산구조의 왜곡현상이 자금운용상의 문제를 일으키므로 자금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자산투자가 필수적인 자산운용의 조건 •자기자본과 부채를 비교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가 많다는 것은 차입에 의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자비용이나 상환의 압력을 받게 됨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검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적을 경우 단기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지급불능이 될 수 있음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이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이 크다면 유동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됨 -적절한 유동성의 확보는 계속기업을 위한 필수 조건

2) 손익계산서를 읽는 법

(1) 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재무제표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1. 매출액		
2. 매출원가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또는 당기상품매입액)		
기말제품(또는 상품)재고액		
3. 매출총이익(또는 매출총손실)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6. 영업외수익		
7. 영업외비용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9. 법인세비용		
1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이 손익계산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손익계산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매출액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 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
매출원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매출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회사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
영업이익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
영업외수익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하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
영업외비용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함.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법인세비용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 포함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3) 손익계산서를 읽을 때 유의사항

구분	유의할 사항
매출액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감상황을 분석하며, 매출처 별, 제품 별 증감사항이나 그 사유 등의 분석을 통해 매출증대 방안을 수립
매출원가	•전년 대비 원가율의 증감과 원가 명세서를 통해 세부적인 증감사유를 분석하여 매출원가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기초재고+당기증가-기말재고)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품, 제품 등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된 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수립을 통해 전체적인 비용규모를 사전에 계획하여 수립 •예산 대비 실적분석을 통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필수 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것은 절감하도록 함 •계획적인 비용관리를 수행
영업이익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성 검증의 척도이며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이익항목 •최소한의 이익기준을 볼 경우 영업이익이 기업경영을 위한 차입자료를 상쇄할 정도가 되어야 계속기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함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기업의 성과를 표시하는 손익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
기 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고 전기 등과 비교 •각 항목별 발생액을 전기 등과 비교

제3절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1.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

1) 세금의 특성과 대응자세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소득의 발생과 재산의 보유 및 이전, 소비, 거래행위에 세금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무관심하거나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준비를 통하여 절세하려는 자세가 필요

2) 절세와 탈세의 차이

구분	절 세	탈 세
개 념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방 법	•증빙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확한 기장 •세법상 조세지원제도의 충분한 활용 •세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의 계상 •허위서류의 작성 및 위조 •명의 위장
결 과	•조세의 절약으로 자금지출의 감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가산세, 벌과금 등의 경제적인 부담과중

3) 증빙서류의 구비방법

구분	증빙서류 구비요령
접대비	•1회에 10,000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 기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만 인정 •거래처에 대한 경조금 → 위와 같은 증빙 없이 200,000원까지 지출이 가능
일반경비	•건당 거래금액이 30,000원 이상의 지출은 투명증빙을 첨부 ◻ 투명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신용카드영수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용(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투명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 수취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농어민,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제외)

2. 창업자의 조세감면

1)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구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대상기업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대상소득 및 세금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세액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

2) 지방세의 감면

구분	감면 대상	취득세의 추정사유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대상과 같음	
취득세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75%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와 창업 일부터 4년 이내 증자 시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의 등기	
재산세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장임지기준 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함) → 창업일(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대상기업	•2016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016년 12월31일까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3. 창업기업의 절세전략

1) 절세의 기본방안

구분	추진 방안
투명한 회계처리	기업경영과 회계처를 투명하게 하고 2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증빙서류의 비치	도로통행료, 식대 등 사소한 지출에 대한 증빙도 철저히 갖추어 처리
세법상 의무이행	접대비의 한도 내 사용, 신용카드의 사용, 투병증빙의 수위기준 준수, 각종 세무신고기한의 준수, 세금의 적기 납부 등
지원제도의 활용	벤처기업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치,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조세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절세방안 모색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경영과 세법숙지를 통한 절약방법을 연구, 시행하고 특히 경영자가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내용과 세무처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관리

2) 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

(1)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지식

구분	주요 내용			
납세의무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과세 대상	•면세로 규정 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모든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매출금액 X 10% -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			

(2) 부가가치세의 절세전략

구분	주요 내용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주고받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정상사업자의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폐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매출누락의 발생 억제	매출누락을 하게 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고, 조사 후 사기,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발견되면 조세범으로 처벌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서 월별로 2건 이내에 한함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임차건물의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세금낼 돈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여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음
구매시기의 조정	6월말과 12월 말에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등 불성실신고자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의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를 함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신고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함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

3) 소득세의 절세방안

(1) 소득세에 대한 기초지식

구분	주요 내용
신고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신고 및 납부기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지방소득세의 신고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중간예납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 소득세의 절세전략

절세 전략	주요 내용
장부의 기장을 철저히 함	•이월결손금의 공제 •복식기장의무자의 가산세 배제 •간편장부의무자의 세액공제 혜택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거래근거를 확실히 함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수표 사본, 거래명세서에 운송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 등 기록
기장을 못했을 경우에도 증빙서류 구비는 철저히 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혜택 가능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 또는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처리 함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
총당금규정의 활용	총당금은 납세의무자가 계상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감가상각총당금, 퇴직급여총당금, 대손총당금 등)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함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존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이내의 금액
근로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철저히 함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활용

4) 법인세의 절세방안

(1) 법인세의 기초개념

구분	주요 내용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 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신고 및 납부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소득세의 신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소득금액의 계산	•익금 - 손금 = 각사업연도 소득 •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				
중간에납	중간에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절세전략

절세전략	주요 내용
가치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을 억제	•가치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함 •가수금 - 매출누락이나 다른 수입금액의 변칙처리로 의심 받을 수 있음
특수관계자에 대한 처리를 명확	•정당하지 않게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됨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비의 처리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한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의 활용 •기타 조세감면제도의 활용

4.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대응 방안	주요 내용
조사원증의 확인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복사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세무조사자가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하되 묻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은 하지 않음
자료의 제시와 조사에 대한 협력	세무조사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정성껏 준비하여 제시하고 모든 조사 과정에 최선을 다해 협력
조사자에 대한 인간적 대응	인간적이고 성실한 대응으로 상호 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음
확인서 작성 전에 내용의 확인	조사의 종결 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확인서에 날인여부를 결정
조사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는 불복청구	일단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

제4절 벤처기업 확인

1. 벤처기업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 (2)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문화상품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한국벤처투자조합	⑥ 벤처투자전담회사	⑦ 개인투자조합	⑧ 한국산업은행
⑨ 한국정책금융공사	⑩ 중소기업은행	⑪ 은행	⑫ 사모투자전문회사
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투자의 정의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벤처투자기관이 될 수 있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①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② 인수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①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
 -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한국벤처투자조합인 유한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① 창업 3년 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 ②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기술평가기관

☞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33)	
-의약품(21)	6%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이상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6%이상
-전기장비(28)	6%이상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이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이상
-기타제조업	5%이상
도매 및 소매업(45 ~ 47)	6%이상
통신업(61)	7%이상
사업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10%이상
(인터넷산업)	(5%이상)
기타산업	5%이상

3)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요건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
금에 한함
- 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
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단, 10억 이상
보증(대출)시 비율 적용 배제〉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2. 예비벤처기업

1) 요건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2)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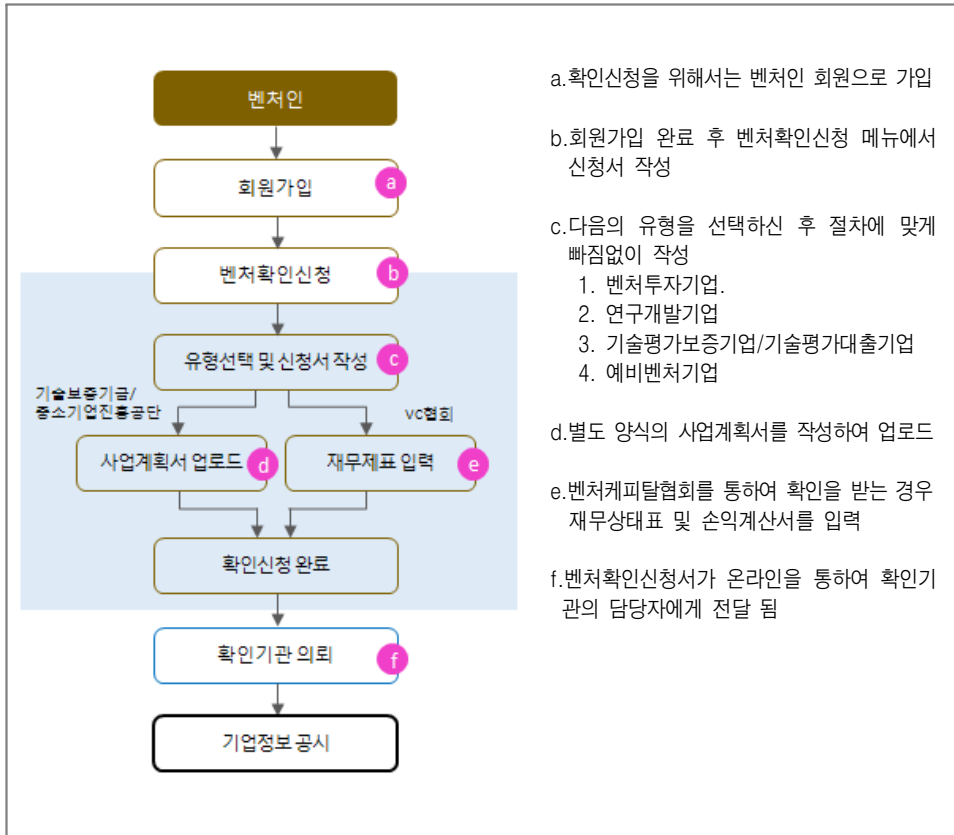
3. 벤처기업 제외업종

업종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55112)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그 외 기타 숙박업(55909) 한식 음식점업(56111) 중식 음식점업(56112), 일식 음식점업(56113), 서양식 음식점업(56114), 기관구내식당업(5612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19), 출장 음식 서비스업(5613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 치킨 전문점(56193), 분식 및 김밥 전문점(56194), 이동 음식점업(56132) 그외 기타 음식점업(56199),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제과점업(56191), 비알콜 음료점업(56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6811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기타부동산임대업(68119),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68121),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68122),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9),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오락업 및 문화업	골프장운영업(9112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 무도장운영업(91291), 기타캠블링 및 베틀업(91249)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이용업(96111), 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욕탕업(96121), 마사지업(96122),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96129), 가정용세탁업(96912), 세탁물 공급업(96913),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예식장업(96991),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96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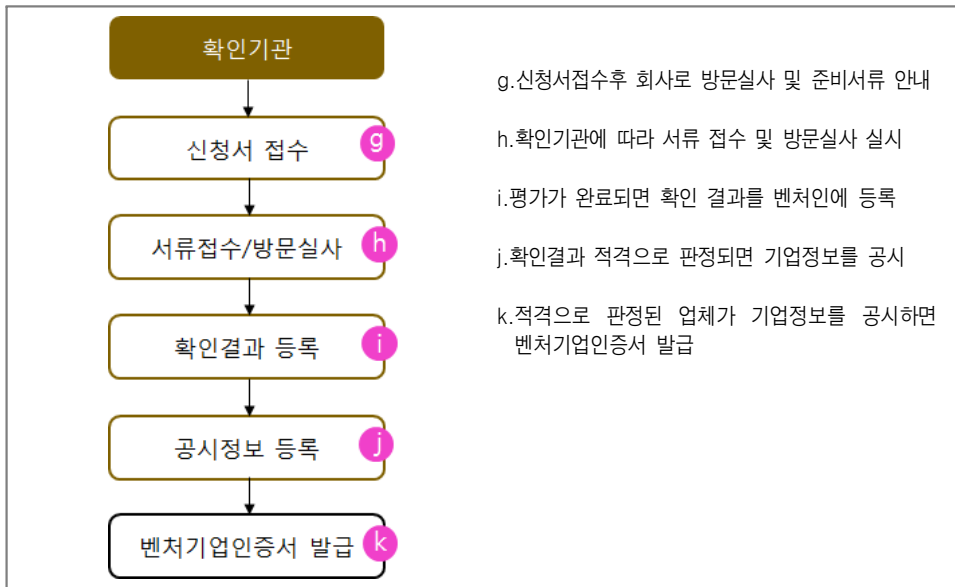
4. 벤처기업의 확인요령

1) 벤처기업의 요건별 확인 절차(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

(1) 벤처인 업무



(2) 확인기관 업무



2) 벤처기업의 요건별 평가내용 및 확인기관

구분	평가 내용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성의 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경영능력,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전망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경영능력, 기술개발환경, 기술 개발 실적 등,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전망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반드시 확인을 취소)

-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3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 하는 경우

4) 벤처기업 확인 평가 및 확인에 대한 수수료

- 현행 중기청 고시에 따르면 벤처확인평가 및 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70만원이내에서 운용되도록 되어있음
- 평가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운용되고 있음

*부가세 별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확인평가료	-	200	200	200
확인수수료	100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규취급 6개월 내 신청 시 확인평가료 면제

제5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의 정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력을 통한 기술경쟁력과 미래의 성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 중인 기업

2) 신청제외 기업

- 신용정보 규제 및 파산, 회생절차 신청기업

3) 요건 및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제도

지원제도	세부 내용	지원기관
Inno-Biz 금융지원 협약보증	•Inno-Biz 선정평가와 동시에 신청가능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지원한도: 50억원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우대지원	•보증지원 최고한도를 50억원 까지 확대 •기술평가보증취급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창업후 5년 이내 기업은 85% 고정부분보증비를 적용보증료를 0.2% 감면 •평가우수기업은 「kibo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 지원병행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우대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생산정보화/공정혁신 지원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지원사업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 우대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우대 •특허청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한국방송광고공사, TV, 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각 기관

< 이노비즈인증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

관련업무	기관	연락처
이노비즈 인증 신청문의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이노비즈 인증 지역별 문의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인증 시스템장애 및 오류문의	이노비즈협회	070-8274-2909
현장실사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1544-1120
유효기간 연장 문의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1544-1120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및 수정, 재발급 문의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	

〈 이노비즈 인증 지역별 문의처 〉

준비항목	세부 내용
대구 · 경북지회	•전화번호 : 053-745-4700 팩스번호 : 053-745-4702
대전 · 세종충남지회	•전화번호 : 042-476-7722 팩스번호 : 042-476-7721
광주 · 전남지회	•전화번호 : 062-363-1333 팩스번호 : 062-363-1334
충북지회	•전화번호 : 043-235-2884 팩스번호 : 043-236-2884
제주지회	•전화번호 : 064-713-4405 팩스번호 : 064-713-4406
경남지회	•전화번호 : 055-283-2360 팩스번호 : 055-283-2361
강원지회	•전화번호 : 033-262-2095 팩스번호 : 033-262-2096
전북지회	•전화번호 : 063-213-2356 팩스번호 : 063-214-2356
부산 · 울산지회	•전화번호 : 051-714-0157 팩스번호 : 051-714-0159

〈 지방중소기업청 〉

준비항목	세부 내용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62) 360-9205 •팩스번호 : 062) 366-1922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wangju/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33) 260-1600 •팩스번호 : 033) 260-1609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angwon/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53) 626-2601 •팩스번호 : 053) 626-2602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daegu/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2) 2110-6346,6347 •팩스번호 : 02) 2110-0664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seoul/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31) 201-6800 •팩스번호 : 031) 201-6919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yeonggi/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43) 230-5300 •팩스번호 : 043) 235-2491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chungbuk/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55) 268-2511 •팩스번호 : 055) 285-5382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gyeongnam/
부산·울산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51) 601-5111 •팩스번호 : 051) 338-5180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busan/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32) 450-1141 •팩스번호 : 032) 818-0206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incheon/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63) 210-6400 •팩스번호 : 063) 210-6428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jeonbuk/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 042) 865-6133 •팩스번호 : 042) 865-6139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daejeon/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인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기업	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 후 650점 이상인 기업이 신청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등록	기술보증기금	Inno-Biz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해 현장평가
Inno-Biz기업 선정	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 B등급이 상인 기업(수시선정)

“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



평가료

1. 기술평가료 : 건당 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기술평가료
2. 기술평가료 면제 : Inno-Biz 선정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신청 하는 경우 기술평가 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제6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이노비즈와 같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자가진단 결과 경영혁신시스템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기업

2) 신청할 수 없는 자

①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중

②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③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④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⑥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제도

-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와 판로 및 수출지원 시 우대 지원
- 2) 기술보증기금 및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지원 시 보증료율 우대와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 3)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분야)
-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 시 우대(1.5점 부여)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의 확인절차

확인절차	세부 내용
1. 회원가입	•메인비즈 사이트(www.mainbiz.go.kr)에서 회원가입
2. 기업등록	•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정보 및 재무정보를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4. 현장평가 신청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업체 신청
5. 경영혁신능력 평가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평가의 실시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6. 경영혁신확인서 발급	•평가지표에 의해 현장평가 실시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를 발급(3주~1개월)
7. 사후관리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 시점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5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제7절 코스닥시장 상장

1. 코스닥(KOSDAK)의 개념

코스닥이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 시장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구분	주요 내용
1. 기업에 대한 혜택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 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음 •배당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가능(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상법 제542조의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2. 주주에 대한 혜택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3. 상장의 효과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의 조달가능성 증가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기업인지도 제고에 기여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

3.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

요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2014년6월18일 개정규정 기준)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주1)}
설립 후 경과년 수		3년 이상	미적용	미적용
택 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주식분산		다음 요건 중 택일 •소액주주 500명 이상, 지분25% 이상 & 청구 후 모집5%(25% 미만 시 10%)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모집지분 10%이상 & 규모 별 일정주식 수 이상 •공모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대형법인 미적용)		자본잠식을 10% 미만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일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 시현(*대형법인 ^{주2)}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적용
이익규모*, 매출액** & 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일 1)ROE ^{주3)} * 10% 2)당기순이익 20억 3)매출액** 100억원 &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4)매출액증가율 20%(&매출액 50억)	다음 요건 중 택일 1)ROE* 5% 2)당기순이익* 10억 3)매출액** 5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미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6월		1년
기타 외형요건		주식 양도제한이 없을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함 (단,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1)기술성장기업 : 전문기관 기술평가(복수) 결과 A등급 이상인 기업(녹색인증기업은 단수)

주2)대형법인 :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업(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3)ROE(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4. 코스닥시장의 상장 절차

구분	주체	일정 (예시)	비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지정감사인 지정)	발행사, 금감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대표주관계약 체결	발행사,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에 계약서 등 제출(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관 정비 및 사전준비	발행사, 증권사		표준 정관으로 개정
기업실사 및 발행가액 분석자료 준비	발행사, 증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발행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 결제원
주권가쇄 계약	발행사, 가쇄소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발행사, 증권사		
예비심사청구서 검토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팀		
청구기업 심의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D+60일	상장위원회 상정
예비심사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D+63일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사, 감독원	D+65일	
발행가액 결정	발행사, 증권사	D+75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D+81일	수리 후 15일
청약	증권사	D+82~84일	
배정	증권사	D+91일	
신규상장 신청	발행사, 증권사	D+92일	
증자 등기	발행사	D+93일	
코스닥상장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D+94일	
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D+96일	

제8절 코넥스시장 상장

1.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의 개념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개설되는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구분	주요 내용
기업에 대한 혜택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음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배당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가능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법 제542조의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주주에 대한 혜택	•대주주 등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넥스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 •소수주주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1%)완화(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상장의 효과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음.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투자자에 대한 기업인지도 제고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조성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가능

3.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1) 외형요건

구분		내용	비고
재무 내용	일반 기업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택일
	벤처 투자기업	•매출액 5억원 이상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억원 이상 중 택일	택일
주권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다만, he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합병 등		•합병 등(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을 한 경우 그 이후 결산이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완료일 이후 사업연도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다음년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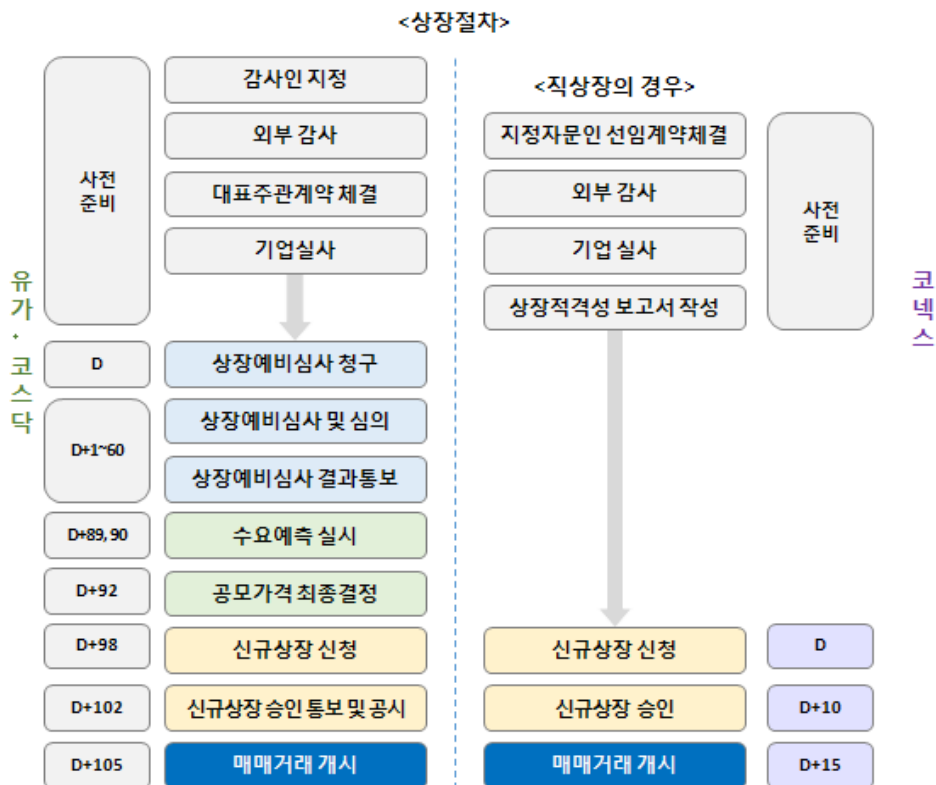
※벤처투자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함

2) 질적 요건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신규상장신청 기업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지에 대해 질적 심사를 수행

다만,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에 대해 사전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므로 한국거래소에 의한 상장심사는 최소화하고 있음

4. 코넥스시장의 상장 절차



상장절차	주요 내용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한국거래소가 과거 인수실적, 신규상장기업 발굴, 지정자문인 업무수행 능력, VC와의 협업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한 증권사 중 1개사와[선임계약을 체결
외부감사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등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에 대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실사 후 회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정보에 대한 확인,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의견 및 실사 내역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
신규상장신청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에 제출 <신규상장 신청 시 첨부서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해당 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명부 •상장신청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3자 배정 증자 배정명세서6.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소의 상장심사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신규상장신청기업의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지 검토한 후 상장심사결과를 확정
코넥스 상장승인 및 매매거래 개시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상장심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사의 상장희망일 이전에 상장심사결과를 해당 회사와 지정자문인에게 통보 •상장이 승인되면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사항을 코넥스시장 상장신청회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한 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표 •상장일이 되면 신규상장회사 대표이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규상장식을 개최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됨

참 / 고 / 문 / 헌

- 국세청. <http://nts.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특허청. <http://kipo.go.kr>
- 중소기업청. <http://smb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메인비즈 인증시스템. www.mainbiz.go.kr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http://www.innobiz.net>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 한국창업보육협회. www.kobia.or.kr
- 특허정보넷. <http://kipris.or.kr>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 한국창업보육협회. www.kobia.or.kr

- 유일근. 2003. 사업성분석과 경영전략. 형설출판사.
- 김진영 외4. 2003. 중소기업자를 위한 창업지식과 경영정보. 도서출판 시그마.
- 홍기화. 2006.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KOTRA.
- 성문정 외 12인. 2007. 체육백서. 문화관광부.
- 김진영 외 6인. 2008. 사업타당성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김성영, 라선아. 2009. 마케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안성, 김동훈, 안세영. 2010.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발전방안.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 박광순. 2011. 일반 기계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김경유. 2011. 자동차 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심원철. 2011.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한 의료기기 산업. KB경영연구소 산업동향분석.
- 홍성인. 2011. 조선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이원복. 2011.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과 개발 동향. 산업연구원
- 구영남. 2011. 2011 국내외 신발 시장동향.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 정만태. 2011. 중전기기산업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김종기. 2011. 통신기기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박상범. 2011. 항공우주산업의 기술개발 파급효과와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항공진흥 제56호.
- 박 훈, 2011. 섬유산업의 기초분석. 산업연구원.
- 강철환 외. 2011. KIPRIS 쉽게 배우기. 특허청.
- 강철환 외. 2011. KIPRIS 실무활용 가이드. 특허청.
- 안병인 외. 2011. 기술창업 가이드북. 기술보증기금.
- 안병인, 김진영, 최석재. 2011. 2011기술창업가이드북. 기술보증기금 지식창업부.
- 양지혜. 2012. 패션업의 이해. 이트레이드증권.
- 특허청. 2012.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 김진영. 2012. 중소기업관련법개론.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김진영. 2012.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전략. 신용보증기금.
- 김영수 외 6인. 2013. 식품산업의 지역별 발전현황과 산업생태계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 산림청. 2013. 목재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임달오 외 5인. 2013. 2013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나광표 외. 201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바로 따라하기. 특허청.
- 이주관. 2014. 주요국 식품제조업 현황과 트렌드. 세계농식품산업 동향.
- 이용원. 2014. 국내 가구산업의 이해와 발전. 서울경제.
- 김동한. 2014. 국내 가구산업 전망과 영업기회 발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진영 외 7인. 2014. 2014창업실무.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김진영 외. 2014. 창업컨설팅트가 제시하는 창업실무.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특허청. 2014. 특허고객 상담사례집. 특허청.
- 최성우 외. 2014. 지식재산의 정석. 한국발명진흥회.
- 노형식 외. 2014. 지식재산권전문교수 양성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중소기업청. 2014. 成금成금 스타트업 성공이야기,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가이드

초판발행 | 2015년 3월 17일

연구위원 | 김진영 원경훈 최석재 최종인 문우식

펴낸이 |  **중소기업청**  **KOBIA** (사)한국창업보육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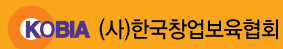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관 5층

문 의 | Tel)042-346-9600 Fax)042-346-9629

홈페이지 | www.kobia.or.kr

펴낸곳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ISBN 978-89-957310-7-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5층
Tel. 042,346,9600 Fax. 042,346,9629
www.kobia.or.kr

